-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 4. 서민층의 성장
-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1. 양반층의 증가와 분화

1) 양반인구의 증가

조선 후기사회는 有役下層民의 신분의 상향이동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양반·중인·상민·천인으로 구성된 신분구조에도 수치의 변동이 일어나게되었다. 그것은 양반인구의 급증, 중인인구의 점진적 증가, 상민인구의 감소, 노비인구의 급감현상이 帳籍을 통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점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장적상에 나타나는 양반인구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수적 증가현상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사회의 신분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자료는 장적이다. 장적에 기재된 호주의 職役과 그 가족의 신분표시(처의 호칭, 率子의 직역)와 4祖직역, 그리고 그 가계 등은 군역의 유무, 신분 世傳의 유무, 身分內婚의 유무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신분을 판별할 수 있는 유력한수단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장적기록의 신뢰도에 관한 것이다. 즉 직역 및부녀자의 호칭이 의도적으로 冒錄되거나 漏戶・漏口된 호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록된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착오가 아니라면 그 자체가 중세해체기 사회변동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누호・누구된 한계가 있더라도 국가가 파악한 직역을 통해 당시 사회구성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하여 양반인구의증가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의 양반은 柳馨遠이 정의하였듯이, 문무반의 正職에 참여할 수 있는 大夫·士의 자손과 족당을 지칭하고 있다.1) 또한 양반은 士族의 존칭

¹⁾ 柳馨遠,《磻溪隨錄》 권 9, 教選之制 上 鄉約事目.

으로서2) 사족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반은「관직에와 접근」과「家系의 위신」에 의해 그 신분이 결정되거나 유지될 수 있었다.3) 양반층의 일부는 과거나 蔭敍・代加의 혜택을 입어 實職 또는 散職을 얻음으로써 관직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無職・無蔭의 양반 자손으로서 가계의 위신을 바탕으로 한 신분내혼이나 학행 및 재산(토지와노비)을 겸함으로써 양반으로서의 품격을 지켜 나가기도 하였다. 장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군역을 면제받아야 하고, 선후세대간에 양반신분을 세습이동해야 하며, 양반상호간에 신분내혼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양반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건을 갖춘 양반의 직역은前・現職官 및 帶品職者(가계 및 가족의 신분표시가 양반신분인 자), 進士, 生員, 及第,(士族)出身, 幼學, 忠義衛(18세기 중반까지), 業儒・業武(숙종 22년 이전) 등으로 파악되며, 부녀자에 있어서는 姓에「氏」가 붙여진 경우가 양반으로 간주된다.4) 이러한 직역과「씨」의 호칭을 가진 양반호주의 구성비는〈표 1〉의 단성현의 경우와 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각 지역별·시기별 양반호의 구성비	단위 : %

지역	시기	1678		1711 1717		1747	1759	1765			1804	1825	1858 1861	1867
大月	丘丘山 成成 府府府縣縣	13.6	9.2 19.4	19.1	18.7 26.3	21.5	24.4	41.0	37.5 31.4	31.0	53.5	39.3	70.3	42.5 65.5
彦『	易縣易縣			12.4 19.5						53.1 57.6		<i>აა.ა</i>	80.2 80.4	

^{*}단 양반호주의 비율은 각 지역의 전체 호수에 대비한 것임.

위의 〈표 1〉에서 확인되는 바,⁵⁾ 양반호의 구성비는 각 지역과 연구자의

²⁾ 朴趾源、《燕巖集》 권 8. 別集 兩班傳.

³⁾ 池承鍾,〈身分概念定立을 위한 試論〉(《한국고·중세사회의 구조와 변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11, 1988).

⁴⁾ 李俊九、〈朝鮮後期 兩班身分移動에 관한 研究(上・下)〉(《歷史學報》96・97, 1982・1983;《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一潮閣、1993).

분류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후대로 올수록 한결같이 증가하고 있다. 대구부의 경우 府內의 상이한 지역과 시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결과 전자는 숙종 16년(1690)부터 168년이 지난 철종 9년(1858)까지 61.1% (9.2%~70.3%)가, 후자는 숙종 10년부터 183년이 지난 고종 4년(1867)까지 23.1%(19.4%~42.5%)가 증가한 것으로 각각 파악하였다. 울산부의 경우에는 영조5년(1729)부터 138년이 지난 고종 4년까지 39.2%(26.3%~65.5%)가 증가하였고, 단성현의 경우에는 숙종 4년부터 147년이 지난 순조 25년(1825)까지 25.7%(13.6%~39.3%)가 증가하였다. 언양현의 경우 동일한 지역과 시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양반신분을 분류하는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숙종 37년부터 150년이 지난 철종 12년까지 전자는 67.8%(12.4%~80.2%)가, 후자는 60.9%(19.5%~80.4%)가 증가한 것으로 각각 파악하였다. 이처럼 양반호는 후대로 올수록 한결같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러한 양반호의 구성비는 대체로 17세기 후반에는 9~19%, 18세기 전반에는 12~26%, 18세기 후반에는 24~57%, 19세기에는 39~80% 정도의 분포를 보였던 것으로 단순화시켜 정리해볼 수 있다.

⟨丑 2⟩	각 지역별·시기별 양반인구의 구성비	단위 : %

시기	1678	1690	1717	1729	1759	1765	1783	1804	1825	1858	1867
				1732			1786				
지역							1789				
大丘府		7.4		14.8			31.9			48.6	
蔚 山 府				19.4		32.1		43.7			67.1
丹 城 縣	7.3		13.8		23.1		27.2				
丹 城 縣			12.8				23.4				
丹 城 縣									28.5		
鎭海縣									32.6		

⁵⁾ 이 표는 다음의 연구성과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四方博、〈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朝鮮經濟の研究》3,1938),388~389冬.

金泳謨、〈朝鮮後期의 身分構造와 그 變動〉(《東方學志》26, 1981)、〈亞 5〉.

鄭奭鍾,〈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大東文化研究》9, 1972),〈도표 I〉. 李俊九, 앞의 글(下),〈エ 14〉.

井上和枝、〈李朝後期慶尚道丹城縣の社會變動〉(《學習院史學》23, 1985)、〈巫 9〉.

한편 양반인구의 구성비를 보면 앞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확인되는 바,6) 양반인구의 구성비도 각 지역과 연구자의 분류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나타난 수치가 후대로 올수록 한결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치가 양반호의 경우보다 낮은 것은 전체 인구파악에서 率居奴婢의 개별 인신에 대한 파악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한 양반인구의 구성비는 대체로 17세기 후반에는 7%, 18세기 전반에는 13~19%, 18세기 후반에는 23~32%, 19세기에는 29~67%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

 ⟨표 3⟩
 단성지역 양반호주의 직역별 구성비
 단위: %

시 기 직 역	帶品職	生進及 第出身	幼學	忠義衛	業 儒 業 武	寡 婦 (氏)	計 (戶主數)
숙종 4년(1678)	9.2	3.9	41.5	7.8	13.5	24.1	100(282)
숙종 43년(1717)	8.8	0.6	78.4	5.5		6.7	100(477)
영조 35년(1759)	3.9	1.2	87.7			7.1	99.9(661)
정조 10년(1786)	0.6	0.6	94.5			4.2	99.9(953)

이러한 양반층의 급증현상은 유학의 수적 급증에 의한 것이었다. 위의〈표 3〉의 단성지역에서 확인되는 바,7)양반호주의 직역별 구성비를 보면 숙종 4년부터 정조 10년(1786)까지 100여년 동안에 대품직(9.2~0.6%), 생원·진사·급제·(土族)출신(3.9~0.6%), 과부(24.1~4.2%) 등은 감소한 반면에 유학(41.5%→78.4%→87.7%→94.5%)은 후대로 올수록 급증하고 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유학이 양반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양반층내에서 유학호가 차지하는 이같은 점유율은 다음의〈표 4〉에서 확인되는 바,8)다

金錫禧,〈18·19세기 戸口의 實態와 身分變動-新例 彦陽縣 戸籍大帳을 중심 으로-〉(《人文論叢 26, 釜山大, 1984),〈巫 IV〉.

朴容淑《朝鮮後期鄉村社會研究》(慶北大博士學位論文, 1986),〈巫Ⅲ-5〉.

⁶⁾ 이 표 역시 四方博(위의 글, 411쪽), 鄭奭鍾(위의 글, 〈도표 Ⅲ〉), 朴性植(〈18 세기 丹城地方의 社會構造〉, 《大丘史學》15·16, 1978, 〈표 3〉), 朴容淑(위의 글, 〈표 Ⅲ-4〉), 井上和枝(위의 글, 〈표 9〉), 武田幸男(〈19世紀鎭海縣の社會構造とその變動〉, 《朝鮮戶籍大帳の基礎的研究》,學習院大 東洋文化研究所, 1976, 〈표 5〉)의 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⁷⁾ 李俊九, 앞의 글(下), 〈표 18〉 참조.

⁸⁾ 이 표는 四方博(앞의 글, 〈職役別列舉綜合表〉), 李俊九(앞의 글, 〈표 18〉, 井上 和枝(앞의 글, 〈표 6〉), 金錫禧(앞의 글, 377쪽), 朴容淑(앞의 글, 19쪽)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다.

93.2

86.4

98.5

98.4

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양반층의 급증은 유학의 급증 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다.

시기	1678	1690	1711	1717	1729	1759	1783	1798	1825	1858	1861
\ ' '					1732		1786				
지역 🔪							1789				
大丘府		41.4			61.5		74.7			89.8	
丹 城 縣	41.5			78.4		87.7	94.5				
日 城 縣									988		

79.9

54.6

彦陽縣

彦陽縣

〈표 4〉 각 지역별·시기별 전체 양반호 가운데 유학호의 점유율 단위:%

18세기 이후부터 양반층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유학이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신분계층의 유학 호칭에서 비롯되었다. 즉 양반의 유학 재생산,「忠義衛」에서「유학」으로의 직역이동,中人層(庶擘의 후손・吏族의 儒業者・額內校生・技術職中人・面任 등)의「유학」호칭, 그리고 유역 하층민의 冒稱幼學 등이 유학 급증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된다.

우선 양반의 유학 재생산에 의한 증가가 유학 급증현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 \cdot 19$ 세기에는 사족의 자손이 출생할 경우「유학」이외에는 달리사용할 직역이 없었으며, 실제로 유학은 조선 말기까지도 사족 未入仕者의 직역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유학은 양반지배층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직역이었다. 따라서 양반사족층은 유학을 재생산하고 있었으며, 장적상의가계사례에서 확인된다. 《丹城鄉案》과 《丹城縣戶籍大帳》에서 확인되듯이 단성지역의 재지사족인 權金錫가계의 시기별 호주직역을 보면 숙종 4년에는 유학이 6호였는데 108년이 지난 정조 10년에는 42호로 증가하였다.》이는 숙종 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정조 10년에는 700% 즉 7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양반의 유학 재생산에 의한 증가는 班村의 직역변동에서도 확인된다. 즉 大丘府月背面의 반촌인 上仁里의 경우, 유학호 점유율은 17세기 말에 16.7%, 18세기에 50% 안팎, 19세기 중반에 93.6%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丹陽馬

⁹⁾ 李俊九, 〈朝鮮後期의 幼學과 그 地位〉(《民族文化論叢》12, 1991; 앞의 책, 148 쪽), 〈표 5-6〉 참조.

氏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였다.10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후대로 올수록 급증하였던 유학 증가현상이 마치 양반의 유학 재생산에 의해서만 증가한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것은 단성지역과 대구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재지사족의 사례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양반의 유학 재생산에 의한 증가도 유학 급증현상의 한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충의위에서 유학으로의 직역이동도 유학 급증현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훈공신 후손의 충의위는 면역할 수 있는 限代규정이 9대까지였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훈공신인 興安君 李濟의 4세손인 李晁의 가계에서 흥안군의 9세손 34명 가운데 충의위는 단 1명뿐이고 27명이 역의 부담이 없는 유학으로 직역을 이동시키고 있다. 역시 흥안군의 5세손 李賀生의가계에서 흥안군의 7세손 3명은 모두 충의위였다. 그러나 8세손은 8명 가운데 通德郎이 3명, 충의위가 1명, 유학이 4명이었으며, 9세손은 11명 모두 유학이었다.¹²⁾ 따라서 정훈공신 후손들이 충의위에서 유학으로 직역을 이동시켜 유학을 재생산함으로써 유학의 수적 증가에 보탬이 되었다.

유학 급증현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얼 후손의 「유학」호칭이다. 17세기 말 업유·업무가 서얼의 문·무를 지칭하게 된 이후 서얼의 후손은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왕명에 의하여「유학」호칭이 합법화되었다.13)즉 숙종 34년 (1708)의 傳敎에는 "자신이 서얼인 자(親庶孽)만 업유·업무라 칭하고 업유·업무의 아들이나 손자는 유학으로 기록하여도 무방하겠다"고 하였다.14)이로 인해 친서얼이 아닌 서얼의 후손은 유학 호칭이 가능하였다. 이는 장적에 반영된 가계사례에서 명확히 확인되는데,《단성현호적대장》에서 산견되는 몇 건을참고하기로 한다. 즉 업유·업무의 서얼 직역화 이전인 숙종 4년 장적에서 충의위 李蓍國의 良妾子인 李胤元은 서얼이기 때문에 '許通免講'을 직역 대신에 기록하였으나 영조 5년(1729)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모두 직역을「유학」으로 기록하였고,學生 權克益의 庶子 '許通校生'權懿과 權懿의 후손들도 숙

¹⁰⁾ 崔承熙、〈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國史館論叢》1, 國史編纂委員會, 1989), 95~96等.

^{11)《}續大典》권 4. 兵典 免役.

¹²⁾ 李俊九, 앞의 글(下), 23쪽, 〈표 30〉 및 앞의 책, 150쪽, 〈표 5-7〉 참조.

¹³⁾ 李俊九,〈朝鮮後期의 業儒・業武와 コ 地位〉(《震檀學報》60, 1985).

^{14)《}新補受教輯錄》,戶典戶籍.

종 43년 이후에 직역을 모두 「유학」으로 기록하였으며, 숙종 43년 장적에서 유학 權德亨의 서자 大均과 賤妾子 大得은 양반의 「親庶孽」이기 때문에 직 역을 업유로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영조 26년 이후 직역을 모 두「유학」으로 기록하고 있었다.15) 이처럼 18세기 전반부터는 서얼 후손들이 합법적으로 유학을 호칭하게 되었고. 이들 유학들이 유학을 재생산함으로써 유학의 수적 증가를 가져온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8세기 이후부터 서얼 후손의 유학 호칭은 물론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吏 族의 儒業者들도 유학을 호칭하였다. 즉 영조 5년에는 경상도관찰사 朴文秀 에 의해 향리자손들도「유학」의 칭호를 써도 좋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뒤 영조 26년에는 유학의 칭호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으나, 부사 元景淳에 의해 또한 유학으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16) 이로써 안동의 鄕 孫儒業者는 유학을 호칭하였다.

뿐만 아니라 19세기에는 액내교생과 기술직 중인, 면임도 유학을 호칭함으 로써 유학의 수적 증가에 보탬이 되었다. 교생의 경우, 헌종 9년(1843)의〈求 禮鄕校 西齋案〉序文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향교의 서재유생인 교생은 신분 적으로는 중인으로 처신하였지만 장적에서는 유학으로 기재하였다.17) 기술직 중인의 경우, 철종 2년(1851)에 일어난 기술직 중인의 通淸운동자료인〈辛亥 閏八月十八日 景陵幸行時上言草〉에 의하면, 이 상소운동에는 유학 金允洙 등 1.872명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18) 그들 기술직 중인들은 스스로 「유학」을 칭 하고 있었다. 면임의 경우, 고종 6년(1869) 8월 16일의 경상도 固城縣 春元面 에서 幼學錢 收捧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관련된「執綱幼學 金鍾律」 도 면임으로서 유학을 호칭하였다.19)

유역 하층민의 모칭유학은 17세기 말에도 확인되지만, 18세기를 거쳐 19세

¹⁵⁾ 李俊九, 앞의 책, 〈표 7-3〉・〈표 7-4〉・〈표 5-8〉 참조.

^{16)《}安東鄉孫事蹟通錄》附錄 참조. 李勛相,《朝鮮後期의 鄕吏》(一潮閣, 1990), 90~91쪽.

¹⁷⁾ 全羅南道 編,《全南의 鄉校》(1987), 121\, 任敏赫. 〈朝鮮後期의 幼學〉(《清溪史學》8, 1991), 141쪽.

¹⁸⁾ 韓永愚. 〈조선후기 '中人'에 대하여 -哲宗朝 中人通淸運動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學報》45, 一志社, 1986), 69~70\.

¹⁹⁾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3), 244\, 《慶尙監營啓錄》, 고종 8년 12월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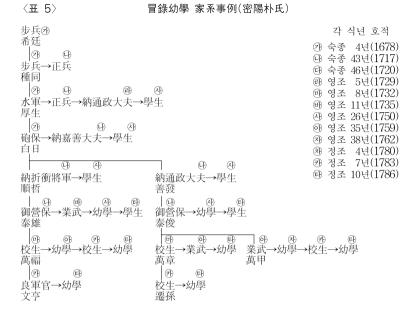
기로 오면서 유학층 증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모칭유학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신분직역제를 바탕으로 운영된 군역제의 동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조선 후기 양역화된 군역은 유역 하층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가중하게 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천한 역」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곧 유역 하층민이 군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避役현상을 유발케 하였고, 피역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분을 변동시키는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無役閑遊하는 「유학」을 모칭하여 양반신분으로 변동시키는 것이었다. 영조 즉위년에 尹會는, 軍保子支로서 조금 형편이 좋고 재력이 있으면 璿派・勳族을 모칭하거나 공신후예로 투속하거나 式年戶籍에 유학을 모칭하는 것은 모두 천한 역을 모면하고자 한 것임을 지적하였으며,20) 정조 10년(1786)에 柳漢坤은 민호 가운데 조금 富實한 무리들이 奸吏와 결탁해서 유학을 모록하고 양역을 벗어나고 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21) 이는 곧 유역 하층민이 경제적 부력만 조금 있으면 籍吏와 결탁하여 장적상에서 직역을 유학으로 변동시키고, 그 결과 천시하는 군역도 탈피하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모칭유학은 얼마간이나마 경제적 부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진행된 유역 하층민의 모칭유학은 장적에 반영된 가계사 레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즉 다음 〈표 5〉의 가계사례에 의하면²²⁾ 숙종 4년 식년호적에는 호주 朴白日과 그의 부·조·증조가 모두 軍保(砲保·水軍·步兵)를 직역으로 한 유역 하층민이었으나, 숙종 43년 신년호적에는 호주 順哲·善發과 그들의 부가 모두 납속품계(納折衝將軍·納通政大夫·納嘉善大夫)로 직역을 변동시켰다. 이는 납속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경제력은 그들후손의 신분직역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교생·업무등 중인직역과 양반직역인 유학을 왕복하면서 지위의 격상·격하를 거듭한 것은 적리와의 作奸 여부에 따라 좌우되었다. 이러한 가계사례에서 본 직역변동 추세는 상민직역에서 납속할 수 있는 경제적 부력을 바탕으로 적리와의 결

^{20) 《}承政院日記》 575책, 영조 즉위년 10월 3일.

 ²¹⁾ 鄭奭鍾, 앞의 글, 291쪽.
 《正祖丙午所懐謄錄》 참조.

^{22)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上(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79쪽. 第1統 5戶의 호주인 '砲保 朴白日'과 그 후손들을 이 대장 상・하에서 조사하여 만든 가계사 레이다.



탁에 의해 가능하였으며, 중인직역을 거쳐 유학으로 상승이동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양역변통 논의의 맨 나중 형태인 均役法이 시행되던 18세기 중반부터는 군포부담이 상민층에만 한정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양반층과 중인층은 합법적인 면역층이 된 반면에 상민층은 「천한 역」으로 인식된 군역을 전담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원래 良役價를 줄이고 歇役으로의 투속으로 인한 役弊를 제거하려던 균역법은 결국 그 의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민의 부담만 늘리고 있었다.23) 그리하여 유역 하층민의 과중한 군포부담은 피역을 도모하려는 「모칭유학」을 더욱 유도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장적의 법제와 사회기강은 무너져가고 있었다. 정조 22년에는 기강이 무너져 군역이 「冥(獲)과 「함정(穽)」에 비유됨으로써 백방으로 뇌물을 바쳐 피역을 시도하였는데 모칭유학이 피역의 한 방편이 되었다.24) 이러한 기강의 문란은 군역제의 동요와 더불어 사회신분제의 동요를 가속화하였고, 이에 따라 모

²³⁾ 鄭演植,〈17·18州기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韓國史論》13, 서울大 國史學 科, 1985), 180等.

^{24) 《}備邊司謄錄》 188책, 정조 22년 11월 30일.

청유학의 증가도 더욱 확대되어 갔다. 정조 21년에는 농사꾼이나 軍丁의 자식들과 면천한 奴들도 유학을 칭하며 외람되이 科場에 나왔다고 한 것이나,²⁵⁾ 정조 22년에 비변사에서 왕에게 "군정을 뽑는데 빈 이름만 실리는 폐단은 진실로 장적의 가호에 유학이 많고 良人이 적기 때문임"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보면,²⁶⁾ 18세기 말에는 모칭유학의 수적 증가와 함께 장적상에서 유학층 점유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도 군역을 「무서운 질병(악질)」과 같이 여기고 軍籍을 「귀신대장 (귀부)」처럼 봄으로써27) 군역 도피자가 속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유학모칭자를 색출하여 군역에 충정하려는 일련의 조처들이 고종년간까지도 계속되었다.28) 이는 결국 모칭유학이 심화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엽이 되면 유학을 모칭하여 면역을 도모하는 것이 통용되는 고질적인 폐단으로 되었으며29) 군사대장이 빈 문서가 될 정도로30) 모칭유학의 수적 확대가 크게 진행되어 갔다. 19세기 장적상에서 유학 점유율이 높은 것은 곧 이러한 사정이 장적에 반영된 것이며, 특히 이 시기 대구부 월배면의 상민촌인 월배리의 유학호 점유율의 변화(22.2%→66.7%→83.3%)는31) 곧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유역 하층민의 모칭유학은 19세기의 장적상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었을까. 이는 순조 32년(1832)의 《晋州鄕校修理時物財收集記》에 보이는 儒戶(유학호)의 구성비와 19세기의 장적에 보이는 유학호의 구성비를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유호인 元儒와 別儒는 모두 「유학」을 직역으로 하고 있었으므로32) 유학의 자체 구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수집기》는 진주향교 수리를 목적으로, 府內 거주호에게 일정한 부과금을 정수하기 위한 것인데 유호의

^{25) 《}正祖實錄》권 47, 정조 21년 10월 정미.

^{26) 《}備邊司謄錄》 188책, 정조 22년 10월 10일.

^{27) 《}純祖實錄》권 17, 순조 14년 2월 무오.

^{28) 《}備邊司謄錄》 256책, 고종 12년 12월 23일.

^{29) 《}備邊司謄錄》 243책, 철종 7년 정월 16일.

^{30) 《}高宗實錄》권 12, 고종 12년 12월 21일.

³¹⁾ 崔承熙, 앞의 글, 97쪽.

^{32) 《}晋州鄉校修理時物財收集記》(奎章閣圖書 No. 7156)의 都合 집계에서 元儒의 경우 "已上 幼學 2,076戶", 別儒의 경우 "已上 幼學 2,746戶"라는 기재 사실에서 확인된다.

점유율은 23.8%. 그 가운데 원유호와 별유호는 각각 11.5%. 12.3%로 집계되 었다. 원유는 토착・전통적인 지배신분층, 별유는 신분상승 혹은 後來移住로 지배신분층 하부에 첨입된 유호로 각각 파악되었다.33) 이로 볼 때 유학 호칭 이 합법화되었던 서얼 후손을 비롯한 중인층의 유학 호칭자들은 별유로 구 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당시 사료에서 산견되는 '庶孼儒生'・'西齋 儒生'이란 표현에서도 방증된다. 그리고 이《수집기》에는 유호 23.8% 외에 는 모두 민호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원유호와 별유호를 합쳐 양반 으로 간주되는 유호가 23.8%에 불과하다면, 19세기 같은 시기 장적상의 유 학호의 점유율이 40%~70% 정도와 대비할 때 「모칭유학」이 될 나머지 16.2%~46.2%가 현실적으로 유호나 양반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저절로 드러난 것이다.34) 그렇다면 19세기 전반 장적상의 유학호의 절반 내 지 그 이상은 모칭유학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세기 전반 향촌사회에서 실 제 양반층으로 간주되는 양반은 대체로 23% 안팎으로 이해되며, 유역 하층 민의 모칭유학은 16%~46%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칭유학을 국가는 良丁확보와 관련하여 모칭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 으며, 향촌사회에서도 원유·별유와 같은 유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역 하층민의 모칭유학은 군역정발의 기본대상이라 할 수 있는 관찬문서인 장적에서 기존의 양반사족층과 직역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관이 묵인하는 실질적인 면역층이 되었으며. 조금의 경제적 부력을 바탕으로 적리와 결탁함 수 있을 정도의 처지로 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 戶布에 대한 규정 이후에는 모칭유학들이 곧장 儒鄕子孫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이와 처지가 비슷한 벗으로 교제하려고 할35) 정도의 지위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양반인구의 증가는 유학의 수적 증가에 의한 것이었고, 유학이 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데에는 양반사족의 유학 재생산, 충의위에서 유학으로의 직역이동, 종래 중인층의 유학 호칭, 그리고 모칭유학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 용하였는데, 특히 서얼 후손의 합법적인 유학 호칭과 비합법적인 모칭유학이

³³⁾ 李海濬. 〈朝鮮後期 晋州地方 儒戶의 實態〉(《震槽學報》60. 1985). 93쪽.

³⁴⁾ 李泰鎭, 〈朝鮮後期 兩班社會의 變化-신분제와 향혼사회 운영구조에 대한 연 구를 중심으로->(《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165쪽.

^{35) 《}高宗實錄》 권 20, 고종 20년 10월 4일.

주요 변수였다. 따라서 18세기 이후 양반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학에는 원래의 양반신분도 있고 중인·상민신분도 있게 되어 신분의 혼효현상을 초래하였다. 합법 및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유학의 수적 증가는 아직도 신분제적 장치나 관념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36) 신분적 특권이 배제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중세적 속성이 강했던 것으로도 이해된다.37) 그러나한편 유역 하층민의 모칭유학은 유학층 내부의 신분혼효와 더불어 반·상간의 신분적 격차를 좁히고 있었으며 신분과 직역이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신분직역제의 해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시기 유학의 수적 증가가 지닌 이러한 양면성은 곧 중세 해체기 사회변동의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역사발전의 계기적 측면에서 볼패, 사회경제적 '법제적 변동에 편승한 유학의 수적 증가는 신분직역이 상향조정되면서 상향 평등화의 방향으로 신분직역제가 해체되어 가던 사회였음을 뜻한다. 따라서 중세 몰락의 주요 징표의 하나가 중세적 신분질서의 해체라고 한다면 바로 유학층의 신분혼효 및 신분직역의 상향 조정은 신분상승을 통한 신분직역제의 해체로 연결되며, 동시에 중세 불평등사회에서 근대 평등사회로이행하는 중세 해체기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2) 면역인구의 증가

조선 후기의 군역은 전기와는 달리 양반층이 군역편제에서 빠져나감으로써 특정한 신분층에게만 그 역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역의 유무는 반상을 구분하는 주요한 정표의 하나였다. 반상으로 구분할 때 양반층은 역의 부담이 면제되고 상민은 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군역은 상민(양민)층이 담당하는 신역으로서의 良役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역이 없이 한유하던 신분층은 양반층뿐만 아니라 17세기 이후 중인층이 형성되면서 중인층도 일시적인 면역 및 혈역으로 한유하고 있었다. 혈역의 경우도 직역에 따라서는 신분상승의 통로로 이용되었고 實役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으며, 규정

³⁶⁾ 李泰鎭, 앞의 글, 165쪽.

³⁷⁾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構造의 변동〉(《丁茶山과 그 時代》, 民音社, 1986), 79쪽.

외에 免軍者 또는 游戶 내지 無役閑游者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면역층은 양 반과 중인신분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양반층과 중인층 인구의 증가는 곧 면 역인구의 증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반층과 중인층의 직역을 통 해 면역인구의 증가현상을 추정하기로 한다.

양반층은 조선 후기의 양역화된 군역편제에서 빠져 나감으로써 屬處가 없 기 때문에 사실상 면역의 특권을 누리면서 한유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었다. 양반층의 군역 기피현상은 軍籍收布制가 실시되던 16세기 후반부터 일반화 되었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布納化 이후 군역부담에서 수반되는 여러 특권 과 권리가 상실되고 납포의 의무만 남게 된 군역 자체의 질적 저하에 있었 다.38) 역제 자체의 질적 저하는 양반층의 군역이탈을 유도하게 되었고, 군역 이탈로 인해 양반층은 속처가 없어 무역으로 한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 한 사실은 인조 2년(1624)에 崔鳴吉이 "백성들은 모두 속처가 있는데 중간에 양반이라 칭하는 자들이 무역으로 한유"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나.39) 철종 13년(1862)에 三政釐整廳이 "中外의 士庶가 5衛 안에 소속되었으나 5위가 혁 파되고 5軍營이 설치되면서 士族은 군영에 예속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40) 등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양역화된 군역편제에 소속하지 않음으로써 무역으 로 한유하게 되었던 양반층은 "글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모두 幼學이라 일 컬어서 일생을 한유한다"거나,41) "百代가 지나도 군역에 충정될 걱정이 없 다"42)고 할 정도로 그들의 면역의 특권이 양반 모두에게 세습적으로 인정되 고 있었으며, 그들의 절대 다수가 「유학」을 호칭하면서 면역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반층의 면역은 중인층에까지 피역현상을 유발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예컨대. 현종 5년(1664)에 전현감 池遇龍이 "근년 이래로부터는 忠順・ 忠翊・忠贊・定虜・武學 등 諸衛의 역이 終年토록 한유하고 겨우 正木 2疋만 들이니 水・陸・砲保의 실역에 비하면 한가롭고 헐함이 하늘과 땅의 차이였지 만, 사족자제는 진실로 논할 것도 없고 중인ㆍ서얼에 이르러서도 또한 다 싫

³⁸⁾ 陸士 韓國軍事研究室、《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後期篇(陸軍本部、1968)、3~18. 88~132쪽 참조.

^{39) 《}仁祖實錄》 권 6. 인조 2년 5월 임오.

^{40)《}增補文獻備考》 권 110, 兵考 2-20.

^{41) 《}英祖實錄》 권 56, 영조 18년 9월 경진.

⁴²⁾ 丁若鏞、《與猶堂全書》1, 詩文集(1집 14권), 跋顧亭林生員論.

어하고 기피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中人輩에 있어서는 과분한 직역임"을 언급한 기사나,⁴³⁾ 영조 원년(1725)에 원주유학 李蓋芳이 "武學·軍官·旗牌官의 三廳은 대개 中庶人들에게 상당하는 역이었지만 중년 이래로 평민의 부호자가 모속함으로써 중서인은 점차 빠져 나와 한유하였다"는 기사⁴⁴⁾ 등에서 확인되는 바, 사족은 물론이고 중인도 실역과 달리 한헐하던 제위와 무학·군관·기패관 등 중인층의 직역을 기피하여 빠져 나감으로써 소속된 바가 없어져 무역으로 한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하유하고 있던 중인층의 범위는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더욱 두터워 지고 복잡해져 갔다. 17세기 중엽의 실학자 유형원이 '得參官序'와 '校生之 類'를 '俗稱中人' 또는 '閑散方外' 45)라고 지적하였듯이. 중인은 종래 중앙의 고급 기술관원을 의미하는 용어에서 이제 '한산방외'곧 지방의 한유자도 포 함하는 용어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산은 17세기 중엽에 이미 반상의 중간존 재인 중인신분층으로서의 집단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지만, 18세기 전반기의 실학자 李重煥도 '方外閑散人'을 서얼・장교・역관・산원・의관과 함께 중인 층으로 분류하였다.46) 이들 중인층의 직역은 중앙의 고급 기술관원과, 일시적 인 면역 또는 헐역으로 한유하던 반상의 중간계층 직역자 즉 庶族의 유직자 또는 한산층으로 간주되는 충찬・충순・충익・충장・정로 등 제위(17세기 중반 이후)와 교생・무학・(常)출신・군관・한량・기괘관과 충의위(18세기 후반 이후). 업무·업유(숙종 22년 이후) 등의 다양한 직역을 포괄하고 있다.47) 이러한 직역 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당시 中庶로 표현되는 중인층에게는 「과분」하거나 「상당」하는 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들 직역은 일시적 면역 또는 헐역으 로 한유하였기 때문에 유역 하층민들의 피역과 아울러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사다리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인층은 사회의 진전에 따라 점차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상민층의 신분향상자(欲爲中人者)로서의 한유 자층48)이 증가하면서 중인층 범위가 더욱 두터워지고 복잡해져 갔다.

^{43) 《}承政院日記》 186책, 현종 5년 11월 8일.

^{44) 《}承政院日記》 588책, 영조 원년 3월 12일.

⁴⁵⁾ 柳馨遠、《磻溪隨錄》 권 9. 教選之制 上 郷約事目條 참조.

⁴⁶⁾ 李重煥, 《擇里志》, 總論.

⁴⁷⁾ 李俊九, 앞의 책, 32쪽, 〈身分別 職役의 分類 基準表〉참조.

⁴⁸⁾ 鄭萬祚, 〈均役法의 選武軍官〉(《韓國史研究》18, 1977).

이들 중인층의 직역자들은 규정 외의 면군자, 일시적 면역자, 漏籍된 한유 자 등으로 존재하면서 한유하고 있었다. 충익・충장・업무・업유・무학 등은 인조 6년(1618)에 규정 외의 면군자로.⁴⁹⁾ 효종년간에도 한량·출신·업무·무 학 등은 모두 신역이 없는 자로 인식되었다.50)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 현종 년간에도 충순ㆍ충익ㆍ충찬ㆍ정로ㆍ무학 등 제위의 역이 종년토록 한유하였 다. 이들 제위는 국가가 왕실족친 및 국가에 공적이 있는 공신·관료·戰亡 人 등 유공ㆍ유음의 자손들에게 공로에 보답하는 의미로 설립하여 그 성분 에 따라 소속시킨 宿衛兵種이었다. 따라서 제위속들은 일정한 특권을 보장받 으면서 궐내외 分番入直을 주임무로 하였는데, 입속할 수 있는 代數와 代盡 이후 정역을 규정함으로써 면역할 수 있는 대수가 3~9대로 한정된 일시적 면역자로 존재하였다.51) 그리고 조선 후기에 한산이란 용어는 다양하게 쓰였 는데, 무역무직의 한유자로서의 한산은 軍案뿐만 아니라 호적에도 입적하지 않은 한량과 같은 의미로도 쓰였으며 속처가 없이 적에서 빠진 한유자로 존 재하였다.52) 이들 한산은 숙종 16년(1690)에 서얼과 함께.53) 숙종 37년에는 사족·품관·군관·교생과 함께 한유하는 무리임이 지적되고 있다.54)

이러한 제반 한유자는 양역변통론의 전개 당시 遊戶布論의 대상자인 「유 호,로 파악되고 있었다. 숙종 40년에 宋相琦는 각 읍의 호를 役戶와 遊戶로 나누고. 유호는 곧 사부ㆍ유생ㆍ제반 무역한유자로서 그 명목이 많아 위로는 朝官으로부터 아래로는 土品・校生・軍官까지를 유호의 범위로 하고 있다.55) 이는 양반은 물론이고 교생・군관 등 제반 무역한유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 어 증인층의 직역도 면역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역변통 논의의 최종 형태인 균역법을 시행할 때에는 중인충 의 합법적인 면역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56) 選武軍官은

^{49) 《}仁祖實錄》 권 19, 인조 6년 12월 신묘.

^{50) 《}備邊司謄錄》 18책, 효종 7년 9월 2일.

⁵¹⁾ 李俊九,〈朝鮮後期의 諸衛屬과 그 地位變動〉(《朝鮮史研究》1, 伏賢朝鮮史研究 會, 1992; 앞의 책) 참조.

⁵²⁾ 李俊九, 〈朝鮮後期의 閑良과 그 地位〉(《國史館論叢》 5, 1989 ; 위의 책) 참조.

^{53) 《}備邊司謄錄》 44책. 숙종 16년 3월 21일.

^{54) 《}肅宗實錄》 권 50, 숙종 37년 8월 갑술.

^{55) 《}肅宗實錄》 권 55, 숙종 40년 9월 계해.

⁵⁶⁾ 金盛祐. <17·18세기 前半 閑遊者層의 증가와 정부의 대책>(《民族文化研究》25.

전체 한유자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산 즉 한량 가운데에서도 그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량은 양반·중서·양민 등의 신분을 포괄하고 있는데,57) 선무군관의 대상을 한량 가운데에도 軍保로 하기에는 아까운 존재58)로 제한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바, 중인층의 직역은 사실상 군역에서 면제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의 면역층은 양반과 중인 신분층을 포괄하고 있다. 양반층은 양역화된 군역편제에서 빠져 나감으로써 면역의 특권을 누리면서 한유하는 것이 인정되었고, 이들의 면역은 중서로 표현되는 중인층에까지 피역현상을 유발케 하였다. 중인층은 그들에게 「과분」하거나「상당」하는 직역에서 이탈하여 속처 없이 누적시켜 한유하거나 중인직역을 유지함으로써 일시적 면역 내지 혈역으로 한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반 한유자는 양역변통론의 전개 당시 유호포론의 대상자인「유호」로 파악되기도 하여 면역층으로인식되고 있었으며, 18세기 중엽 균역법 시행 이후부터는 중인층의 직역자까지도 사실상 군역에서 면제되는 존재로 합법화되었다.

양반층은 물론이고 중인층도 면역층이 됨에 따라 군역은 상민층만 담당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군역은 부세로서의 측면이 강화되었으므로 상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이 과중하였고 사회적으로도 「천한 역」으로 인식되면서 상민의 피역현상을 유발케 하였다. 상민이 피역하는 방법은 실로 다양하였다. 영조 즉위년에 윤회가 지적한 바, 유역 하층민이 천한 역으로 인식된 군역을 모면하기 위한 방법을 보면 "軍保子支로서 조금 형편이 좋고 재력이 있으면 혹은 國姓支派를 칭하고, 혹은 名賢子孫을 칭하고, 혹은 姓字를 따라서 오래된 공신의후예로 투속하여 忠義帖을 얻기를 바라고, 혹은 式年戶籍에서 그 4祖의 이름과 役名을 고쳐서 유학을 모칭하니 이는 모두 천시하는 군역을 모면하고자 하는 꾀"임을 밝히고 있다.59) 또한 영조 10년에 李濟가 良丁을 얻기 어려운 이유로서 지적한 피역처는 "첫째는 감・병영의 牙兵・守堞 등 군관, 둘째는 영장・수령의 액외군관, 셋째는 향교의 교생과 서원의 募入, 넷째는 각읍 향청・

¹⁹⁹²⁾ 참조.

⁵⁷⁾ 李俊九, 앞의 책, 124쪽.

^{58)《}萬機要覽》財用篇 3, 軍官布.

^{59) 《}承政院日記》 575책, 영조 즉위년 10월 3일.

관속의 差備, 다섯째는 대왕 · 공신자손으로 冒屬, 여섯째는 유학 · 업유를 모 칭. 일곱째는 私賤을 가칭하거나 양반집에 투속. 여덟째는 누적하여 한유" 등이었다.60) 이처럼 유역 하층민은 선파·훈족을 모칭하거나 호적에 모록하 기도 하고 각급 관청의 私募屬에 투속하기도 하여 유학・업유・충의위・교 생·군관 등을 모칭함으로써 신분상승과 함께 피역을 도모하려고 하였으며. 호적에서 빠져 나가 한유하기도 하였다. 한편 신분을 격하시켜 사천이 됨으 로써 피역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재원확보를 위해 시행하였던 納粟政策에 따라 납속품직을 취득 한 유역 하층민의 납속수첩자들도 피역하고 있었다. 숙종 30년(1704)에 이조 판서 李濡는 賣爵募粟의 경우 수첩자 본인만 한유하게 하여 원래 군역을 면 제하는 일이 없었는데, 병진(숙종 2년)년간에 군역을 면제하는 예가 처음 시 행되었으나 지금 그 폐단이 없지 않으므로 군역을 부담하게 할 것을 주장하 였다.61) 영조 5년(1729)에 특진관 李森은 納粟加資한 무리들이 호적에「납속」 의 두 자를 붙이지 않고 품계만을 기록함으로써 피역을 조장하는 폐단을 이 야기하였다.62) 이로 보면 납속수첩자는 면역의 혜택이 자손에게까지 근본적 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며, 수첩자 본인만 한유하거나 호적에 납속이란 단서 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피역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수첩자 본인에게 한 정되었더라도 납속할 수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유역 하층민의 납 속수첩자는 품직을 취득함으로써 신분상승과 피역을 도모하였고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간에 실제 피역하여 한유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역 하층민은 사모속과 契房을 통해서도 고역을 피하여 헐역 을 도모하고 있었다. 사모속은 각 관청의 운영경비 염출을 위한 재정적인 이유 에서 운영되었는데, 유역 하층민들은 苦役・疊役・賦役 등을 피하기 위한 경제 적 이유와 제한된 부분에서나마 부농층에 의해서 신분상승의 통로로 이용하려 했던 사회적인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모속에 투속하였다. 사모속의 역 종 가운데 대부분은 고역 등을 기피하여 헐역에 투속하고 있지만. 중앙의 군영 과 지방의 각 감ㆍ병영, 향교나 서원 등에 투속하고 있는 초관ㆍ기패관ㆍ군

^{60) 《}承政院日記》 791책, 영조 10년 12월 10일.

^{61) 《}增補文獻備考》 권 121-124, 兵考 13-16.

^{62) 《}備邊司謄錄》 8책, 영조 5년 5월 7일.

관·교생·원생 등 일부는 부농층에 의해서 신분상승의 통로로도 이용되었다.⁶³⁾ 그리고 18세기 초 민과 지방관청의 결탁으로 설치된 계방도 사모속이 성행되었던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역의 부담을 덜기 위한 피역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촌락 전체가 사적으로 지방관청에 사속하는 계방촌은 18세기 중반 균역법의 실시 이후 급속하게 늘어났다.⁶⁴⁾

이처럼 상민층이 군역으로부터 탈출하여 피역하는 현상은 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신분상승과 소극적이지만 혈역처인 각 기관에 투속하는 방법이었다.65) 이는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간에 부력만 있으면 가능하였던 것이다. 전자는 군역제가 신분제를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므로 피역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용되었다. 후자의 경우도 사모속의 일부는 부농층에 의해서 신분상승의 통로로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사모속의 대부분은 그들의 역가가 헐하고역명이 천하지 않았으므로 그 수적 증가를 초래하였지만 계방촌과 더불어유역 하층민의 신분변동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다.

신분변동과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사모속의 대부분과 계방촌과는 달리 중인지역에 투속하거나 양반지역을 모칭함으로써 신분상승과 함께 피역을 도모하였던 유역 하층민의 모속·모칭자는 어느 정도 되었는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가고 있던 이들 모속·모칭자의 수는 당시 사료에 나타난 산발적인 언급들에서 많은 수가 확인된다. 유학의 경우, 숙종 10년(1684)에 湖南道臣이備局에 보고한 장계에 의하면, 중인·얼속·군보자지 등 잡류의 모칭 유학자가 5,9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66) 이는 전라도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경상도지역의 장적에서도 상당수의 모록유학이 확인되고 있어 거의 전국에 걸쳐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교·원생의 경우, 숙종 21년에 배천[白川] 지방의 액외교생수가 450명이나 되었으며,67) 숙종 37년에 羅州지방의 교생 원

⁶³⁾ 金友哲、〈均役法 施行 前後의 私募屬 研究〉(《忠北史學》4,1991) 참조.

^{64) 19}세기 삼남지방에서 계방가입촌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27.0% ~ 57.8%에 이르렀다고 한다(金炯基, 〈조선후기 契房의 운영과 부세수취〉, 《韓國史研究》 82, 1993).

⁶⁵⁾ 金容燮、〈軍役制의 動搖와 軍役田〉(《韓國近代農業史研究》上,一湖閣, 1975). 鄭演植, 앞의 글. 金炯基, 위의 글.

^{66) 《}肅宗實錄》권 15. 숙종 10년 7월 정묘.

^{67) 《}備邊司謄錄》 49책, 숙종 21년 11월 22일.

액 은 90명에 불과했으나 액외교생이 5,000명을 넘는다고 했으며, 定州지방의 액외교생이 거의 10,000명에 이른다고 했고,689 숙종 45년에는 각 읍의 교생·원생에 모속하여 한유하는 자가 많을 경우 한 고을에 4~500명에 이른다고도 했다.699 이처럼 교·원생의 액외에 모속한 자가 고을마다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심지어 10,000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군관·장교의 경우, 남한산성의 수첩군관은 숙종 18년 당시 4,500명 정도였는데, 숙종 30년에는 5,590명으로 불어났고, 이 때 군제개편과정에서 2,861명이나 감축시켰지만, 그 뒤로도 모속자는 계속 이어져 영조 18년(1742) 壬戌査正 때에 적발해 낸 모속자는 1,370명에 이르렀다. 외방의 군관들 중에는숙종 16년에 平安道都事에게 소속된 收布군관이 600여명이나 되었고, 숙종 39년에 木 1필을 바치는 除番군관을 새로 만들어 내어 대읍에는 수천 명의제번군관이 있었다.70)숙종 37년에는 황해도의 경우 1필역의 감영군관 등의명색이 7만여명을 넘는다고 하였다.71)이 밖에도 사모속에 투속하고 있는在家군관・假率군관・閑良군관・轉餉군관 등 다양한 명색의 군관들이 있다. 그리고 河東府에서는 避役將官이 56명,都訓導가 30명이나 되었으며,72)각읍 기패관・把摠官・군관의 무리가 한번 이름을 얻으면 종신토록 한유하므로 사실 피역양정의 소굴이 되었다.73)제위의 경우도 충의위・충익위・충장위 등이 유역 하층민의 피역하는 소굴로 지적되고 있으며,74)무과출신자의경우숙종 2년 萬科 시행으로 한꺼번에 14,000여명이 배출되어75)한유하고있었다.

납속수첩자의 경우, 숙종 16년에는 정부에서 진휼곡 모집을 위하여 2만 장의 공명첩을 발부하여 8도에 나누어 許賣76)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조 7년

^{68) 《}備邊司謄錄》 63책, 숙종 37년 10월 28일.

^{69) 《}肅宗實錄》 권 64, 숙종 45년 8월 병진.

⁷⁰⁾ 鄭演植, 앞의 글, 129~134쪽.

^{71) 《}備邊司謄錄》 62책. 숙종 37년 5월 20일.

⁷²⁾ 金容燮, 앞의 책, 222쪽.

^{73) 《}備邊司謄錄》 154책, 영조 46년 윤 5월 23일.

^{74) 《}備邊司謄錄》 52책, 숙종 28년 3월 17일 및 79책, 영조 2년 5월 5일. 《正祖實錄》 권 5, 정조 2년 정월 신미.

^{75) 《}肅宗實錄》 권 5, 숙종 2년 4월 을축.

^{76) 《}肅宗實錄》권 32, 숙종 16년 11월 정유.

(1731)에는 8,000장, 이듬해에는 6,100장, 영조 38년과 39년에는 12,300장을 각도에 분송·발매하였고,77) 영조 5년에는 납속가자의 무리가 호적 중에 납속두 자를 붙이지 않고 품계만을 기록함으로써 응역하지 않은 까닭으로 한 洞으로 말하면 수백 호 가운데 출역자는 10여 호에 불과한 것⁷⁸⁾ 등에서 많은수의 피역한유자가 존재하였음이 짐작된다.

이처럼 다양한 피역현상은 양정의 부족을 초래했고, 이는 제반 역폐를 야기시키고 있었다.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생의 考講, 군관의 試才, 호적嚴査 등을 통해 모속자를 양역에 충정시켰으며, 또 한편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대대적인 규모로 모속자를 조사하여 드러내기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항상 임시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79) 경제력이 우세한 富實者는 호적에 양반신분을 나타내는 유학을 모록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양반과 상민의 중간존재인 중인이라 하여 상민과 구별짓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피역하고 있는 閑丁이 아니라 중서와 같은 한산으로서 양반이나 중서가 면역되고 있는 실정에서 당연히 그들도 면역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80)

조선 후기에는 군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한 신분상승과 피역은 전혀 불가능하였으며, 피역하고 있는 한정들도 합법적인 면역은 불가능하였다. 그렇기때문에 제도권내의 양반 및 중인 직역에 투속함으로써 신분상승과 아울러 합법적인 면역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군역징발의 기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적상에서 기존의 양반 및 중인들과 직역명을 같이함으로써 관이 묵인하는 실제적 면역층이 될 수 있었다. 장적에서 확인되는 면역층은 전현직관·생원·진사·출신·유학·제위속·업유·업무·교생·원생·군관·기패관·도훈도·호장·기관·납속수첩자 등 직역자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들이 곧 양반 및 중인층의 직역이며 이들의 수적 증가는 곧 관이 묵인하는 실제적 면역인구의 증가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면역인구는 제도권내의 양반과 중인 직

⁷⁷⁾ 徐漢教, 〈17・18세기 納粟策의 實施와 그 成果〉(《歴史教育論集》15, 1990) 참조.

^{78) 《}備邊司謄錄》 8책, 영조 5년 5월 7일.

⁷⁹⁾ 鄭萬祚, 앞의 글.

鄭演植, 앞의 글.

金盛祐, 앞의 글.

⁸⁰⁾ 鄭萬祚, 위의 글, 87쪽.

역자를 대상으로 《丹城帳籍》을 통해 그것의 증가현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장 적을 이용한 파악은 그것이 호구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역의 유무를 반영하고 있는 직역을 통해 국가가 파악한 면역인구를 산출함 수 있 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표 6〉 각 시기별 전체 호수에 대비한 면역호의 점유율 %:호	〈丑 6〉	각	시기별 전체	호수에 대비한	면역호의 점유율	% : 호
-------------------------------------	-------	---	--------	---------	----------	-------

신분시기	숙종 4(1678)	숙종 43(1717)	영조 26(1750)	정조 10(1786)	순조 25(1825)
양반직역	13.1(277)	18.6(466)	26.1(638)	31.1(946)	39.3(1,207)
중인직역	4.4(94)	8.6(216)	6.8(167)	15.4(470)	17.8(547)
계 (면역호)	17.5(371)	27.2(682)	32.9(805)	46.5(1,416)	57.1(1,754)

^{*} 비율은 각 시기별 총 호수인 2.116호(1678년), 2.511호(1717년), 2.441호(1750년), 3,045호(1786년), 3,070호(1825년)에 대비한 것임.

조선 후기의 면역호는 〈표 6〉8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숙종 4년부터 순조 25년까지 147년 동안 양반호는 26.2%(13.1%~39.3%)가 증가하였고. 중인호는 13.4%(4.4%~17.8%)가 증가하였 다. 따라서 양반호와 중인호를 포함한 면역호는 그간에 39.6%(17.5%~57.1%) 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구부의 경우도 숙종 10년부터 183년이 지 난 고종 4년(1867)까지 면역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준양반·중인 등이 36.7%(22.4%~59.1%)나 증가하고 있다.82) 그리고 19세기의 중반 이후에는 앞 의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반인구만 보아도 48%~67%나 되는 지역도 있으며, 앞의 〈표 1〉에서와 같이 양반호만 보아도 70~80%나 되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면역호의 증가가 곧 면역인구의 증가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자 총수에 대비할 경우 면역호에 상당하는 면역인구의 증가로 보 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역인구의 증가는 국가로 하여금 새로운 군역 조달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고, 그에 따라 「양역실총」과 양 역 균일화정책으로서의 균역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면역인구의 증

⁸¹⁾ 李俊九, 앞의 책, 〈표 7-1・7-2〉 참조. 순조 25년(1825) 호적은 井上和枝의 앞의 글, 〈표 9〉 참조.

⁸²⁾ 金泳謨, 앞의 글, 〈표 4〉와〈표 6〉 참조.

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대원군의 집권 이후 양반층에까지 군포를 부과하는 戶布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양반계층의 분화

조선 후기에 이르면 신분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양반층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양반층내에서도 계층분화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양반층 가운데에는 위로는 大家・名家 등 문벌가문이 있는가 하면 그 밑으로는 鄉班・殘班 등의 계층이 생기게 되었고, 향촌사회에서도 土族과・鄕族・鄕品의 분화라든가 舊鄕과 新鄕의 구분, 元儒와 別儒의구분 등으로 계층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명목으로 나타난이들은 모두 직역을 「유학」으로 기재하고 국가에서도 군역 및 제반 요역을 면제해 주는 계층이었다.

이러한 양반신분의 계층분화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었겠지만, 크게 몇 가지 요인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중세사회 신분제는 크게 국가권력과 혈연관계망 양자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데,83) 특히 양반신분의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대체로 「관직에의 접근」과「가계의 위신」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관직은 당대에서, 그리고 가계의위신(가문의 후광)은 후대에서 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두 요소를 모두 갖추었을 때 전형적인 양반신분으로 평가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요소만 갖추더라도 양반신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요소를 각각 어느 정도 보유하느냐에 따라 양반신분내에서도 일정하게 분화된다고하겠다.84) 또 한편 조선 후기에는 생산력의 발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사회신분제의 동요 등도 양반층의 분화를 초래한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양반층 가운데는 사회・경제적으로 성장하거나 하락한 층들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신분계층간의 상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양반층의 하한은 점차 모호해지고 불투명해져 갔다.

⁸³⁾ 金仁杰, 앞의 글, 76쪽.

⁸⁴⁾ 池承鍾, 앞의 글, 80~81쪽.

이와 같이 관직에의 접근과 가계의 위신, 그리고 경제력 등의 요인들에 의해 양반층의 분화와 상하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李重煥과 柳壽垣은 이러한 양반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양반신분내에서 계층분화의 현상을 주목한 이중환(1690~1756)은 사대부와 품관을 똑같이 양반이라고 하면서도 다시 양반층내에서 사대부와 품관이 제각기 층이 다르고, 사대부내에서도 다시 대가와 명가의 구분이 있어서 명목이 매우 많아 서로 교유를 통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중환은 이러한 신분계층은 서로간에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즉 사대부가 혹 낮아져 평민이 되기도 하고 평민도 오래되면 혹 점차 올라가 사대부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대부가 가난하고 실세하여 삼남으로 내려간 자는 家世를 보존할 수도 있었지만, 서울 근교로 나간 자는 빈한해져서 1~2세대 후에는 많이 낮아져 품관이 되기도 하고 평민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85)

이러한 신분간의 이동현상에 대하여는 유수원(1694~1755)도 지적하고 있다. 즉 4祖에 顯官이 없으면 군역에 충정한다는 설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마다모두 관직은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비록 名賢碩輔의 후손이라도 여러 대 동안 벼슬을 얻지 못하면 中微라고 여겨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없게 되고, 비록 鄉品子枝라도 호부가 되어 거족들과 거듭혼인을 맺으면 곧 양반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신분상승의 욕구에 따른구체적인 신분상승의 통로를 밝히고 있다. 즉 私奴→良民→哨官・營軍官→座首・別監→ 鄕校有司・掌議→初入仕→素門平族→高門大族으로 신분상승의階梯(사다리)를 그리고 있다.86) 유수원의 이러한 지적에서 우리는 당시의 신분결정은 관직의 유무에 크게 제약되고 있었으며, 족적 결합에 의해 유지되는바 컸고, 상급신분의 보수화 경향이 농후한 가운데서도 신분변동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87)뿐만 아니라 향교의 유사・장의, 초입사, 소문평족, 고문대족 등의 계제는 양반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문

⁸⁵⁾ 李重煥、《擇里志》,總論・八道總論 京畿. 金炫榮、《朝鮮後期 南原地方 士族의 鄕村支配에 관한 研究》(서울大 博士學位 論文, 1993), 115쪽.

⁸⁶⁾ 柳壽垣,《迂書》 권 2, 論門閥之弊.

⁸⁷⁾ 金仁杰, 앞의 글, 80쪽.

대족은 대가・명가 등을 가리키는 문벌가문으로, 소문평족은 일반적으로 한 미한 가문을 가리키는 寒族 내지 향반으로 각각 이해된다. 이들 출신이 초입사와 향교의 유사・장의를 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향품이라고 할수 있는 鄕所의 좌수・별감은 이중환이 양반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경제력과 혼인을 통해 양반이 될 수도 있는 계층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품관은 사족과 함께 직역을 유학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사례88에서 볼 때 양반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조선 후기 재지양반층의 분화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 족과 향족·향품의 분화 즉「儒鄉分岐」를 들 수 있다. 17세기 이후에는 재지 의 지배신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서「儒鄉」 또는 각각 구분하여「儒」와 「鄕」이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17세기 후반부터는 유·향의 분화가 확실해지 고,「유향분기」가 크게 진행된 18세기에는 사족과 향족·향품간에 갈등이 드 러나면서 유와 향이 현격히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유향분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원래 사족층이 형성되지 않았던 兩界(평안도·함경도)지역 과 유향이 나뉘지 않고 향안에 들어갔던 영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국적으 로 유향분기가 있었다.89)

재지양반층의 「유」・「향」 두 계층은 17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문벌이나 자질상 큰 차이가 없었다.90) 그러나 향임이 점차 고역으로 전략하면서 천역화되어 감에 따라 유와 향은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91) 즉 京在所가 폐지되자, 留鄕所는 점차 향촌사회의 교화라는 쪽보다는 향리들이 수행하던 정령의전달과 집행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국가에서도 호적・군적・환곡 등의 고을일전반에 대하여 좌수와 별감을 중심으로 한 유향소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유향소의 직무가 호적・군적 등의 고을일 전반에 걸쳐 책임을 져야 하

⁸⁸⁾ 金仁杰, 위의 글, 82쪽.

⁸⁹⁾ 金仁杰, 《조선후기 鄕村社會 변동에 관한 연구-18·19세기「鄕權」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참조.

⁹⁰⁾ 金仁杰, 위의 책, 138쪽. "지금 무릇 鄕所의 所任은 儒를 業으로 삼는 자가 꺼 려하는데, 그 門地나 才志에 있어 儒라고 해서 더 낫고 鄕이라고 해서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지적은 그 점을 반영한다(李惟泰,《草廬先生文集》권 23, 星谷書院儒生勸學規).

⁹¹⁾ 金炫榮, 앞의 책, 42~43쪽.

는 고역으로 전락함에 따라 사족들이 하나는 유향소를 통한 향권장악을 위 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유향소에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고 역의 담당을 회피하려는 태도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유향분기」라는 양반의 계층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향임이 고역으로 전락하고 사족들이 향임을 모 피하게 됨에 따라 향권을 잡으려는 몰염치한 무리들이 향임을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향족과 사족 사이에는 혼인도 하기를 꺼리게 되고 같은 반 열에 서는 것도 꺼리는 등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이리하여 향임을 맡는 품관층은 사족내에서 차별화된 하나의 계층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두 계층은 모두 사족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향안을 매개로 하여 같이 공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점차 사족과 향족의 차이가 굳어지게 되면서, 이에 따라 향족들의 향안 입록이 鄕籍權을 쥐고 있 는 사족들로부터 제한을 당하게 되자 향족들이 반발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향안이 파해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향촌지배층 내부의 이와 같은 분화현상은 결국 그들이 소속했던 향촌지배 기구의 차이라든가 그들간의 족적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유」와「향」은 좁은 의미에서는「儒任」과「향임」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넓게 는 「유_가 서원이나 향교를 근거로 결집했던 유림ㆍ유생을 가리키며.「향_은 향소를 근거로 삼는 향품ㆍ향족을 지칭하였던 것이다.92) 특히 향족은 좌수ㆍ 별감 등 향소를 지칭할 뿐 아니라 각종 명목의 監官과 그 직을 세습하려는 족당까지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⁹³⁾ 향임(향품)은 지방통치행정에 참여하는 좌수・별감・감관・都監 등과 面任(風憲)・都將까지도 포괄하는 표현이었 다.94) 그리고 그들간에는 씨족적 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95) 이는 사족 내부에서 향임을 맡는 가계가 분리되어 나옴에 따라 차츰 그들 내부에 현격 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향, 즉 향품에는 18세기 후반 이후 하층으로부터 올라오는 자들로

⁹²⁾ 金仁杰, 앞의 책 참조.

⁹³⁾ 金炫榮, 앞의 책, 121쪽.

⁹⁴⁾ 李羲權, 〈朝鮮後期 地方統治制度 研究〉(《國史館論叢》22, 1991), 97~98\.

⁹⁵⁾ 金炫榮.〈조선후기 남원의 사회구조-사족지배구조의 변화와 그 성격-〉(《역 사와 현실》 2, 1989).

채워지기 시작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96) 즉 수령에 의해 향임이 일 방적으로 결정되고, 그것에 부를 지닌 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이 일반화 되는 것은 향품이 단지 과거 사족으로부터 떨어진 양반·향반만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층들이 포함되게 된다는 점을 알게 해준다.

이러한 향품층은 고을에 따라 수백 내지 수천 명에 이르는 무리를 형성할 정도였다. 영조 48년(1772) 西江折衝 鄭泰煥은 儒戶의 徵布를 건의하면서 각읍의 향소가 대읍은 1,000여 명, 소읍은 700 내지 800명에 이르는데 자칭 鄉曲兩班이라 한다고 하였다. 또 그는 황해도 鳳山郡의 鄕案에는 수천을 넘고특히 兩西와 關東이 이런 폐가 심하며, 삼남은 士夫鄕이라서 이런 무리가 적다고 하였다.97) 이러한 계층이 특히 양서와 관동이 심하다고 하였는데, 그들지역은 사족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각읍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賣鄕을 일삼았기 때문이었다.98) 매향은 곧 任路 자체의 문란을 초래하였고,99) 그에 따라 미천한 자들도 경제적 부력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되었다.100) 19세기 후반의 수령들은 뇌물을 받고 향임을 임명하는 것이 응당한관례로 인정하게 되었을 정도였다.101) 이러한 사실은 「常漢」으로서 부를 축적하여 새로 향품에 참여하는 부민층이 크게 확대되어 갔음을 뜻한다.

부민층은 18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102) 즉 부민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勸分・願納은 이들의 향임・교임・군임 등으로의 진출과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이었고, 나아가 향임층으로의 진출은 '全家而免役' 과 '擧族而煩役'의 현상을 가져왔다. 권분과 원납은 부민층의 신분상승과 수탈체계에서의 이탈, 그리고 관권과의 결탁을 보다 용이하게 한 수단이 되었다. 이들은 점차 양반층으로 또는 향임으로 신분과 직임을 고정시키

⁹⁶⁾ 金仁杰, 앞의 책, 150쪽.

^{97) 《}承政院日記》1328책, 영조 48년 5월 28일. 金炫榮, 앞의 책, 122쪽.

⁹⁸⁾ 海西 및 關西지방의 賣郷문제에 대해서는 金仁杰,〈朝鮮後期 郷案의 性格變化 와 在地土族〉(《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참조.

^{99) 《}純祖實錄》 권 24, 순조 21년 11월 갑자.

^{100) 《}高宗實錄》 권 5. 고종 5년 11월 5일.

^{101) 《}高宗實錄》권 20, 고종 20년 9월 23일.

¹⁰²⁾ 鄭震英, 〈19세기 향촌사회 지배구조와 대립관계〉(《1894년 농민전쟁연구》1, 역사비평사, 1991), 285쪽.

면서, 그리고 수렁권을 매개로 하여 사족의 향권지배체제에 도전하고 있었다.

또한 향권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볼 수 있는 한 표현으로서 「구향」과 「신 향_의 구분도 재지양반층의 계층분화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영조 23년에 盈 德향전이 일어났을 때. 이 지방의 이른바「신향,들은 모두'吏胥品官之子'. 즉 吏鄕層으로서 '自稱西人' 이었으며, 당시 이들이 향권을 주도하고 과거 南 人이었던 '古家大族' 인「구향」들과 다투고 있었다.103) 이 때의 신향은 이향 층이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庶孼許通의 조치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삼남 의 향안을 둘러싼 신구향의 대립이 있었을 때, 신향들은 이제까지 향안에 들 어가지 못하고 있던 서얼이었으며, 향안과 관련된 신향들의 입록을 구향이 허락하지 않은데 따른 영조 51년 무렵의 淸州향전에서의 「신향」도 마찬가지 로 서얼이었다.104) 「신향」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향임・이 서 · 서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서얼은 18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자신이 서얼인 자는 유학을 호칭할 수 없지만 그 자손들은 유학 호칭이 합법화되었으며, 영조 49년에는 경외의 學宮에서 양반과 서얼이 나이 순서(序齒)대로 앉는 것이 허용되었 다.105) 정조 원년(1777)에는 庶類疏涌節目인〈丁酉節目〉이 마련됨으로써 서 얼에게도 首任을 제외한 향임에의 참여가 허용되기에 이르렀으며,106) 순조 23년(1823)에는〈癸未節目〉이 마련됨으로써 유임과 향임의 수임까지도 허용 되기에 이르렀다.107) 이 시기「庶孼儒生」・「新儒」등 용어는 곧 서얼지식인 을 표혂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서얼에 대해 베푼 관용은 嫡庶 구별의 타파라는 신분해방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으며 다만 서얼의 신분계층을 인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들에게 가해진 제약이 완화되었을 뿐이므로 서얼의 사족화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재지양반층 분화의 또 한 표현으로서 「元儒」와 「別儒」를 들 수 있다. 앞의 항목에서 언급한 바. 순조 32년의 《晋州鄕校修理時物財收集記》에 나타난

¹⁰³⁾ 金仁杰, 앞의 책, 166쪽.

¹⁰⁴⁾ 金仁杰, 위의 책, 189~190쪽.

^{105) 《}英祖實錄》 권 120, 영조 49년 정월 을묘.

^{106) 《}正祖實錄》권 3. 정조 원년 3월 정해.

^{107) 《}備邊司謄錄》 211책, 순조 23년 11월 12일.

원유와 별유는 모두 유학을 직역으로 하고 있었으나,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유향의 구별과 같이 급증된 양반층의 자체 구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즉 儒戶(幼學戶) 가운데「원유」는 세거하는 토착적 정통사족층,「별유」는 신분상승 혹은 後來이주로 지배신분층 하부에 침입된 유호로 각각 파악된다. 따라서 원유와 별유는 분명한 신분적 상하관계로 파악된다.108) 향촌사회에서 토착적 정통사족들의 신분적 배타성에서 비롯된 별유층에는 향임(향품)・서 얼유생・서재유생(교생)・이족유업자 등과 부민층에서 성장한 향임층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은 이미 앞에 나온 항목에서 다룬 바, 그들이 이 시기에 모두 幼學을 호칭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방증된다. 그리고 이 시기 서얼유생·서재유생 등용어는 곧 종래 중인층의 지식인을 표현하고 있었으며, 그들 지식인이 향혼사회에서 유생 가운데 별유로 분류될 정도의 사회적·신분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는 이제 신분과 직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신분직역제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에서 신분직역 개념보다는 지식인을 표현하는 「유생」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었음을 뜻한다.

재지양반층의 계층분화를 반영하고 있는 유와 향, 구향과 신향, 원유와 별유 등과 같은 표현에 있어서 「유」・「구향」・「원유」는 전통적 사족층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향」・「신향」・「별유」인데, 「향」 즉「향품」・「향족」의 구성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사족과 신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향임을 계속 맡음으로써 사족과는 구별되었던 향임(향품)층이고, 다른 하나는 「상한」으로서 부력을 바탕으로 하여 수령과의 결탁을 통해 새로이 항품에 참여하는 부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성격을 좀 달리하는 「향」의 한 표현인「신향」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이향・서 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생 가운데「별유」는 향임층과 서얼・이서・부민층에서 성장한 부류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李俊九〉

¹⁰⁸⁾ 李海濬, 앞의 글.

2. 양반서얼의 통청운동

1) 서얼인구의 증가와 사회참여

(1) 서얼의 개념과 신분계층상의 지위

조선시대의 庶雙은 보통 양반의 첩자녀와 그 자손들을 의미하였지만 그 이외에도 士族인 부와 사족이 아닌 모 사이에 출생한 자와 그 자손 모두를 통칭하는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첩자손 가운데에는 부계가 향리나 庶族 등 사족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부계·모계 모두 사족인 경우가 있어서2) 서얼을 중간신분이라는 하나의 신분범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서얼은 부계와 모계의 신분등급에 따라 또는 직역에 따라 위로는 양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인·서리와 평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래로 천인신분인 자도 있었다. 특히 16세기 말과 17세기 전기에 걸친 壬辰·丁酉의 倭亂과 丁卯·丙子의 胡亂을 겪으면서 많은 사족가문에서 가족의 이산으로 처가 있는데도 처를 얻어 중혼관계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3이 때 선후취처가 모두 사족인 경우 어느 한쪽의 자손이 서얼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 양쪽 자손들은 여러 대를 이어가면서 적통을 다투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때로는 선취의 자손이 서얼이 되고 후취의 자손이 적통을 계승하는 일도 있었다.4) 또한 조선 후기에는 양자제도의 보편화로 많은 사족가문에서 親生子를 두고 同宗의 侄行에서 입양하는 수가 많았는데 이 때에 양자가 宗系를 계승하면 친생자는 거의 서얼로 취급되어 양쪽 자손간에 적통을 다투는 싸움이 벌어지곤 하였다.5)

중국에서는 晋代로부터 唐‧元代까지의 법제나 고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

^{1) 《}收養承嫡日記》(奎章閣圖書 No. 13038), 헌종 9년 9월~고종 31년 4월.

^{2) 《}成宗實錄》권 117, 성종 11년 5월 갑신. 《中宗實錄》권 34, 중종 13년 10월 신사.

李鍾日、〈朝鮮後期의 嫡庶身分變動에 대하여〉(《韓國史研究》65, 1989), 77~ 117 等.

⁴⁾ 李鍾日,〈朝鮮後期 士庶族의 身分構造變動에 관한 사례연구〉(《何石金昌洙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汎友社, 1992), 392쪽.

⁵⁾ 李鍾日, 앞의 글(1989).

는 바와 같이 복수의 처가 병존할 수 있었으므로 서얼은 신분이 낮은 여자 (妾)의 자손만을 의미하였다.6) 당의 각종 법제를 이어받은 고려 귀족사회에서도 분명히 복수의 처가 병존하였고 서얼은 낮은 신분의 여자 몸에서 출생한자녀와 그 후손만을 의미하였다.7) 따라서 사족가문의 복수의 처 중에서 한 사람만을 적처로 하고 나머지를 첩으로 하여 그 소생자손을 서얼로 한 것은 조선 초기의 왕실 내부사정과 관련된 왕권확립책과 禮無二嫡이란 유교윤리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8) 그러나 복수의 처가 모두 사족인 경우는 단순히 선후취만을 기준으로 처・첩을 나누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아서 恩義의 깊은 정도와 棄別有無・동거여부 등을 기준으로 처와 첩을 나누고자 하였다.9) 그러나이 역시 문제가 많아서 다시금 사간원에서 명분론에 따라 선・후취를 기준으로 처・첩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 그렇지만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든지간에 처・첩 내지 적・서시비는 끊일 날이 없었으므로 결국 성종은 혼례로 사족의 딸을 취하여 첩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시켜 처첩의 신분을 반상으로 갈라놓아11) 후일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양반들은 사족의 딸을 거듭 취하여 중혼관계의 발생과 적서분쟁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것은 宗代가 끝나지 않은 종친인 경우에는 비록 서얼일지라도 법제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차별받지 않고 청요직을 거쳐서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고 婚閥 또한 좋았다.12) 그러나 그들도 왕실 내부에서는 천대를 받았다. 즉 惠慶宮 洪氏의 《恨中錄》에서 "그도 천하나 골육이니 아니거두지 못하여 거두니라" 하여 思悼世子의 서자인 恩信君 湖과 恩彦君 禛을 천하다고 표기하였다. 비록 민간의 기준으로는 金枝玉葉이라 할 수 있는 고귀한 신분의 왕손이지만 서자라 하여 천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⁶⁾ 仁井田陞,《中國身分法史》(東京大 出版部, 1942;1983, 復刻版), 353~366 및 715~719等.

⁷⁾ 李鍾日、〈朝鮮前期의 戶口・家族・財産相續制 研究〉(《國史館論叢》14, 國史編纂委員會 1990).

⁸⁾ 李鍾日、《朝鮮時代 庶孼身分變動史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87), 37~40쪽.

^{9) 《}太宗實錄》 권 27, 태종 14년 6월 신유.

^{10) 《}太宗實錄》권 33. 태종 17년 2월 경진.

^{11) 《}成宗實錄》권 141, 성종 13년 5월 경오.

¹²⁾ 李鍾日、〈朝鮮後期의 沒落兩班에 관하여〉(《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1992), 930等.

따라서 가문 안에서 차별받는다든지 천하다는 기록만 가지고 그 사람이천인이라든지 양반이 아니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왕족 이외에도 외척이나 문벌가문을 비롯하여 번화한 서울양반가문과 재야의 儒賢을 위시한 일반사족가문의 경우에도 그대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세조의 부마인 鄭顯祖(의숙공주의 夫)의 후취부인 이씨는 공주의 사후에 정식혼례를 치르고 繼配가 된 사람으로서 신분상으로는 당당한 사족가문의 嫡出女였지만 부당하게 첩으로 논의・결정되어 그 자손은 서얼이 되었다. 그들의가문 안에서의 처우가 어쨌든 누구도 그들을 양반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13) 다른 예로써 조선 말기의 대유학자 華西 李恒老의 경우를 보면, 비록 그가 庶後孫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양반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이항로는 경향 최고의 성리학자로서 고위관료요 교육자였으며, 그의 많은 제자들은 19세기의 관계와 학계를 지배하였다.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서얼에게도 문과와 생원·진사시 응시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되어 많은 서얼·서족들이 이에 합격하였고,14) 그들 가운데는 중외의양반관료를 역임하거나 농촌지식인으로서 新班集團의 중심인물이 되는 경우도있었을 것이다.15) 조선 중기 이후의 사회는 사람이 지배하였다고는 하지만 역시 양반관료국가로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학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권이 그렇게 약하지 않았다. 17세기 사람이 극성한 시기에도 일개지방수령(義城縣令)이 사람의 우두머리인 안동의 陶山書院 院長을 부역문제 등으로잡아다가 매를 쳐서 죽일 정도로 관권의 위력이 대단하였던 것이다.16) 따라서 아무리 서족·서얼출신이라 해도 일단 현령·현감 등 관장이 되면, 嫡系사족인 향촌사회의 化民(士民)들이 신반인 관장을 양반이 아니라고 운운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하물며 적서차대를 완화・철폐하라는 18세기 말과 19세

^{13)《}河東鄭氏族譜》,英祖壬辰譜 권 1.

[《]中宗實錄》권 34, 중종 13년 10월 신사.

¹⁴⁾ 前間恭作, 〈庶孼考〉(《朝鮮學報》6, 1953), 60~70쪽. 宋俊浩, 〈조선시대의 文科에 관한 연구〉(프린트본. 1975).

¹⁵⁾ 李鍾日,〈朝鮮後期의 司馬榜目分析〉(《法史學研究》11, 1990).
新班이란 새 양반이라는 뜻으로 19세기 이후 서얼의 별칭으로 널리 사용되었다(黃 玹,《梅泉野錄》권 1 上).

^{16) 《}仁祖實錄》 권 12, 인조 4년 5월 병오ㆍ정미 및 권 13, 인조 4년 윤 6월 병오.

기의 왕명이 있고 난 이후에는 서얼들의 합법적인 陞班운동을 막기 어려웠 을 것이다.

물론 문벌양반가문의 서얼일지라도 그 모계가 천인인 경우에는 속량되지 않는 한 천인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고위관료의 천첩자손은 속량 된 후 잡과를 거쳐서 전문직 기술관료가 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17) 특히 조 선 후기 양반들의 천첩자손은 상당수가 속량되어 그 중에서는 吏胥나 軍校가 된 사람도 있었지만 중인에 만족하지 않고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이 되어 군공 으로 입신출세한 사람도 있었다.¹⁸⁾ 그러나 18세기까지는 서얼들이 비록 문· 무과에 급제하여 관료가 되거나. 생원 •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재야유생으로서 의 지위를 굳혔더라도 감히 사대부의 반열에 설 것을 주장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서북지방의 양반이나 영호남의 閑品(품관)과 비슷하였고19) 中人 또는 中庶人이라 통칭되었다.20) 이와 같이 서얼은 위로 양반과 한품인 토반 내지 중인으로부터 아래로 양인과 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분층에 고루 산재하였 다. 그러므로 단선적인 시각에서 그들을 중서인이라는 같은 범주의 신분개념 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다만 중간신분자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기로 내려올수록 중간신분자 이상인 서얼ㆍ서족 중에 서 상당수의 사람이 淸顯의 朝官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종묘나 학궁의 제사 에도 동참하게 되어 사족과 다름없는 대접을 받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21) 일 부 지방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에서의 서얼차대와 서얼의 鄕案入錄 거부 등의 사례가 있었지만, 적계 사족수의 감소와 반비례하여 서족수는 나날이 증가하였으므로 팽창하는 양적인 힘에 의하여 신분구조상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7) 《}成宗實錄》 권 139, 성종 13년 3월 기묘.

^{18) 《}仁祖實錄》 권 32, 인조 14년 5월 정미. 《正祖實錄》권 6, 정조 2년 8월 무오. 《葵史》, 追錄, 賢人錄. 《大東奇聞》 권 3, 鄭忠信心喪鰲城三年.

^{19) 《}正祖實錄》권 6. 정조 2년 8월 무오.

²⁰⁾ 李重煥, 《擇里志》, 總論.

²¹⁾ 李鍾日, 앞의 글(1990b), 41~42쪽. 《高宗實錄》권 22, 고종 22년 6월 9일.

(2) 서얼인구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

조선시대 서얼의 개념 속에는 양반의 첩자녀와 그 자손뿐만 아니라 부계 가 사족이더라도 모계쪽의 어느 한 가닥이라도 사족이 아닌 혈통에 연결되 어 있으면 모두 포함시켰으므로 시대가 내려올수록 그 수가 점점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전 인구수의 반이 서얼이라 할 정도로 늘어났다. 정조 2년(1778) 8월, 경상ㆍ공충ㆍ전라의 3도 서얼유생 黃 景憲 등 3.272인이 상소하여 말하기를 "臣等以半一國蒼牛"22)이라 하였다. 순 조 23년(1823) 7월에는 경기・호서・호남・영남・해서・관동의 서얼유생 金 熙鏞 등 9.996인이 상소하여 母族만을 중요시함은 오랑캐의 풍속이라 하고. 이어서 영조가 우리 나라 인구의 반이 서얼이라고 하였다는 말과 정조가 좁 고 작은 나라에서 庶類를 배제하면 한 나라의 반을 잃는다고 한 말을 인용 하고 있다.^3) 그런데 서얼유생들의 萬人疏에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왜 참가 하지 못하였는가. 이 점에 관하여 《杏下述》의 저자는 영남인 생원 金熙鏞이 참파 熙周家의 서얼로서 자칭 6도 孼儒의 우두머리라고 통문을 보내면서 함 경도와 평안도의 서얼들을 끼워 주지 않은 것을 비웃었다. 이와 같이 양반의 서얼들은 中庶人 내지 서북인들의 서얼을 차별하여 동류로 보지 않고 승반 우동에 참여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소통운동은 신분제도의 타 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반체제의 강화와 자기부류만의 신 분상승이라는 집단이기주의적 성격의 한계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는 19세기 중엽 이후 동학농민운동 등 민중운동의 지도자로. 혹은 鄕戰의 주 체로 변신하여 신분체제의 동요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서얼의 수는 다음에서 알 수 있듯이 총 인구의 반수를 넘게 되었다.

서얼들을 門地와 賢愚를 가리지 않고 모두 禁錮하고 대대로 枳塞하여 세월 이 오래되자 그 수가 더욱 늘어나서 전 국민의 과반수가 되었다(《承政院日 記》, 고종 14년 4월 6일).

서얼신분 안에서의 계층성을 무시하고 무차별로 금고하여 대대로 막았기 때

^{22)《}正祖實錄》권 6, 정조 2년 8월 무오. 18세기의 서얼인구에 관하여《葵史》·《杏下述》·《燕岩集》등에서도 거의 전국민의 반이라 하였다.

^{23) 《}純祖實錄》권 26, 순조 23년 7월 신묘.

문에 그 수가 점점 증가하여 총 인구의 반수를 넘어서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족사회의 관행은 축첩하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이는 집권관료들뿐만 아니라 재야의 사족들에게도 공통된 현상으로서 "一男子至畜二三妾"²⁴⁾이라 하였다. 또한 正妻는 남편의 사후 대개 수절하였으나²⁵⁾ 첩은 대개 수절 의무감이 박약하여 남편이 죽을 때마다 거듭 개가하였으므로²⁶⁾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되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아무리 적출자손이라 하더라도모계 또는 그 모계의 상계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흠이 있는 신분임이 판명되면 그 자손은 서얼로 취급되었다.²⁷⁾ 또 남편의 애증관계로 처와 첩의 지위가바뀌는 수도 있어서²⁸⁾ 결국 적서신분의 한계가 모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서얼 내지 서얼자손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한번 서얼이 되면 그 자손은 그 후 아무리 일부일처의 건전한 혼인관계로 10여 대 내려가더라도 서얼이 되었다. 또한 적출가문에서는 계속 새로운 서얼이 생겨났으므로 적자손의 체감화와 서자손의 체증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를 적서표시가 있는 19세기 이전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여 보자. 그런데 대개의 사족가문의 족보에서는 서자녀가 비교적 잘 기록되고 있으나 그 자손들에 관한 기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서얼자손수의 파악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족보상 적서표시를 없앤 20세기의 족보에는 앞서 누락된 서얼들이 대거 수록되었으므로 전후 시기의 것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²⁹⁾

먼저 고종 7년(1870)에 편찬된《瑞興金氏族譜》에 의거하여 寒暄堂 金宏弼 의 적서자손수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표 1〉과 같다.

김굉필의 아들 4명이 모두 적출자였으나 손자대에는 적·서수가 반반이었

²⁴⁾ 魚叔權,〈稗官雜記〉3(《大東野乘》 권 4).

^{25) 《}正祖實錄》권 1, 정조 즉위년 6월 임자.

²⁶⁾ 黃 玹,〈梅泉野錄》권 1 상, 62쪽. 《宣祖實錄》권 22, 선조 21년 정월 기축.

^{27) 《}中宗實錄》권 2. 중종 2년 윤정월 경술.

^{28) 《}成宗實錄》권 126. 성종 12년 2월 기유.

²⁹⁾ 흔히 僞譜가 많다는 이유로 족보의 사료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19세기 이전의 뚜렷한 사족집안에서 편찬된 大同譜 및 일부 派譜는 그 내용 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宋俊浩 등의 연구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표 1〉 寒暄堂 金宏弼의 시기별 자손수(女後孫 제외)

	구 쉬	16세기 전기	16세기 전·중기	16세기 중·후기	16세기 후기	17세기 전기	17세기 중기	17세기 후기	18세기 전기	18세기 중기	18세기 후기	19세기 전기	19세기 중기
	'분\	자	손	증손	현손	5대손	6대손	7대손	8대손	9대손	10대손	11대손	12대손
Ī	적	4	4	11	12	28	46	61	74	77	115	142	171
L	서	0	4	6	14	20	39	62	101	134	150	148	160
	계	4	8	17	26	48	85	123	175	211	265	290	331

* 전거:《瑞興金氏族譜》, 庶의 인원수 속에 서자손 모두를 포함시켰음.

고 중손대에는 그 비율이 11:6이었지만 현손대로부터 7대손까지는 그것이 비슷하였다가 18세기에 해당하는 8·9대손대에는 적자손수보다 서자손수가 월등히 많아졌다. 그러나 18세기 후기 10대손을 과도기로 하여 19세기에 해당하는 11·12대손대에는 다시 적서수가 비슷하게 되었다. 이는 서후손들이 적게 無後家로 개명·입양하였거나 아니면 그들이 「庶」표시가 있는 족보에 등재되는 것을 꺼리어 단자를 제출하지 않았거나,30) 혹은 족보편찬의 주역들인 적계사족들이 영락한 일부 서자손들을 족보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일찍이 17·18세기에도 가문에 따라서는 서자손들을 족보에서 몽땅 빼버리는 수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그들을 탈락시킨 사례도 매우 많았다.

그 다음 19세기 중엽의 영의정 鄭元容을 비롯한 혁혁한 조관들이 철종 10 년(1859)에 편찬한 東萊鄭氏(會洞鄭氏)³¹⁾ 水竹公派 派譜에 수록된 대사헌 鄭廣 敬(1586~1644)과 영의정 鄭太和(1602~1673) 등의 적서자손수는 다음〈표 2〉 와 같다.

변화한 서울의 명문대가인 이들 會洞鄭氏는 조선시대의 전후기에 걸쳐서 제일 많이 재상을 배출한 閱閱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별로 쓰지 않았다고 찬양되어 왔으며 다른 벌열가문에 비하여 서족수 또한 매우 적었음에 특색이 있다. 그러나 다음 〈표 2〉에 나타난「庶」 숫자가 그들의 서족수 전부를 망라한 것인지 아니면 양첩자손인 서족만을 나타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족수가 17세기 후기에 33%였던 것이 18세기 전기에는 37%로 올라갔고, 18세

³⁰⁾ 庶字 표시는 친서얼인 자녀에게만 하였으나 그 후손의 妻 표시를 적계와는 달리하는 등(配→娶)으로 하여 庶子孫(서얼)임을 알 수 있게 했다.

³¹⁾ 서울 중구 會賢洞을 世居地로 한 동래정씨는 조선시대에는 회동정씨라 하였다.

48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33 %

서족의 비율

시기		17세기 후기		18세기 전기		18세기	[중기	18세フ	후기	19세기 전기		
구 분		자		손		증 손		현 손		5대손		
현조	명		적	서	적	서	적	서	적	서	적	서
정	태	화	4	3	12	5	23	12	39	21	52	35
정	광	경	4	1	5	5	6	9	11	7	16	5
	계		8	4	17	10	29	21	50	28	68	40

42 %

36 %

37 %

〈표 2〉 水竹公(좌의정 鄭昌衍)의 시기별 자손수(여후손 제외)

37 %

기 후기에 이르면 42%로 최고치를 나타냈다가 18세기 후기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18세기 중기를 고비로 18세기 후기부터 전서자손 모두가 증가하였지만 서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은 앞의 〈표 1〉에서 살펴본 김굉필의 자손의 경우와 같으며, 그 이유도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서얼에 대한 차대를 2~3대로 제한하자는 限代法이 제대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처·첩 병존의 불합리한 혼인형태가 지양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실제상의 서얼수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셋째로 大君·君 등 왕족인 적서자손수를 살펴보자. 대체로 寒族보다는 華族, 화족보다는 왕족 중에서 서열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는데 국왕의 현손대까지 첩의 자손은 "종친의 예우를 받는 代數가 다하지 아니한 경우"32)라 하여 일반 사족사회의 적출과 같이 대우하도록 하였다. 또 그 후손을 淸顯의관직으로 등용하도록 하였지만33) 서자의 서자 또는 서자의 서손 등과 같이서계가 중첩된다든지 모계가 천인인 경우에는 일반 사족의 서얼과 다름없는처우를 받아서 班婚이 매우 드물었다. 또한 국왕의 5대손 즉 대군과 군의 현손 이후에서 생산되는 서얼은 일반 사족의 서얼과 똑같이 취급되었다. 따라서 다음 〈표 3〉에 나타난 종친의 서계자손 중에서는 적계사족과 통혼 및 벼슬이 가능한 신분층이 많은 한편 역관 등 중인층이나 사족의 서얼 또는 양인과 통호하는 총도 적지 않았지만34) 일일이 구별하지 않았다.

^{32)《}續大典》 권 1, 吏典 京官職.

³³⁾ 李鍾日, 앞의 글(1992b).

^{34) 《}璿源錄》 권 27・43・47・50(奎章閣圖書 No.8785 또는 8787).

〈표 3〉 대군과 왕자군의 적서자손수(여후손 제외)

~					
구 분	자	손	증 손	현 손	5대손
파 조	적 서	적 서	적 서	적 서	적 서
太宗長者讓寧大君	3:7	4:21	5:45	6: 64	7:102
" 次子孝寧大君	6:1	18:12	41:50	59: 81	110: 98
世宗4子臨瀛大君	5:4	4:30	3:86	10:158	9:200
世祖子德源君	2:8	0:33	0:82	0:132	0:182
成宗子楊原君	1:3	1: 5	1:16	4: 61	7: 68
中宗子德陽君	1:3	2: 6	5:23	12: 73	26: 44이상
宣祖子慶昌君	4:2	9: 7	7:13	12: 24	12: 25이상
仁祖子崇善君	2:0	3: 0	2: 2	4: 7	6: 8
仁祖孫福平君	1:2	1: 5	1: 7	1: 9	2: 10
적 서 비 율	45:55	26:74	17:83	15: 85	19: 81이상

^{*} 전거 : 《璿源錄》(주 34에서 언급한 책)·《增補文獻備考》권 45, 帝系考 6, 宗室· 《百氏通譜》(韓國精神文化研究院의 마이크로필름)에 의거 작성.

위〈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대별 종천들의 총체적인 적서비율은 대군과 왕자군의 아들대(王孫)에는 45%: 55%로서 비슷하였으나 서계후손의 상대적인 증가로 그들의 손자대에는 적계가 26%, 서계가 74%, 증손대에는 적계가 17%, 서계가 83%, 현손대에는 적계가 15%, 서계가 85%로 변하였다. 이는 한 번 庶가 되면 그 자손이 모두 서계로 된 반면, 적계에서는 계속 서계자손이 재생산되어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5대손의 경우에는 도리어 적계자손의 증가로 적서비율이 적 19%: 서 81%로 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 서류의 지위향상이 종친으로부터 선도되어 상당수의서계종천이 적계 무후가로 입양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위의〈표 3〉에서는 혈손이 서계만으로 나타난 경우는 德源君뿐이나, 실제로 적손이 단절되고 서계 후손만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컨대 誠寧大君의 系子 原川君과 月山大君, 그리고 성종의 아들인 安陽君・全城君・寧山君 및 그의 손자인 伊川君과 중종의 아들인 海安君 등의 후손이 모두 적계는 없고 서계만 있다.35) 조선후기에도 선조의 손자인 綾原大君의 아들 5인 모두가 적출이 아니었다.36) 그같이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사족가문에서처럼 적게 동성친족 중에서 입

^{35) 《}百氏通譜》 권 4・6・7.

^{36)《}百氏通譜》권 8.

양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임금의 혈맥을 이은 종친일지라도 천계와 혈연이 닿으면 사족들이 통혼하기를 꺼렸는데 《성종실록》기사에 의하면 서계종친들은 억지로 사족들과 혼인하고자 하여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고 한다.37) 또한그때 성종이 사족의 적출녀를 후궁으로 삼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仁粹大妃는 사대부의 첩의 딸을 골라 후궁으로 삼게 하였다.38) 물론 임금의 후궁은 종친의 副室과는 비교할 수 조차 없었으나 성종이 솔선수범하여 사족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종친과 비슷한 신분인 부마의 적서자손들을 살펴보자. 具思顔은 중종의 적출녀인 孝順公主의 남편으로서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具致寬의 동생 知中樞 具致洪의 현손이며 인조의 외조부인 具思孟의 친형이다. 그에게는 1명이 적자와 3명의 서자가 있었는데 손자대에는 적 1명:서 4명, 중손대에는 적 1명:서 11명, 현손대에는 적 2명:서 19명, 5대손대에는 적 2명:서 38명으로³⁹⁾ 종친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구사안의서계자손 중 일부는 사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세조의 사위였던 鄭顯祖의 경우와 같이 구사안도 공주가 죽은 뒤 특명으로 사족의 딸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죽은 공주 앞으로 양자를 세우고 재취부인은 첩으로 논정되었다. 그러므로 자손은 서얼이 되었지만 왕명으로 허통시켰다.40)

일반 재야土人들이나 보통의 문·무관의 경우에는 종친·부마·고관·명현 들처럼 많은 서자손을 갖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 적서표시가 있는 각성씨들의 옛 족보를 살펴보면 적서비율이 18·19세기에 대체로 적 60%, 서 40%로 나타나고 있다.41) 그러나 그 족보를 면밀히 살펴보면 족보에 등재되지

^{37) 《}成宗實錄》 권 98. 성종 9년 11일 무인.

^{38) 《}成宗實錄》 권 98, 성종 9년 11월 기사.

^{39)《}綾城具氏族譜》萬曆乙亥譜(1575)·正祖丁未譜(1787).

^{40) 《}中宗實錄》 권 34, 중종 13년 10월 신사.

[《]河東鄭氏族譜》英祖壬辰譜(1772), 권 1.

[《]明宗實錄》권 28, 명종 17년 5월 경인.

[《]綾城具氏族譜》正祖丁未譜, 권 3. 병편 5.

⁴¹⁾ 분석자료로 이용한 족보는 《河東鄭氏族譜》英祖壬辰譜(1772)・《豊川任氏族譜》(1844 フ) 말)・《碧珍李氏世譜》純祖丙戌譜(1816)・《英陽南氏世譜》英祖乙酉譜(1765)・《全義李氏族譜》英祖甲戌譜(1754)・《綾城具氏族譜》正祖丁未譜(1787) 및 哲宗癸丑譜

않은 서족들이 적지 않으며, 벼슬이나 학문 등으로 그 일족을 빛낸 사람의 선대의「庶,字를 소급하여 삭제해 주는 일도 있어서 실제상의 서계수는 적 계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말경까지도 거의 대부분의 大同譜에서 는 여전히 적서표시가 있으나 일부 가문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많은 서자 의 이름 앞에 박힌 「서」자를 제거하고 후손이 없거나 아주 미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이름에만 「서」자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 론「서,자를 뽑아버린 것은 억울하게 서얼로 취급된 사람들의 수백년간에 결친「爭嫡鬪爭의 결과로 얻어진 전과」일 수도 있다. 혹은 적계사족의 무후 가로 입양하는 등의 합법적인 수단으로 쟁취되는 경우도 있으나 문제는 족 보나 호적 등의 위조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호적에는 적 서표시가 거의 없고 숙종대의《典錄通考》에 의하여 서손이나 서증손 때부 터는 幼學을 칭할 수 있었다.42) 그러므로 18세기 이래의 거의 모든 공문서상 으로는 서족들의 신분표시가 적계사족들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으니 구태여 호적을 위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족보위조는 사족집안의 대동보나 뿌리가 뚜렷한 계파의 파보인 경우에는 불가능하였다.43)

(3) 서얼의 정치·경제적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고려시대의 서얼차대는 어디까지나 중세적인 신분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계가 사족이라 하더라도 모계가 천인이거나 그 반대인 경우 즉 천계의 혈통이 섞인 자들의 사족집단 편입을 거부하기 위해「一賤則賤」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44) 그러나 조선시대의 서얼차대는 그 외에 도 유교적인「禮無二嫡」의 원칙이 추가되어 부계・모계 모두가 사족일지라도 한 사람의 처 이외의 자손은 서얼로서 차대를 받았다.45) 그러나 조선 개국초부 터 처가 있는데 또 처를 들인 경우 선취녀의 자손은 적출사족이고 후취녀의 자손은 서얼이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태종 13년(1413) 3월 11일 이전의「有妻娶妻」의 경우에는 선후취를 막

^{(1853)・《}金海金氏族譜》純祖丙寅譜(1806) 등이다.

^{42) 《}典錄通考》. 戶典 戶籍.

⁴³⁾ 宋俊浩,《朝鮮社會史研究》(一潮閣, 1987), 41~45\.

^{44)《}高麗史》 권85, 志39, 刑法2 奴婢.

^{45) 《}太宗實錄》 권 33, 태종 17년 2월 경진.

론하고 嫡妻로 하여 그 자손들이 모두 적계사족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46) 그러나 그 이후 중혼관계에 놓인 자들은 그 어느 한쪽 처의 자손이 서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러 처·첩이 모두 사족인 경우, 처와 첩의 분간이 곤란해짐에 따라 그 자손들의 적통을 다투는 분쟁 또한 매우 심각하였으므 로 성종은 사족의 딸을 취첩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 후에도 그러 한 사례는 많았고 동시에 적통을 다투는 투쟁 또한 지속되었다.47)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서얼은 양첩자손이건 천첩자손이건 문과와 생원·진사시의 응시자격이 박탈되어48) 淸顯要의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요행히무과에 급제하거나 음직으로 관료가 되더라도 限品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49) 또한 일부 서얼은 잡과를 거쳐 기술관이 되거나 중앙과 지방의 잡직 또는 吏胥가 되어 사족양반으로부터 대대로 천시받고 차별받았다.50) 그외 대부분의 서얼들은 무직상태로서 빈곤과 질병으로 외롭고 괴로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가문내에서는 「呼父呼兄」도 못하고 부모의 재산은 주로 적자녀에게 상속되어 서자는 적자의 1/7~1/10을 상속받는데 불과하였다.51) 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이르면 입양제도가 보편화되어 대를 이어 제사를 받드는 양자에게 재산이 주로 상속되었다. 물론 법제상으로는 적출의 후사가 없을 때에는 첩의 아들이 제사를 받들어 모시도록 규정되어 있으나52) 19세기 중엽까지는 그러한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혼인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천첩자녀에 한하여 양반과 혼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53) 그 후 많은 천첩이 속량되어 양첩자손과 천첩자손 사이의 구분이 애매하여지자 결국 대개의 서얼이 양반과 혼인하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46) 《}世宗實錄》권 29, 세종 7년 7월 병자.

⁴⁷⁾ 李鍾日, 앞의 글(1989), 77~117쪽.

^{48) 《}經國大典》 권 3, 禮典 諸科.

^{49) 《}經國大典》 권 1, 吏典 限品叙用.

^{50) 《}成宗實錄》권 139, 성종 13년 3월 기묘.

[《]太宗實錄》권 29, 태종 15년 4월 정해. 桂勝範,〈조선후기 丹城地方 陝川李氏家의 職役 실태와 그들의 신분문제〉(유 인물, 1992).

⁵¹⁾ 李鍾日, 앞의 글(1990a), 64~73쪽.

^{52)《}經國大典》 권 3, 禮典 奉祀.

^{53) 《}世宗實錄》 권 42, 세종 10년 10월 병신.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서얼수의 증가와 적서갈등의 심화로 제반 모순이 누적되어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얼금고의 지속으로 많은 인재가 사장되고 있었으므로 위정자들은 서얼소통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선조 때 李珥의 주장에 따라 納粟許通法을 만들어ኝ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나마 서얼을 관료로 등용하도록 하였다. 인조 때에는 고위관료들의 찬반토론을 거쳐 限代法을 만들어 서얼자손들의 영구적인 금고를 해제하고자 하였다. 한대법에 의하면, 양첩자손은 손자대부터, 천첩자손들은 증손자대부터 허통하여55) 문무과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등과 후에는 요직은 허용하되 淸職만은 불허하도록 하였다.56) 그러나 납속허통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일부 부유한 서얼들뿐이었고 등과 후 벼슬길에 진출하는 자는 극소수뿐이었다.

그리하여 서얼들의 불만과 사회불안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崔錫鼎등의 건의에 의하여 친서얼인 경우에는 業儒·業武라 호칭하도록 하여 일반 상민과 구별하게 하였다. 또 업유의 아들이나 손자 때부터는 양반과 같은 호칭인유학을 쓸 수 있도록 하였다.57) 동시에 납속허통법을 개정하여 납속이란 전제조건을 삭제, 서얼들이 문무과와 생진시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58) 그러나 서얼차대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얼들의 벼슬길은 그렇게 넓지 못하였다. 사회적 차대 또한 조금도 완화되지못하여 18·19세기의 사회환경과 역사조건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서얼들의양적 축적으로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소통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위정자들은 서얼들의 벼슬길 확대와 陞班化의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59) 일부 사족들도 서얼들의 상속상의 지위상승을 인정하게 되었다. 즉 상당수의 가문에서는 적서차대를 어느 정도 완화하여 적자가 없을 경우 종전처럼 양자를얻어서 대를 잇도록 하지 않고 親生子인 서얼로 적통을 이어(承嫡) 후계를 삼아

^{54)《}栗谷全書》下 권 35, 附錄 3, 行狀 및 권 34, 附錄 2, 年譜 下, 계미 11년 4월.

^{55)《}仁祖實錄》권 10, 인조 3년 11월 무오.

^{56) 《}癸史》권 1. 인조 3년.

^{57) 《}肅宗實錄》권 30, 숙종 22년 10월 경진. 《典錄通考》, 戶典 戶籍.

^{58) 《}續大典》 권 3. 禮典 諸科.

^{59) 《}增補文獻備考》 권 195, 選舉考 12, 銓注 4. 李鍾日,〈18・19世紀의 庶孼疏通運動에 대하여〉(《韓國史研究》58, 1987), 57~67 等.

재산상속을 시키는 사례가 늘어났다.60)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세기 후기에 이르면, 서얼들이 京職으로는 淸顯의 벼슬도 하게 되고 종묘의 제사에서는 축사의 임무도 맡고 성균관의 제사에서는 헌작의 반열에도 서게 되었다.⁶¹⁾ 그러나 이러한 정치·법제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도 불구하고 향촌사회내에서의 거부반응은 여전히지속되어 곳곳에서 鄕戰이란 이름의 적서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것은 대개 향촌사회내에서 양반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鄕案 내지 儒案(《靑衿錄》)에 이름이 올라야 했는데 기성의 양반(舊班)들의 강력한 저지로 서얼양반(新班)들의 입록이 번번히 실패하자, 실력대결을 하게 된 것이다. 순조 23년(1823)의 庶類유생 1만 명의 상소에서는 이를 「擯斥成風」이라 표현하고 있다.⁶²⁾

향안·유안 등의 입록을 중심으로 일어난 신·구반의 싸움은 19세기 후반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서얼들이 이미 18세기 후반에 구반과 함께 향교의 東齋案에 입록되었던 점으로 보아서⁶³⁾ 19세기에는 더욱 많은 서얼들이 이른바 「3所」(향교·서원·향소)의 유안에 등재되었으리라 추정된다.⁶⁴⁾ 공주향교의 유안에서 그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발견할 수있다. 18세기 말엽 경기도 노론가문의 서후손 중에서 출생한 華西 李恒老는 19세기 중엽부터 「위정척사학과」라고 불리는 거대한 학과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사방에서 勉養 崔益鉉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鄕儒의 유안 따위에 입록되는 것보다는 화서의 문하로 입록되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다. 화서의 문인들이 19세기 후반에 큰 활약을 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⁶⁵⁾

^{60) 《}收養承嫡日記》 현종 계묘 3월~고종 갑오 5월.「承嫡」이란 18·19세기 무렵에 널리 쓰였던 용어로서, 그것이 바로 嫡出子孫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승적을 시키는데는 家廟에서 告由祭를 지내는 관습이 있었다(朝鮮總督府 中樞院、《民事慣習回答彙集》1933, 264쪽).

^{61) 《}高宗實錄》권 22, 고종 22년 6월 9일. 李鍾日. 앞의 글(1990b), 41~42쪽.

^{62) 《}純祖實錄》 권 26, 순조 23년 7월 신묘.

⁶³⁾ 崔允榛,〈高敞鄉校 東西齋 儒生案에 대한 檢討〉(《宋俊浩教授停年紀念論叢》, 1987), 285等.

⁶⁴⁾ 李鍾日,〈公州鄉校文書解題〉(《朝鮮社會史資料》2, 公州 下, 國史編纂委員會, 1991). 1364~1388等 참조.

⁶⁵⁾ 여러대 庶系양반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華西의 父祖 3대도 화서의 대성으로 吏

요컨대 서얼들의 벼슬길 진출은 일찍이 18세기 후반부터 활발해져 18세기 말경인 정조대에 이르면 縣監 元重擧, 校書校理 成大中, 五衛將 吳正根, 縣監 丁俱祖, 察訪 李鴻祥, 禮賓寺 參奉 李命圭, 奉常寺 主簿 崔粹翁, 承文院 檢校 金洪連, 司稟寺 直長 南鳳秀, 東部 都事 李可運, 檢書官 朴齊家・柳得恭・李德懋 등 30명이나 되었다.66) 그들은 청현직이나 고위직의 취임이 불가능하였고 평생 동안 중하위직에 머물렀으나 다음 시대를 여는 데 큰 몫을 하였다. 결국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庶擘通淸運動에 앞장선 서얼관료 출신자 중 正言・持平・掌令 등 청현직을 지내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더구나 19세기 말엽이 되면 李祖淵・李範晋・金嘉鎭・閔致憲・閔商鎬・閔泳綺・李允用・尹雄烈・安駉壽・金永準 등 청현직을 거쳐서 대관에 이른 자가 많았다. 그 외에 金玉 之班은 일일이 다 손꼽을 수 없을 정도였고 서얼이 조관의 5분이 3이 될 정도였으며, 특히 노론계의 서얼 중에는 淸官・達官이 별처럼 많았다고 한다.67)

서얼들이 이와 같이 공경대부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자 여러 가문에서 서얼들을 「承嫡」시켜서 후사로 삼았다. 承嫡人이 바로 적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68) 법제상의 지위로 보나 경제상의 실력으로 보아서 적서간에 차별이거의 해소되었다. 또 서얼들에 대한 재산상속분을 확대하여 적서간의 차이가 2:1 정도로 좁아졌다.69) 재산 상속상으로 적서차대가 완화되는 반면 남녀차대의 역작용이 나타나 딸의 상속분은 매우 작아지거나 없어졌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이르면「以妾爲妻」 내지「以庶爲嫡」의 관행도 생겨서70) 사족사회 안에서의 적서의 구분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물론 그시기에도 적서차대가 완전히 해소인 것은 아니었고 사회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서얼들은 벼슬을 하여도 일부지방에서는 향안입록이 거부되고 있었다.71)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는 농촌중심의 생활보다는 도시중심의 광역생활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었으므

曹參判・吏曹參議・知中樞 등 관직이 추증되었다(《華西集》附錄, 神道碑銘幷序).

^{66) 《}葵史》 권 2. 정조 20년~24년.

⁶⁷⁾ 黄 玹、《梅泉野錄》 권 1 上.

⁶⁸⁾ 法院行政處, 《親族相續에 관한 舊慣習》(1985), 209쪽.

⁶⁹⁾ 朝鮮總督府 中樞院、《民事慣習回答彙集》(1933)、131~141\cons. 180\cons.

⁷⁰⁾ 朝鮮總督府 中樞院, 위의 책, 285~288쪽·292~293쪽. 비록 1916년에 조사된 것이나 19세기 후기 이래의 관습으로 보인다.

⁷¹⁾ 宋俊浩 〈身分制를 통해서 된 朝鮮後期社會의 性格의 一面〉(《歷史學報》133, 1992).

56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로 특정지역의 사족모임인 향안입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뿐만아니라 19세기의 향안 속에는 서계자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72)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新班인 서얼들은 구사족과 대등한 입장에서 향전을 벌였고 나아가서는 농민들을 조직하여 이른바 농민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즉 동학교주 崔濟愚를 비롯하여 고종 8년(1871) 영해 동학운동의 주체세력과 갑오동학농민전쟁의 주체세력들 중에 서얼이 많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73)

2) 서얼통청운동의 확대

(1) 18세기의 서얼통청운동

18세기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국사상 하나의 전환기로 이해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전세기의 극심하였던 당쟁이 외형상으로나마 끝나자 노론 일당의 전제정권이 확립되었고, 경제적으로는 移秧法과 畎種法의 보급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화폐의 유통 등으로 인한 상업활동의 활성화로 근대자본주의의 맹아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實學의 영향으로 주자학적 세계관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중간계층의 신분상승 욕구가 충만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얼들은 양적인 힘의 증대와 법적 지위의 향상에 따라 陞班運動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모계가 한미한 후궁의 아들이었던 영조가 즉위하면서그들의 소통운동은 활기를 떠었다. 영조 즉위년(1724) 12월 大駕가 동문으로나섰을 때 서얼 진사 鄭震僑 등 260여 인이 국왕에게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을 《영조실록》에 의거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74)

⁷²⁾ 崔允榛, 앞의 글, 285쪽. 李鍾日, 앞의 글(1991), 1364~1388쪽.

⁷³⁾ 金泳模, 〈開港과 한국사회신분의 변동〉(《한국근대사의 再照明》, 서울大 出版 部, 1982), 83쪽.

張泳敏, 〈1871년 영해동학란〉(《한국학보》47, 1987), 108~126쪽.

^{-----, 〈1840}年 영해향전과 그 배경 小考〉(《忠南史學》2, 1987), 49~86쪽. 愼鏞廈,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의 민족주의〉(《韓國學報》47, 1987), 51~52쪽.

^{74) 《}英祖實錄》권 2, 영조 즉위년 12월 병술. 《癸史》권 1, 영조 원년조에 의하면 鄭震僑 등 5,000인이 노상에서 상소한 것 으로 기록되어 있으나《英祖實錄》의 기사에 따랐다.

- ① 夏・殷・周・漢・唐・宋・明 등 역대 중국의 정통 황조에서는 서얼인 將 相이 많았고, 고려 이전의 取人之規도 중국과 같았다. 그러나 조선 태종 때 右 代言 徐選이 '서얼자손을 顯職에 임용하지 말도록' 건의하였고 姜希孟이 《경국 대전》을 편찬하면서 서얼들의 과거와 벼슬길을 막아버렸다.
- ② 선조 초에 申責 등 1.000여 명이 上章하여 원통함을 부르짖었는데 선조가 '葵藿向日 不擇旁枝 人臣願忠 贵必正嫡'이라 하여 그들을 동정하였다. 그 무렵 先正臣 季珥가 국경의 변고에 대한 대비책으로 서얼들을 허통하여 과거의 길을 열어주자고 건의하였다.
- ③ 인조 때 부제학 崔鳴吉은 玉堂의 동료 沈之源・金南重・李省身・李景容 등과 함께 서얼통용을 힘써 청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재능 있는 자를 낳음에 귀천간에 차이를 두지 않았고 王者가 사람을 씀에 門地에 구애하지 않음은 천 리상 당여하고 百王이 이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張維・金尙容・李元翼・尹 助・吳允謙 등 모두가 같은 뜻으로 서얼통용을 건의하였으며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2품 이상 여러 신하들은 의견이 같았다. 일찍이 영부사 이원익 이 홍문관의 箚子에 의하여 서얼이 등과한 후 요직은 허락하되 청직은 불허할 것을 아뢰어 왕의 재가를 받아 일대의 법률로 되었으나 그 후 잘 시행되고 있 지 않았다. 그 때에 요직을 허용한다고 한 것은 戶‧刑‧工曹의 낭관 및 각 사 의 장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辛喜秀・沈日運・金宏・李慶善 등이 형조 와 공조의 낭관으로 임용되었을 뿐 그후 40~50년간은 숙종 때 李礥 한 사람만 이 겨우 호조의 낭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여럿이 일어나 이를 배척하여 결국 체 직되고 말았다.
- ④ 성종대 이후 걸출한 서얼들이 많았다. 예컨대 朴枝華・魚叔權・曺伸・李 達・鄭和・林芑・梁大樸・權應仁・金謹恭・宋翼弼형利・李山謙・洪季男・劉克良・ 權井吉 등이다. 그러므로 서얼들을 뽑아서 쓰는 길을 넓게 열면 수백 년 동안 원한을 품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혼백도 감격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서얼차 대가 그 몸에 그칠 뿐이나 우리 나라에서는 한번 庶派가 되면 비록 수십 대가 지나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서얼들의 상소에 대하여 영조는 다음과 같이 批答을 내렸다. 우 리 나라가 본래 좁은데도 사람을 쓰는 길 또한 매우 넓지 못하여 개탄스럽다. 서얼들의 주장이 근거는 있으나 서얼금고는 오래 전에 한 것이므로 갑자기 바 꿀 수 없어서 서서히 대책을 강구하여 처리하겠다. 다만 호조ㆍ형조ㆍ공조의 낭관에 서얼들을 임용하는 일은 인조 때 내린 명령대로 행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서얼통청운동에 대하여 《영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史臣들은 다음 과 같이 우려하였다.

柳子光 이후 서얼통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때 이르러 여러 서얼들이 통청을

58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스스로 청하니 조정의 기강이 날로 무너짐을 알 수 있다(《英祖實錄》권 2, 영조 즉위년 12월 병술).

서얼들의 통청운동을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진 탓으로 돌리면서 중세적 신 분질서가 동요하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영조가 통치한 반세기는 서열통청운동의 난숙기로서 많은 서열들이 문과와 생원·진사시험에 합격하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료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관료들의 반대와 지방 舊儒들의 서얼배척이 또한 심각하였다. 영조 48년(1772) 12월에 경상도 서얼유생 全聖天 등 3,000여 인은 통청된 후에도 구반들의 반대로 향안에 들어가지 못한 점을 들어 상소하였다.75) 영조는서얼들을 가련하게 여겨 비답을 내려 향안입록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蔡濟恭이 "영남의 향안은 防限이 심히 엄하여 비록 조정의 명령이 있다고하더라도 유림들이 반드시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혼란이 생길까 두렵다"고 반대하였고 이에 영조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76) 그러나 이때 서얼허통론자였던 영의정 金相福은 영조에게 통청된 서얼들을 문무관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여 윤허를 받았다.77)

이듬해인 영조 49년 정월에도 경상도 업유 黃景憲이 상소하여 향학에 입록할 것을 허통하여 나이 순서대로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청하였다. 그 무렵 영조는 延和門에 나아가 태학생들을 불러 "서얼들이 이미 통청되었는데 太學에서 나이 순서대로 앉는 것(序齒)을 허락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그 때 陰竹人 金植은 서얼은 늙은이라도 양반 밑에 앉아야 한다고 대답하였다가 '君父의 앞에서 감히 양반을 칭한' 죄로 제주도 大靜縣으로 유배되고 庶人으로 강등되었다.78) 또한 영조는 무반 청직인 선전관으로 서얼을 거의 임명하지 않고 단 1명만 임용한 것은 임금의 명령을 경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宣薦 담당인 行首선전관 白東浚을 決棍 15도하여 巨濟로 보내 충군하고 그의 추천

^{75) 《}英祖實錄》 권 119, 영조 48년 12월 무자.

[《]葵史》권 1, 영조 48년 임진 12월 조에서는 그 때 영남진사 全性天 등이 鄕校와 鄕所·書院 등의 儒案에 입록되도록 하여줄 것을 상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6) 《}英祖實錄》권 119, 영조 48년 12월 무자.

^{77) 《}葵史》 권1, 영조 48년 임진 11월 · 12월.

^{78) 《}英祖實錄》 권 120, 영조 49년 정월 을묘ㆍ정사.

권행사(圈點)를 하지 아니한 선전관들도 모두 면직・충구시키도록 하였다.79) 그로부터 5년 후인 정조 2년(1778) 8월 경상·공충·전라 3도의 서얼유생 왕경헌 등 3.272인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80)

나라의 법전에 처와 첩 모두가 아들이 없을 때에만 입양할 수 있다고 하 였는데도 양자로서 대를 잇게 하여 서얼들은 아비의 뒤를 잇지 못한다. 또한 존비를 가리지 않고 재능만으로 관료를 임용하는 것이 만고에 통하는 규범 인데도 서얼들은 벼슬길이 막혀 임금을 섬길 수 없게 되었다. 나이 많은 사 람이 존경받는 것은 나이가 하늘이 내린 벼슬이기 때문인데 서얼들은 늙어 도 나이대접을 받지 못한다. 명분보다는 인륜을 앞세워야 하며, 이 나라 인 구의 반을 차지하는 서얼을 금고한 지 300년이나 되는데 그 동안 서얼 중 일부 인사는 대군사부(曺伸)・참판(鄭忠信)・참의・수사・목사・부사 등을 거 쳤으나. 많은 사람이 뜻을 펴지 못하였다. 선조 이후 여러 대를 거쳐 국왕과 대신을 포함한 고위관료들이 서얼소통을 주장하였으나. 경향의 반대론자들 때문에 잘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같은 서얼들의 상소에 대하여 정조는 이미 庶雙許涌節目을 반포하였다는 것 과 연령순은 유림간의 일이므로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였 다. 정조 워년의 서얼허통에 관한 절목은 영조 말년의 그것보다도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서 인조 때의 요직은 허용하되 청직은 불허한다는 조치를 재확인한 것에 지나지 앉았다.81) 初入仕에 있어서도 서얼이 문과에 급제하면 교서관에 분관하고 무과에 급제하면 수문장과 부장으로 추천하다는 것과 지방관으로는 부사와 목사 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82) 그리하여 서얼들은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상소운동을 전개하여 세 가지 抱寃을 호소하는 데 이르게 된 것이었다.83)

집단적이며 지속적인 소통운동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자 서 얼 중 일부는 명분론을 지상으로 삼아서 자신들을 차별하는 주자학자 내지 주

^{79) 《}葵史》 권 1, 영조 49년 정월.

^{80) 《}正祖實錄》권 6. 정조 2년 8월 무오.

^{81) 《}正祖實錄》권 3. 정조 원년 3월 정해.

^{82)《}大典通編》권 1, 吏典 限品敍用 註에 正祖丁酉節目을 등재하였다.

⁸³⁾ 세 가지 拘寃이란 繼後・什路・序齒 등에서 배척 내지 차별받는 데 대한 원 한을 의미한다.

60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자학적 사상체계에 반감을 품고 새로운 신앙세계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조 11년 8월 서얼허통론자였던 金鍾秀의 말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있다. 즉 遊獄事件에 左道의 무리(천주교도)가 많이 연루되었고 오랫동안 열성조의 어진 정사를 베풀어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가 없었는데 遊擊・凶徒가여러가지로 권유하여 그렇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울분과 원한을 풀 수 있도록 벼슬길을 열어주어 그들이 역적의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종수의 주장에 대하여 영의정 金致仁이 동조한 외에는 많은 대신과대장들이 신중론을 폈으므로 결론이 없었다.84)

(2) 19세기의 서얼통청운동

일반적으로 19세기는 조선왕조의 동요기 내지 해체기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것은 왕건의 약화와 관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농민들에 대한 수탈이 가속화되었고 그리하여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지배계층인 양반관료들이 개혁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중세체제의 유지에만 급급하여 모순이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격동기를 맞이하여 서얼들은 소통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집단적인 陞班化를 도모하였고 사회경제적인 처우개선을 부르짖었다. 그들은 순조 원년(1801)의 영상 沈煥之・좌상 李時秀・이판 尹行恁 등의 동정에 영향받아85) 대대적인 소통운동을일으켰는데 특히 순조 23년 7월에는 경기・호서・호남・영남・해서・관동 등지로부터 서얼유생 金熙鏞 등 약 1만 명이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렸다.86)

이 때에 순조는 서얼들의 가련한 형편을 잘 알겠으며 묘당에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비답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달에 서얼소통을 반대하는 성균관 유생들의 捲堂이 있었다.87) 그들이 불만의 표시로 일제히관을 비우고 물러난 데 대하여 순조는 서류들의 호소는 열성조에 항상 있었던 일이며, 서얼금고가 천리와 인정의 떳떳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은 여러유생들도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들의 용렬함을 개탄하였다.

^{84) 《}正祖實錄》권 24. 정조 11년 8월 을묘.

^{85) 《}純祖實錄》 권 2, 순조 원년 정월 정해.

^{86) 《}純祖實錄》 권 26, 순조 23년 7월 신묘.

^{87) 《}純祖實錄》 권 26, 순조 23년 8월 무술.

그 당시 조정에서는 서얼허통에 대하여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그 해 11월 〈癸未節目〉을 만들어 서얼들의 한품을 종래 정3품에서 종2품으로 올리고 청직으로는 臺職을 허용하는 등 지위향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잘 시행되지 않자 헌종 14년(1848) 11월 경향의 유생 李鎭宅 등 8,000인이 상소 하여 서얼소통을 청원하였다.89) 이에 대하여 헌종은 묘당에서 잘 논의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 그리하여 3년 후인 철종 2 년(1851) 4월 유학 崔濟京 등이 상소하여 연전의 상소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 며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90) 서얼들은 아비 생전에는 아비라 부르지 못하 고 아비가 죽은 후에는 아비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서얼들은 문과급 제 후에도 본종의 華閥・冷族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교서관으로만 분관하 기 때문에 명현・故家와 사대부가의 후예이면서도 시골의 미천한 자들보다 하대받고. 승적된 후에도 음서의 혜택을 못받으니 매우 부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서얼들의 호소에 대하여 조정 중신들은 긍정적으로 논의한 후 영 의정 權敦仁이 아뢴 바에 따라 서얼들도 족성의 閱閱을 참작하여 '槐國官 薦'91)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였다.92)

이 무렵 전국의 서얼들은 대구 達西精舍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소통운동을 전개하였다. 철종 9년 정월에는 역대의 서얼에 관계되는 사실을 모은 《葵史》를 펴냈고 또 같은 해에 율곡 이이 등을 모시는 서워을 달서정사에 세우고자 통 문을 돌렸다. 통문의 내용은 수많은 서얼들이 선현의 후손으로 무고하게 금고 된 지 수백 년이 되었는데 선조 때 이이가 서얼소통을 힘껏 주장한 이래 金祖 淳이「癸未獻議」를 하는 등 애를 써서 근래 서얼허통의 길이 넓어졌으므로 이 두 선생을 영세토록 모시는 祠宇를 건립하자는 것이었다.93) 영남은 남인계 당 색인들의 본고장인데도 그 중심부인 대구에서 남인계와 적대관계에 있었던 서

^{88)《}大典會通》 권 1, 吏典 限品叙用庶孼疏通更正節目 純祖癸未

^{89) 《}憲宗實錄》권 15, 헌종 14년 11월 무인. 《備邊司謄錄》235책, 헌종 14년 11월 8일.

^{90) 《}備邊司謄錄》 238책, 철종 2년 4월 15일.

⁹¹⁾ 문과급제 후 문벌이 좋은 집의 자제는 槐院(承文院)에 分館하고 鄕班들은 國 子監(成均館)에 분관하며, 무과급제자 중 사족자제는 宣傳官으로 추천하는 것 을 의미한다.

^{92) 《}哲宗實錄》 권 3, 철종 2년 4월 신미.

^{93) 《}葵史》 권 2. 철종 9년 4월.

인 내지 노론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율곡과 楓皐를 모시는 서원을 세우고자한 것이다. 이는 서얼들이 근친인 적계사족과 혈연관계를 끊고 철저히 대립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9세기에 들어와 60여 년간 지속되었던 노론계 安東金氏 척족정권의 지지기반으로서 전국인구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얼들이 있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철종 10년 11월에는 서얼유생들이 다음과 같이 격렬한 내용의 통문을 발송하였다.94) 국법상으로는 처·첩 모두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양자를 허용하지만 세속은 친생자가 있어도 적출이 아니면 법을 위반하면서 양자를들여 제사를 받든다. 李珥‧趙憲‧周世鵬‧鄭光弼‧張晚‧李院 등은 서자를 승적시켜 후사로 삼았다. 양반들은 본심으로 자기의 혈육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습속이 고루하여 자기 홀로 서자를 후사로 삼지 못할 뿐이며, 설혹 그럴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종족들이 서자를 후계자로 못하게 한다. 앞으로 서자를 후사로 삼지 않고 타인을 양자로 삼는 부모에 대하여는 각자가정성을 다하여 간하되 거듭 간하여도 듣지 않거든 울면서 간하고 울면서 간하여도 듣지 않거든 무지 않거든 되었다.

이 통문을 발송한 이후에도 이전 관습대로 인륜을 저버리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국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과 왕명을 받들지 않는 점을들어 공동으로 성토하고 이름을 지적하여 임금의 거둥길에서 호소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이전 시기의 서얼소통운동과는 달리 준법과 왕명 준수를 내세워 위법행위자와 격렬하게 싸울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사실 이 시기의 서얼금고는 법제상으로는 상당히 완화되어 서얼도 淸宦으로 임용될 수 있었고 후사에 있어서도 서얼을 배제하지 않았다. 오로지 법과 왕명을 준수하지 않는 사회적 현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인계의 대원군이 집권한 이후 서얼소통에 관한 논의나 그 운동에 관한 사실은 기록상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종 6년(1869) 정월 이조에서 관제개정을 논의하면서 서류 종친까지도 적통을 잇는 자(承嫡者)가 아닌 한 '文槐武宣'이 안된다고 하였으니95) 일반 사족의 서얼이 承文院의 權知(試補)나 宣傳官

^{94) 《}葵史》 권 2, 철종 10년 11월.

^{95) 《}高宗實錄》 권 6, 고종 6년 정월 24일.

을 바랄 수는 없게 되었다. 철종대에 허용되었던 서얼통청의 길이 도로 막히 니까 서얼들은 앙앙불락하다가 대원군이 실각하자 다시금 통청운동을 벌였 다. 고종 11년 2월 前持平 洪贊燮 등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역대 국왕ㆍ명 현·대신들이 서얼통청을 거듭 촉구하였고, 특히 철종은 '문괴무선'을 서얼 들에게도 허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한 나라의 반이 넘는 사람들의 백세 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다.96)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지평 權鵬丰 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또 연명으로 상소하였다.97)

- ① 고종 원년 봄에 趙大妃가 兩銓(吏曹・兵曹)에 분부하기를 서얼허통에 관 한 지시가 여러 번 있었으나 아직 실효성이 없으니 오직 재능에 따라 임용하여 억울하다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 ② 고종 2년에 반포한 《大典會通》 吏典 除授 新增條에 있는 '中庶' 두 글자 를 보고 아연실색하였다. 중인은 본래 사족이 아니나 서얼은 비록 모계가 한미 하지만 부계는 귀족이다. 율령에 따라 풍속을 고치는 것이 서얼들의 답답함을 풀어 주는 제일의 양책이다.

영의정 季裕元이 서얼통청은 이미 경연에서 아뢰어 복구하였으니 그 地閥 로 보아서 좋은 집안의 서얼은 괴원으로 올려줌이 옳다고 하였고, 고종도 國 子降調人이 이제 괴워으로 올라가게 되었으므로 芸閣(校書館)降調人도 國子監 으로 올려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98) 이에 따라 芸閣人 辛哲求・南相說・鄭 元時・權鵬丰・李載龜・李秉淵・李健容・金羽永・李東相 등을 모두 괴원으 로 올리고 관서의 강조운각인 崔德明・韓龍珪 등과 운각인 尹基周를 국자감 으로 陞調하되 국자강조인 趙廷祖는 평판이 좋지 않으니 운각으로 강조함이 좋겠다고 趙康夏가 아뢰어 윤허를 받았다.99)

그 후 고종 14년 4월 경연에서 서류였던 前正言 金基龍・前堂令 韓兢烈・ 直講 李載龜 등은 《大典會通》의 原・增・續・補 중에서 서얼금고에 관한 조항

^{96)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2월 15일.

^{97)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2월 23일.

^{98) 《}高宗實錄》 권 11, 고종 11년 3월 5일.

^{99) 《}承政院日記》, 고종 11년 3월 5일.

^{100) 《}高宗實錄》 권 14. 고종 14년 4월 6일. 《承政院日記》, 고종 14년 4월 6일,

[《]備邊司謄錄》 263책, 고종 14년 4월 6일.

64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을 일일이 삭제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1000 종전 같으면 엄두도 못낼 청환인 대간자리에 있던 서얼양반들이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여 법전상의 서얼차대 조항을 삭제하여 달라고 한 것이다. 결국 고종 19년(1882) 7월 국왕은 "무릇西北人·松都人·서얼·醫譯·胥吏·軍伍 등을 모두 顯職에 통용하며 오로지 재능만으로 관원을 임용하되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는 안으로 공경백관과 밖으로는 방백수령에 뽑아 쓰겠다"고 하여 법전상의 서얼금고 내지 서얼차대에 관한 조항을 사문화시켰다.101)

이상과 같이 19세기 후기에 이르러 서얼들의 끈질긴 통청운동의 결과로 차대에 관한 법제상의 장애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농촌사회의 구석구석에 보수세력이 남아 있었고 일반적인 사회의식으로도 적서차별의 나쁜 관행이 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로는 공경대부를 비롯하여 먼 시골의 향유에이르기까지 많은 서얼들이 승반하여 조선 말기의 신분구조 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서얼통청운동의 성공은 기술직 중인들을 비롯한 중간신분층의 승반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서얼은 승반운동 대신 새로운 사조와 신흥종교인 동학이나 외래종교인 서학에 신속히 귀의하여 다음 세대를 담당할 주역으로서 떠오르기도 하였다.102)

〈李鍾日〉

3. 중간신분층의 향상과 분화

1) 중인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1) 중인의 특성과 성장배경

中人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의 동류의식이 형성되어《雜科榜目》이 편찬되기 시작한 연산군 4년(1498) 이후로 보는 학설도 있지만, 조선 후기까지 세력이 컸던 잡과집안은 17세기를 거치면서 대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1) 《}高宗實錄》권 19, 고종 19년 7월 22일.

[《]承政院日記》, 고종 19년 7월 22일.

¹⁰²⁾ 李鍾日, 앞의 글(1987), 44~45쪽・57~79쪽.

조선시대에 잡과합격자를 배출한 성씨는 439씨족에 달하는데 그 중 합격자를 100명 이상 배출한 16씨족이 전체의 40%를 차지하였다. 대개 20씨족에서 합격자의 약 반수를 배출한 셈이다. 이에 반해 5명 미만인 성씨가 288씨족에 달해 잡과가 소수 명문씨족들에게 독점되어 간 경향이 엿보인다. 과별 합격자의 수는 譯科가 가장 많고, 籌學(算學)・醫科・雲科(陰陽科)・律科의 차례였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각과별 중인씨족의 특성1)

ر جا	Δł ¬l	6) -i	\(\frac{1}{2}\)	0 -1	고 귀	고 귀
사 항	역 과	의 과	운 과	율 과	주 학	종 합
합격자 총수	2937	1523	831	709	1627	7627
합격자 배출 성씨수	287	216	133	145	90	439
과별 30대성 비율	60.0	57.7	66.1	58.8	86.9	65.9
과별 10대성 비율	31.3	29.5	37.1	35.1	62.3	38.4
부친 본과합격률	34.4	30.5	28.2	3.9	40.4	31.4
부친 잡과합격률	41.6	42.9	38.8	9.3	55.5	41.5
처부 잡과합격률	24.4	31.2	12.1	4.9	43.8	26.7

* 단위: 상단은 실수, 하단은 백분율(%)

위의 〈표 1〉에서 보면 잡과 성씨의 2%를 조금 넘는 10대 성씨가 전체 합격자의 4할 정도를 배출하고 잡과 중에 7% 정도인 30대 성씨가 6할 이상을 차지하여, 잡과 중에 명문집안의 독점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습율에서도 부친의 본과합격률이 3할 이상 되고 다른 잡과합격률까지 합치면 4할 정도 되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잡과 중에 가장 세습율이 높은 것은 주학으로 부친의 잡과합격률이 55.5%에 달하였다. 각 시기별로 이러한 경향의 일단을 역과에서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역과에서는 광해군에서 현종까지(1609~1674) 합격자 성씨가 124씨족이던 것이 19세기 중반인 철종 때까지 79씨족으로 격감하고 고종대(1864~94)에는 87씨족으로 줄었다. 20대 성씨가 차지하는 비중은 48.7%에서 60.4%로 상승

¹⁾ 崔珍玉、〈朝鮮時代 雜科設行과 入格者分析〉(이성무・최진옥・김희복 편,《朝鮮時代 雜科合格者總覽》,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0),27等.

김필동, 〈조선시대'中人'신분의 형성과 발달〉(《韓國의 社會와 文化》21,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246쪽을 필자가 수정.

〈표 2〉 조선시대 시기별 역과합격자와 성씨2〉

합 격 시 기	합 격 자	본관/성	씨 족 별 평균합격자	20대 성씨
연산군 4년~선조	79명	60씨족/29성	1.3명	40.5%
(1498~1608)	(161?)	(110?/47?)	(1.5?)	(33.5?)
광해군~현 종 (1609~1674)	374	124/44	3.0	48.7
숙 종~경 종 (1675~1724)	587	118/37	5.0	55.5
영 조~정 조 (1725~1800)	687	112/36	6.1	57.2
순 조~철 종 (1801~1863)	590	79/29	7.5	62.2
고종(1864~1894)	530	87/31	6.1	60.4
전체시기 (1498~1894)	2,847명 (2,929명?)	225/57 (257?/61?)	12.7 (11.4명?)	51.0

하였다. 씨족별 합격자수는 200여 년 사이에 3명에서 6명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에서도 잡과집안은 조선 말기까지 일부 명문씨족에 편중되면서 문벌을 형성하고, 세습화되어 나간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잡과집안은 잡과 전문관직을 계승하며 또한 중인 안에서 신분내의 결혼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신분 속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중인들의 해외무역을 통한 富의 축적과 의식의 향상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현저해졌다. 특히 그들의 활동은 사회경제면에서 두드러졌는데 효종 6년(1655)까지 상평통보를 발행한 수십만 관이 중인 10개 집안의 재산에 해당하였다는 기록도 있다.3) 중인들이 활약하던 왜관을 통한 사무역은 대륙의 정세가 안정되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 번영하여 많을 때는 1년간에 은 6,000관에 달할 정도였다.4) 중인들의 신분의식은 17세기 이후 詩社運動으로 나타났

²⁾ 金良洙,《朝鮮後期 譯官身分에 관한 硏究》(延世大 博士學位論文, 1986), 167쪽.

^{-----,〈}朝鮮後期의 社會變動과 技術職中人-譯官層을 中心으로〉(《東洋學》 20.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90), 355等.

^{3)《}孝宗實錄》권 15, 효종 6년 12월 계해 金良洙,〈朝鮮肅宗時代의 鑛業 및 鑄錢研究-私企業資本의 形成과 그 影響을 中心으로-〉(《史學研究》28, 1978), 81쪽.

⁴⁾ 田代和生,〈朝鮮後期 韓·日間의 經濟交流〉(《韓日關係學術會議發表要旨》, 韓國史學會, 1991), 106쪽.

다. 역관시인 洪世泰가 《海東遺珠》를 펴낸 이래 중인의 처지는 아무도 알아 주지 않는 흙 속에 묻힌 진주격으로 표현되었다. 중인은 외국문물의 도입이 나 정보에 밝았고,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현실적이며 변화에 민첩하고 계산적이 어서 유교문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중인들은 개화운동의 선구자나 고 위직관료로 진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되었다. 개화당의 형성과 지도에 이바지 하였던 역관 吳慶錫과 劉鴻基나, 또는 갑신정변에 깊이 관여했던 승려 李東仁 이 그 실례가 될 것이다. 조선 말기 정치지배층 가운데 잡과출신이 1.5% 이상 되었고. 개화관료 중에는 11.6%가 잡과출신이었다.5)《大韓帝國官員履歷書》에 기록된 3.150명 중에는 적어도 67명 이상이 잡과의 합격자였다. 갑오개혁 때 내각의 대신 가운데는 과반수가 서자나 중인의 출신배경을 갖고 있었다.6)

중인이 담당하던 전문업무는 과거 양반사회에서는 2차적이었으나 근대사 회에서는 1차적으로 중요한 지식이었다. 근래 사회학방면에서는 조선시대에 양반체제가 500년 이상 지속된 원인의 하나로서 중인 중에 하급 행정실무자 들이 현실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일부가 되어 하층의 불만, 분노와 공격으로 부터 지배자인 양반계급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 왕조는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조선시 대의 중인계급을 이해하는 데 한 가지 시사가 되고 있다.7)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신분변동은 양란 이후 17세기에는 신분이 강화되는 보수화현상이 지배적이다가. 18세기 이후 크게 동요되면서 지배층이 증가하였 다고 인식되었다.8) 이와 같은 사실은 연대기를 위주로 한 자료들을 통하여

⁵⁾ 金泳謨、《朝鮮支配層研究》(一潮閣, 1986), 233等,

⁶⁾ 柳永益,《甲午更張研究》(一潮閣, 1990).

⁷⁾ 송 복, 〈양반체제의 지배 지속성: 중인계급의 구성과 기능을 중심으로〉(《사회 계층 : 이론과 실제》, 서울대 사회학연구회 편, 다산출판사, 1991), 485~494쪽.

⁸⁾ Edward W. Wagner, Social Stratification in Seventeenth Century Korea: Some Observations from a 1663 Seoul Census Register,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1 (Revised edition 1974).

Susan Shin, The Social Structure of Kumwha County in the Late Seventeenth Century. Occasional Papers on Korea No.1 (Revised Edition 1974).

盧鎭英、〈17세기 초 山陰縣의 社會構造와 ユ 變動〉(《歴史教育》25, 1979).

김인걸.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현황〉(近代史硏究會編. 《韓國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下)-朝鮮後期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울, 1987), 350쪽.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조정이 취했던 중인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실상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한 점검 결과도 조선에서 피라미드구조를 이루었던 신분구조가 숙종대 이후 점차로 상층부가 증가되는 추세로 변동이 진행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경종 원년(1721)에 좌의정 李健命이 良役을 변통하는 일로 箚子를 올린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실을 엿볼 수 있다.9) 그는 "지금 100리 고을이 1,000호 정도지만 麻布를 내어 나라를 지키는 양민은 10분의 2나 3에 지나지 못하고, 양반・중인・서얼로서 閒游의 무리들이 10분의 8이나 9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민은 살을 깎아 뼈에까지 이르고 族徵・隣徵에 지쳐 목매어 죽는 자까지 있다"고 하였다.

18세기에 들어 역관무역은 숙종 32년(1706)까지 실시되다가 이듬해에는 사상인들에게 栅門後市가 넘어가고, 다시 영조 4년(1728)부터 동왕 30년까지 역관들이 차지했다가 灣商에게 넘어갔다. 마지막으로는 역관제의 존속을 위해 정조 11년(1787)부터 동창 19년까지 허용된 이후로는 노론 등 세력가의 보호를 받던 역관들의 특권무역은 사상층과의 대결에서 패퇴하고, 마침내 辛亥通共(정조 15년; 1791) 등 자유시장정책과도 연계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18세기를 통하여 역관무역은 두 차례 다시 허용되었으나 한 세기 동안에 역관들이무역권을 장악했던 것은 통산하여 40년 정도였다.

그러나 역관들의 비용을 위해 對淸使行에서 정조 11년에 한 사람마다 허용된 八包量이 인삼 120근으로 정해진 뒤 철종 2년(1851)에 이르기까지는 40,000근으로 늘어났다.10) 또한 일본과의 공식적인 사행은 순조 11년(1811)에 끝났지만 대마도까지 가는 역관사행은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어 역관들의 무역기회는 지속되었다. 이후에는 주로 동래상인이나 송도상인들이 무역을 주도 하였는데 19세기에 이르러 대표적인 무역품으로 등장한 소가죽은 왜관에서 이루어진 일본과의 私貿易에서 11,000장 내지 25,000장이 거래되고, 청과의 책

^{9) 《}景宗實錄》권 4. 경종 원년 8월 임술.

¹⁰⁾ 吳 星,〈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와 蔘商의 活動〉(《19세기 한·일 양국의 전통사회와 외래문화》-제 5차 한·일합동회의 책자-, 한일문화교류 기금, 1991), 7~10쪽.

李泰鎭, 〈國際貿易의 성행〉(《韓國史市民講座》9, 一潮閣, 1991), 82쪽.

문후시에서는 20,000장 이상 수출되었다. 고종 11년(1874)에서 다음해까지 일본에 수출한 牛皮價는 11,512관으로 수출 전체의 35.7%에 해당하여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였다.¹¹⁾

사회변동에 따르는 인사제도의 변화를 보면 숙종 11년(1685)에는 銓郎薦代法이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정조 즉위년(1776) 5월에는 임금의 본의는 아니되이조낭관 通淸權을 복구하였으나 이것은 그 다음 정조 13년 12월에 전랑의통청권을 다시 파함으로써12) 새로운 정치집단적 진출로 구실을 하던 당하관의 정치적 위치가 약화되고, 국왕의 측근세력들이 강화되면서 권력기반의 축소현상이 일어났다. 붕당의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정조가 갑자기 죽자 지금까지의 탕평정국에서 換局형태의 정변으로 이어져 권력기반은 극도로 축소되었다. 「勢道」,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정국운영이 왕실 외착가문이 주도하는 몇몇 京華閱閱로 구성된 특권적 권력집단에만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조대의 탕평정국은 청요직 권한의 혁파와 군영의 강화로 왕권 및집권적 관료제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도시와 농촌에서 성장해 왔던 향반이나역관·서얼·상인세력 같은 중간계층의 성장을 정치구조 안으로 수용하려는 노력들이 기울여졌고, 유이민과 노비계층의 안정과 지위향상론이 탕평적 정치운영론 속에서 수용된 점이 특징이었다.13)

다음에는 18세기 중반 이후 중앙의 중인직에 대한 정치권의 배려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영조 17년(1741)에는 蔭官인 참하관과 雜技의 6품에 오르는 법을 다시 정하였다. 천문·지리·命課學 및 治腫敎授와 東文學官, 能應兒郞廳은 모두 전부터 정한 대로 60개월 만에 陞六시키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조판서 越尙絅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14) 또 사간원에서 較子를 탔던 일로 지평현장 吳志哲과 금교찰방 李喜謙이 모두 중인과 서얼출신으로 방자하게 금법을 범하였으니 과직하라고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15) 영조 18년에는 과

¹¹⁾ 金東哲,〈19세7] 牛皮貿易과 東萊商人〉(《韓國文化研究》6, 釜山大 韓國文化研究》7, 1993), 406·435等.

^{12) 《}正祖實錄》 권 28, 정조 13년 12월 기미.

¹³⁾ 鄭奭鍾,〈正祖・純祖年間의 政局과 茶山의 立場〉(《丁茶山과 그 時代》, 民音 社, 1986).

^{14) 《}英祖實錄》 권 53, 영조 17년 정월 신묘.

^{15) 《}英祖實錄》 권 53, 영조 17년 2월 임술.

거에 京都 5부에 각기 중인과 서얼로 주부와 참봉 1인씩을 두고 업무를 관장시켰던 것을 체모가 서지 않아 행정이 실현되지 않은 당시 실정을 고려하여 士夫출신으로 바꾸되 주부는 도사로, 참봉은 봉사로 고쳤다. 그리고 中庶의 불만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禮賓寺와 典獄署에 각기 참봉을 두고 중서출신으로 임명토록 하였다.16)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경도 5부의 관제를 다시 개정하여 중서출신도 사용원의 예에 따라 봉사에 다시 승진되도록 하였다.17) 또한 史隸도 廩料를 받도록 하여 중인신분의 생계를 고려하였다.

영조대는 하층농민 등의 항거에 대처하는 격동기로서 농민부담이 경감되는 균역법을 실시하였으며, 한편 영조 3년(1727)부터 이듬해까지 변산에 나타난 노비도적은 이 시기 사회실정의 한 단면이었다. 영조 45년에는 하층 천민과 농민의 이해에 접근하고 노론집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掌隷院이 혁파되었다. 그러나 영조 말년에는 척신당의 전황이 붕당의 폐해보다 무서울지경이 되었다.

위와 같은 정세에서 부친을 여의고 洪國榮 등의 보호를 받아 즉위한 정조는 오로지 주위에 친위세력을 부식시키는 데 마음쓰게 되었다. 정조 원년 (1777) 3월에는 잡과 초시 전날에 고시를 공정하게 하고, 본디 정원에 차지 못하더라도 우수한 사람을 뽑도록 특별히 하교하였다.18) 이런 중인 이하에 대한 관심은 같은 달 서얼소통에 관한〈丁酉節目〉의 반포로 나타났다.19) 다음해에는 잡직에 관한 官敎釐整을 반포하여 참상은 3계를 넘지 않게 하고 참하는 2계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20) 그리고 참상은 900일에, 참하는 450일에 벼슬을옮겨 加階시켰다. 정조 4년에는 사람을 쓰는 것이 넓지 못함을 논한 부수찬韓光敎의 상소가 있었고,21) 정조 8년에는 중서는 僉正으로 한도를 삼는데 이후로는 어떻게 한계를 정할지를 병조판서가 품의하기도 하였다.22)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관직이 너무 남발되었던지 정조 11년에는 근래 관직이 분수를 넘은

^{16) 《}英祖實錄》권 56, 영조 18년 10월 기해.

^{17) 《}英祖實錄》 권 59, 영조 20년 2월 을해.

^{18) 《}正祖實錄》 권 3, 정조 원년 3월 임오.

^{19) 《}正祖實錄》권 3. 정조 원년 3월 정해.

^{20) 《}正祖實錄》 권 5, 정조 2년 6월 임진.

^{21) 《}正祖實錄》권 10, 정조 4년 10월 정묘.

^{22) 《}正祖實錄》 권 17, 정조 8년 4월 갑인.

것이 많다 하고, 한성판유의 자급을 資憲으로 내리도록 특허하였다.23) 정조 12년에는 남인 蔡濟恭을 우의정으로 등용하면서 재상권의 강화조치를 내림 으로써 노론 내부에 갈등이 생기고 僻派의 권력집단으로서의 결집이 이루어 졌다는 설도 있다.24) 다시 정조 14년에는 재상 채제공의 건의에 따라 근래 승문원이 심히 적체되어 14년이나 된 자도 참하에 있으니 승문워 관원 및 郵官으로 10년 이상된 자는 6품으로 승진시키도록 조치하였다.25)

정조 15년 신해통공을 전후하여서는 정조 원년시기와 마찬가지로 잡과중 인에 대한 임금의 주의가 절정을 이룬다. 정조 14년에는 사역원·전의감·관 상감제조와 형조당상이 잡과합격자를 거느리고 입시하여 親試製講하고 賜科 토록 하였고,26) 雜科講冊을 1차 시험과 2차에서 모두 《大典通編》으로 통일 토록 지시하였다.27) 정조 16년에도 잡과합격자를 임금이 친히 부르는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28) 신해통공이 있던 정조 15년에는 서류와 중인을 騎射將에 천거토록 하였고. 임금이 태학에 나이대로 앉도록 하였으니 문관은 돈녕부 都正에, 음관은 部수에 천거토록 銓曹에 채근하였다.29) 이런 조치들은 정조 13년 수원의 읍치를 八達山 아래로 옮기고 장차 천도할 계획이 수립된 상태 에서 주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리로 해석된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 고 채제공이 영의정에 오르는 정조 17년에는 임금도 자신을 갖게 되었다.

일은 평균에 있는 것인데 하물며 인사행정에 있어서랴. 오래 굽혔던 자는 모 두 수용하였다. 官案에는 嫡子만이 아니고 모두 거론하였다. 전조에 庶類로서 오래 저지되었던 자들은 차차 수용토록 하라. 中人 중에 또한 이런 자가 있으 면 일체 수용하라(《正祖實錄》권 37, 정조 17년 5월 계모).

이런 가운데 灣商後市가 다시 열린 다음해인 정조 20년에는 임금이 근래 조 급하게 奔競하는 것이 풍습을 이루어 30미만의 나이에 緋玉에 처거되는 것을

^{23) 《}正祖實錄》 권 24, 정조 11년 10월 임인.

²⁴⁾ 思悼世子의 죽음에 대한 의리논쟁이 야기된 후의 대립으로 정조 19년에 僻派 가 결집되었다고 한다.

^{25) 《}正祖實錄》권 29, 정조 14년 2월 정축.

^{26) 《}正祖實錄》권 31. 정조 14년 8월 경오.

^{27) 《}正祖實錄》권 31, 정조 14년 9월 정해.

^{28) 《}正祖實錄》 권 34. 정조 16년 4월 신유.

^{29) 《}正祖實錄》 권 32, 정조 15년 6월 정미.

걱정하였고, 우의정 尹蓍東은 중인 이하 연소자는 일이 혹간 소루하고, 노성 한 사람은 거의 주밀하다고 하였다.³⁰⁾

그러나 정조대에도 노론의 우세 속에 남인을 등용하고, 사회세력으로서 취약한 잡과중인 등을 취합하려는 정책은 노론측의 반격에 직면하였다. 신해통공 등 자유정책이 실시되던 정조 15년(1791)에는 서학교인 尹持忠이 제사를 폐지한 이른바「珍山事件」이 적발되고 형조에 남인과 중인출신 邪學罪人들이 포획되었다. 이 때 정조는 다음과 같이 타이를 수밖에 없었다.

대체 中人이란 양반도 아니고, 常人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어 가장 교화되기 어려운 존재이다. 權日身・崔必恭 등에게 의리를 일러 스스로 새롭게 되게 하라(《正祖實錄》권 33, 정조 15년 11월 경진).

그 후 정조가 죽고 세력변동에 의하여 집권한 노론 벽파는 순조 원년 (1801) 천주교 탄압을 빙자하여 辛酉邪獄을 일으켜 반대세력을 잡아들였다. 이 때 좌의정 李時秀는 그들이 정조 15년 무렵 刑官으로서 옥사를 다스렸을 때, 교인들이 다시는 사학에 들지 않겠다고 하여 정조가 살려주고 최필공은 審藥으로 임명했는데 지금 우두머리를 모른다고 하니 안타깝다고 하였다.31) 그 후 포도청 結案에는 중인 崔仁喆이 周文謨를 높이 받들어 도당을 체결하고 형륙을 달갑게 여겨 죽음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역관출신 金顯禹가 周哥를 맞이해 흉상을 걸어 놓고 예배를 보고, 妖書를 외면서 남녀가 뒤섞여 거처하였다고 하였다.32)

여기에서 조선에 천주교가 수입된 이후 신앙공동체의 지도층을 살펴보면, 정조 8년부터 정조 15년 진산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초창기에는 양반세력이 주도하였으나 그 후 신유사옥이 일어나기까지는 중인세력이 중추를 이루게 된 것이 주목된다. 곧 초창기 지도인물 12명 가운데는 중인출신으로 金範禹와 崔昌顯·최필공 외에 양인 1명을 제외하고는 권일신·李蘗·丁若銓 등 8명이 모두 양반의 신분에 속하였다. 그러나 진산사건 이후 10년간에는 지도층이 38명으로 확대되면서 교회지도층의 주류가 중인신분으로 전화되고 있었다. 이들을

^{30) 《}正祖實錄》 권 44, 정조 20년 4월 을유.

^{31) 《}純祖實錄》 권 2, 순조 원년 2월 무오.

^{32) 《}純祖實錄》 권 3, 순조 원년 5월 정유.

신분별로 분석해 보면 양반이 丁若鍾 등 9명(23.68%). 중인이 金啓完 등 21 명(55.26%), 양친이 李存昌 등 5명(13.16%), 성명미상이 3명(7.89%)으로 나타 났다.

중인의 거주지는 모두 서울이었는데 잡과중인으로는 金宗敎 등 의약계통 이 8명이고, 崔仁吉 등 역관도 3명 이상으로 보인다. 역관계 중인들은 먼저 양반출신 교인과 함께 교회를 창설하고 초기 교회의 기초를 닦고 조직적 활 동을 펐다. 그리고 의관계 중인은 약방을 큰 거리에 설치 · 운영하면서 집회 장소를 제공하고 약국을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전교활동을 폈다.33) 지도자 중에는 정조 9년 秋曹적발사건으로 죽은 역관 김범우의 서얼 형제 金履禹도 窩主로서 활동하다가 순조 원년에 순교하였다. 추조적발사건 이후 양반신자들은 배교한 사람이 많았으나 중인신자들은 오히려 천주교 확 산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아갔다.

역관 김범우의 집안은 본관이 경주김씨로서 16세기에는 가장 많은 역관을 배출했던 집안이었다. 김범우가 귀양간 후에도 그의 형제들은 계속하여 서울 에 거주하였다. 역과에 합격한 후 봉사를 지냈던 金續禹는 친척집에 세들었 고 이우와 현우도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집을 집회장소로 제공하기 도 하였다. 그 후 김범우의 직계후손은 밀양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손자 金 東曄은 밀양에 있던 金左根의 田場을 관리하는 집사로 있었고, 선혜청의 屯 監도 맡았다. 그는 친척 동생의 소개로 안동김씨 일문인 김좌근의 재산관리 인이 되었고 중앙의 중인들과도 계속 유대를 맺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더 이상 잡과중인을 배출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위의 경우는 조정에서 금지한 천주교를 믿은 후로 서서히 신분이 하강해 가는 사례가 될 수 있겠으나 민중운동 차원에서는 큰 공헌을 하였다.34)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순조 23년에는 당상역관 劉進吉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신부 들을 맞아들였고, 金大建 등에게 중국어교육을 시키는 등 큰 공헌을 하고 헌 종 5년 己亥迫害 때 순교하였다. 이것은 중인층의 새로운 사회를 향한 의식의

³³⁾ 趙 珖,《朝鮮後期 天主教史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84).

³⁴⁾ 孫淑景 편,《中人 金範禹家門과 그들의 文書》(천주교 부산교구순교자현양위원 회, 1992).

성장이라는 면에서 높게 평가될 문제였다.

조선시대에 잡과중인의 구성변화를 역과의 사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잡과에 일부 씨족의 편중 경향이 심하여 역과에서 합격자의 1/10도 못되는 20대 성씨가 전체의 5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각 시기마다 변동이 있어 16세기에 가장 합격자를 많이 냈던 경주김씨와 밀양변씨는 영조·정조대에 6위와 4위로 밀려났다. 18세기 이후 급히 부상하는 씨족으로는 전주이씨·천녕현씨·남양홍씨 등을 들 수 있다. 18세기 전반 역과에서 6위~10위를 차지한 금산이씨·한양유씨·제주고씨·해주이씨·순흥안씨 등은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주목해 볼 수 있다.35)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역과생도에 입속하기 전의 《完薦記》를 분석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잡과중인의 자제로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신분제 운영이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36)

한편 근래에는 넓은 의미에서 중인에 속하고, 17세기 후반부터 서울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京衙前의 성장을 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조선 전기에는 取才로 충원되었지만 후기에는 주로 경아전집안에서 충원되었다. 이들은 서울의 「우대 (上村)」라고 부르던 삼청동에서 인왕산 기슭에 이르는 지역의출신들로, 권세가의 慊人으로 들어가 그 세력을 이용하여 중앙관서의 서리로진출하였다. 《續大典》에는 101관청에 1,400명 정도의 경아전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나중에 폐쇄적인 집안을 형성하지만, 평민 내지 私賤에까지 개방되어 있었다.37) 이들은 16세기 후반에 와서 중앙관서의 실무를 완전히 장악하

³⁵⁾ 金良洙, 앞의 책, 72~73쪽.

^{36) 《}完薦記》(국립중앙도서관소장 필사본 MF1 81-256).

金玄穆,《朝鮮後期 譯學生徒 薦擧에 관한 硏究-19世紀 前半 完薦記를 중심으로-》(仁荷大 博士學位論文, 1994). 상급기술관에 대한 천거제는 完薦制였다. 완천에 합격하여야 生徒에 入屬하였고, 이들은 取才에 합격해야 確官에 임명되었다. 취재합격자는 6품 이상의 고관으로 승진하려면 雜科에 합격해야 하였다. 완천과정은 폐쇄적이며, 소수의 명문 중인집안에 유리하게 운영되었음이 《通文館志》등에 보인다. 철종 12년(1861)부터 고종 30년(1893)까지 《完薦記》에 있는 被薦者 童蒙 700명, 閑良 120명, 幼學 125명을 더한 945명을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가 중앙전문직 중인의 자손이었다. 피천자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가운데 文武科합격자는 10% 미만이었고, 피천자 중 幼學과 閑良의 4祖身分도 같은 실정으로, 이 때에 중인의 자손들도 幼學을 칭했음을 알 수 있다. 생도가 나중에 역과에 합격한 비율은 14.6%에 불과하였다.

³⁷⁾ 姜明官,〈朝鮮後期 京衙前社會의 變化의 閭巷文學〉(《大東文化研究》25, 1990), 115零.

고, 관청에 근무하면서 서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손쉽게 치부할 수 있었다. 부정은 국가나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던 주요 관서에서 더 욱 혹심하였는데. 영조 2년(1726)에는 병조의 서리가 군포 수십만 필을 횡령 하고. 순조 20년에는 선혜청 서리가 50만 냥에 해당하는 물자를 횡령하고 효 시되었다는 자료도 있다.38) 이들에게는 조선 초기부터 科田이 주어지지 않았 고.《經國大典》반포 이후에는 녹봉조차 받지 못하였다. 벼슬을 마친 후에 驛丞이 될 수 있는 규정도 중종 때에는 폐지되었다.39)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 이들은 액정서의 잡직이나, 변장 등은 하급무관직, 그리고 지방관 따위 의 직임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다.40)

이들의 치부가 쉬워졌던 것은 조선 후기의 생산력이 조선 전기보다 급속 히 확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양란 후에 경제규모가 회복기에 접어들고 대동법 과 균역법의 실시로 인한 상공업의 발달이 곧 생산력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경아전들은 여기서 발생한 잉여생산을 통치구조가 이완된 틈을 타서 중간에 서 흡수하고 부를 증식하였다. 중개무역을 통했던 역관은 부는 무역활동에 재투자되는 자본의 속성은 갖고 있었으나. 경아전의 부는 생산활동과는 유리 된 것이었고. 재생산을 위해서 재투자자본으로 축적해야 하는 요건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여기에서 그들의 부는 소비적이고 유흥적으로 흐를 소지가 농후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경아전들이 문학과 음악 및 그림 등 예술활 동에 기울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洛社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경아전의 閭巷文學 활동은 대개 19세기 말 까지 지속되었다. 18세기 이들의 詩社활동은 대개 두 시기로 보아 17세기의 끝에서 18세기의 전반까지가 한 시기이고. 18세기 중반 이후 18세기 말까지가

^{38) 《}英祖實錄》 권 10. 영조 2년 12월 기미.

[《]純祖實錄》권 23, 순조 20년 8월 계묘.

^{39) 《}中宗實錄》 권 9, 중종 4년 8월 무자 및 권 79, 중종 30년 6월 기축. 姜明官, 앞의 글, 112쪽.

⁴⁰⁾ 姜明官, 위의 글, 126쪽.

馬聲麟무리와 從遊한 林世載・千世弼은 모두 별군직으로 漆原・彦陽縣監이 되었고. 규장각서리였던 李興潤의 아들 李重根도 역시 별군직에 충워되어 南 陽府使에 이르렀다(劉在建, 《兼山筆記》, 172~173쪽). 특히 정조 이후 규장각 서리는 領籤·司鑰, 밖으로 郵官·邊將·五衛將·衛將·殿監·別提 등 除拜가 매우 많아 일찍이 경아전에게 없던 성사를 이루었다.

한 시기이다. 그 중 실세한 역관집안출신 鄭來僑는 사회를 구성원들간의 이익추구의 대립장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불평들의 원인을 지배층의 이익독점에서 찾아 그 모순의 본질을 정확하게 터득하였다. 또한 경아전 시인 林光澤은 여항인의 예속상을 벗어나 사회모순의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시작하였다.(41)

서유럽에서 최초의 公衆형태는 17~18세기에 문학적 공중형태였다고 한다. 그들의 토론주제는 처음에는 예술적 문제에만 국한되었으나, 점차 정치적인 문 제로 바뀌어가면서 공중의 성격 또한 정치적으로 변모하여 갔다. 이러한 변화형 태에서 보면, 18세기 조선사회에서 나타난 양반사대부의 독점물이었던 지식의 대중적 확산과 서울주민들이 소설·판소리 등 예술활동을 즐기는 경향은 이른 바 문화적 공중의 형성 및 확산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42)

이 때에 경아전의 부의 축적이 큰 제재를 받지 않고 가능하였던 원인은 지배계급과 분배하는 공생구조가 갖추어졌던 데 있었다. 지배관료들은 조세를통해 할당받는 것보다 중인들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부의 양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경아전의 중간착취를 묵인하거나 비호해 주면서 막대한 양의 상납을 받았다. 그러나 신해통공 이후 19세기의 상황은 六矣廛이나 市廛 중심의특권상인의 힘이 크게 약화되고, 안동김씨정권이 자유상인까지도 어느 정도장악하고 있었다. 동시에 私商들은 권력에 의존하는 가운데 자신의 경제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43) 이리하여 18세기에 다소 근대지향성을 함유하던 여항문학은 19세기에 와서 여항인층의 본래 속성인 예속성이 도리어강화되면서 체제에 안주하는 소시민적인 것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하였다.44) 대개 숙종때부터 1730년대 사이에 역관의 국제무역이 퇴조하는 시기에 주도권을잡기 시작한 경아전의 여항문학활동은 18세기에 정부재정의 확대에 힘입어 크게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중간착취로 정부세입이 줄고 세도정치권력이 주도권

⁴¹⁾ 姜明官,《朝鮮後期 閻巷文學研究》(成均館大 博士學位論文, 1991), 83·148· 248等.

⁴²⁾ 김호기, 〈공중과 의회민주주의의 구조적 변동-하버마스의 정치이론을 중심으로-〉(《연세사회학》10·11, 연세대 사회학과, 1990).

조성윤, 〈조선 후기 서울지역 중인세력의 성장과 한계〉(《역사비평》21, 1993), 245쪽.

⁴³⁾ 조성윤, 위의 글, 242쪽.

⁴⁴⁾ 姜明官, 앞의 책, 249쪽.

을 쥐는 19세기에 와서는 사회의 보수반동화 기우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동 아 여항시단의 외곽에 있었던 기술직중인들이 다시 등장하여 시사활동에 참 여하고, 군소시사가 많이 출현하여 명멸하게 된다.

(2) 전문직 중인층의 지방관진출

조선시대의 수령직은 관인의 出仕路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수 령·판관·도사 등 전국적으로 350내외의 지방관 자리는 당시 집권세력의 有蔭子弟와 우익세력의 진출자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았다. 부유·대도호부 사・목사・부사와 같은 종3품 이상의 수령직은 淸宦으로 간주하여 임금의 시종이나 문무관 가운데 비교적 가려 뽑은 중견관료가 파견되었으나, 군현에 파견되는 하급수령들은 지위가 낮고 미천한 자나 집권층의 자제. 권세가의 식객·문객, 또는 분경에 의한 매관자가 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45)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이후 특히 심화되면서 실록 가운데 자주 논의되었 다. 경종 4년(1724)에는 지평 金始炯이 다음과 같이 論啓하였으나 임금이 따 르지 않았다.

文・武・蔭의 벼슬길이 분간이 없어 벼슬에 오른 지 10년이 채 못되어 6품에 오를 것을 4. 5품으로 올리고, 두어 달이 못되어 품계를 올리는가 하면, 무신이 곧 장 兵使에 제배되고, … 蔭官이 곧장 군수로 뛰어올라도 전혀 괴이쩍어 하지 않습 니다. 근래 承文院 관원 30여 명을 변통하여 6품에 오르게 한 일은 조급히 승진하 는 풍습만 열어 놓았습니다. … 이제부터는 序次와 格例를 건너뛰어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규율을 중히 여기게 하소서 (《景宗實錄》권 14. 경종 4년 4월 무오).

또한 영조가 즉위한 해에는 정언 金浩가 당시 폐해를 지적한 가운데 백성 에게는 수령이 가장 중요한데 근래 분경이 풍습을 이루어 큰 고을로 천거받 거나 승진하는 자는 權貴의 족속이나 남을 잘 섬기는 무리들이라고 하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탐오나 불법으로 죄지은 자는 추천한 사람을 벌하 면 관리의 재목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46)

영조 10년(1734)에는 이조참의 徐宗玉이 상소하여 수령의 자리를 蔭路나 잡기로서 진출한 자는 7書를 시강한 후에 후보명단에 올려야 하는데 근래에는

⁴⁵⁾ 李樹健、《朝鮮時代 地方行政史》(民音社, 1989), 261 等.

^{46) 《}英祖實錄》 권 2, 영조 즉위년 11월 을사.

78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白徒로서 가자된 자가 오위장이나 첨사의 이력을 얻으면 간혹 입명되는 경 우가 많으니 일체 막아야 한다고 건의하였다.47) 그 후 영조 12년 임금의 하 교에, 먼 지역의 형편이 좋지 못한 현에는 모두 시골출신을 임명하고 조금 부유하고 서울에 가까운 고을에는 반드시 서울출신의 문관과 음관을 가려보 내 차별한다고 하였고.48) 정조 14년(1790) 좌의정 채제공은 무릇 西路수령은 무인이 절반이고, 삼남과 관동의 수백 군현은 거의 당하 음관이라 하였다.49) 수령자리가 서울 문벌자제들이 참상에 오르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자주 바 뀌는 것을 막기 위해 영조 때 수령자리에 2년 이상 근무하도록 조치하고.50) 정조는 守令久任法에 관심을 두고 鈴曹에 채근하기도 하였다.51)

가. 전문직 중인의 수령 등 진출실태

조선시대에 중앙의 기술관을 역임한 자가 실직을 받은 예를 지방관의 경 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것은 《잡과방목》이나 각 과의 《先生案》등을52) 위주로 뽑은 후 경기도 의 《守令案》을53) 참고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각 도의 《수령안》을 더 조사하 련 그수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조선 전기에도 醫官같은 중인들은 일정기간 을 근무한 무에는 동반으로 올려주거나. 간혹 공로에 따라서 수령 등에 임명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를 중심 으로 중인출신 수령은 217명 이상이 347관직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중 의관출 신 92명이 181자리를 점유하여 인원으로는 40%를 넘고. 관직으로는 과반수를

^{47) 《}英祖實錄》권 38, 영조 10년 6월 병오.

^{48) 《}英祖實錄》 권 41, 영조 12년 5월 병오.

^{49) 《}正祖實錄》권 30, 정조 14년 5월 정해.

^{50) 《}英祖實錄》 권 14. 영조 3년 11월 계해.

^{51) 《}正祖實錄》권 12. 정조 5년 12월 갑술.

⁵²⁾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譯科榜目》・《醫科榜目》・《雲科榜目》・《律科榜目》・《籌學入格案》. 李成茂 등 편저, 《朝鮮時代雜科合格者總覽》(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Edward W. Wagner 亞,《朝鮮時代 畵員, 書藝家名單》.

안회준 편저. 《國寶》20 繪畵 Ⅱ(藝耕産業社, 1986).

金斗鍾,《韓國醫學史》全(探求堂, 1981).

특히《醫科先生案》・《雲觀先生案》・《籌學先生案》의 기록은 각 고을 수령경 력까지 자세하였으나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⁵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에 소장된 MF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

〈표 3〉 조선 후기 전문직 중인의 지방관진출

	실 직	守									111- H.J.			
감	- '	判尹	府使	牧使	郡守	縣令	縣監	불명	소 계	察訪 종 6	監牧 官	武官	기타	계 관직/인원
각 부문		정 2	정 3	정 3	종 4	종 5	종 6		관직/인원	1 2 0	종 6			[찬식/인원
	譯官						2		2/ 2			1	1	4/ 3
16	醫官	2	5	1	2		3	1	14/ 10			1	8	23/ 13
세	雲官	_	_	_	_	_	_	_		_	_	_	_	_
7]	律官				1		2		3/3					3/ 3
৹ৗ	籌學				2		4		6/5			1		7/ 6
전	畵員					1	2		3/3			1	2	6/5
	계	2	5	1	5	1	13	1	28/23	0	0	4	11	43/30
	譯官		4			2			6/5			8		14/ 11
	醫官		10	1	21	8	18		58/25	3		4		65/ 32
17	雲官	_	_	_	_	_	_	_		_	_	_	_	_
세	律官				2		1		3/3	1		2		6/6
7]	籌學		2		1	1	4		8/ 7	1		1		10/ 9
	畵員				1	1	8		10/ 7	1	1	1		13/ 8
	계		16	1	25	12	31	0	85/47	6	1	16	0	108/66
	譯官		4	5	4		10		23/ 19	3	1	5		32/ 36
	醫官		11	3	13	6	23		56/28	4	6	4		70/ 36
18	雲官		3	2			4		9/9	9	9	1	1	29/29
세	律官	_	_	_	_	_	_	_		_	_	_	1	1/ 1
기	籌學		8	1	3		8		20/8	8	1			29/ 17
	畵員						3		3/3	3	7		1	14/ 12
	계		26	11	20	6	48		111/67	27	24	10	3	175/121
	譯官	5	13		6	2	13	1	40/ 25	1	2		1	44/ 27
	醫官		9	2	15	9	16	2	53/29	3	3	1	2	62/ 35
19	雲官		1		2	2	1		6/5	11	3	1	1	22/21
세	律官	_	1	-	-	-	-	_	1/ 1	-	_	_	_	1/ 1
7]	籌學		6		2	2	5		15/ 14	7	3	1		26/24
	畵員				7		1		8/6	2	1			11/ 10
	계	5	30	2	32	15	36	3	123/80	24	12	3	4	166/118
합	계	7	77	15	82	34	128	4	347/217	57	37	33	18	492/335

^{*《}각과방목》·《선생안》·《경기도수령선생안》등에 기초한 것이나 수령의 지위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譯官·籌學·雲官·畵員출신 수령이 있었다. 화원은 임금의 초상을 그린 공로로써 특별한 은총에서 수령에 제수되었으나 그 때마다 양반들의 흑평을 받았다. 주자학의 이념에 따라 전문직관원은 백성을 통치하는 자리에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 녹봉도 없는 찰방에 57자리, 조선 후기에 수령이 되기 전에 거치던 監牧官에는 37자리가 임명되었다. 무관 등 기타 관직을 더하면 조선시대 중인은 지방관직으로 335명 이상이 492관직 이상을 역임하였다. 1년에 1자리를 좀 넘는 숫자였다. 그러나당시의 엄격한 신분제 아래에서 과소평가될 수 없는 숫자였다. 수령직은 임금을 대신하여 직접 백성을 다스리고, 결과에 따라 정치의 잘잘못이 평가되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각 세기별로 보면 16세기 이전까지의조선 전기에는 중인이 크게 확립되지 못하고 《잡과방목》에 합격자도 모두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인출신 수령은 몇 십 자리 정도로 미미하였다.조선 후기에 중인수령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7세기에 47명이 85자리, 18세기에는 67명이 111자리, 19세기에는 80명이 123자리를 점유하여 인원과 관직에서 19세기가 가장 많았다.

조선 후기에 중인들이 차지했던 수령자리에 찰방·감목관·무관 등을 포함해 보면 17세기에는 66명이 108자리, 18세기에는 121명이 175자리, 19세기에는 118명이 166자리를 점유했다. 18세기가 가장 많았던 원인은 북벌운동이후 감목관자리가 중인들에게 배정되면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운관에게 감목관이 9자리, 찰방은 9자리나 배정되었던 것이 주목된다. 감목관은 조선 후기에 군비증강을 위하여 군마가 필요한 관계로 수령이 겸직하기도 하였다. 3 司의 관원 등이 지방에 대한 감시를 겸해 파견되던 찰방직에 18세기에도 중인출신이 27명이나 파견되었고, 19세기로 가면서 많은 역관이 수령직에 기용되어 시대가 내려오면서 증인수령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나. 의관의 경제력향상과 신분상승운동

17세기에 의관에게 수령직을 많이 주었던 원인은 小氷河期의 자연재해와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의관을 파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許浚의 《東醫寶鑑》이 임진왜란 후 완성된 사실도 이런 재해시기를 겪었기 때문이

었다.54) 仁祖反正이 일어나던 날, 광해군이 가까운 궁인의 친척인 의관 鄭聃 壽의 집으로 피신했던 사실에서도55) 평소 의관들이 임금을 진맥하며 목숨을 돌보는 관계로 신임이 두터웠던 것을 볼 수 있다. 질병의 치료에 대한 朝官 들의 후의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실학자 崔漢綺가 엮은 《明南樓》에 나오는 얘기로 나라의 병을 고치는 것 을 醫國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치자는 백성의 시름과 괴로움을 슬퍼하며. 그 형색을 살피는 의원이어야 하고 눈앞에 당장 걱정은 없어도 나라에 화가 닥쳐올 것을 진맥하는 의원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관들은 중인수령 중에 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龍顔을 돌보던 首醫들을 왕실에 대한 치료의 사례로서 서울에 가까운 고을의 수령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56) 그리고 의 관출신 내의원 의원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의학이론에 밝은 사대부출신 儒醫들 을 썼는데 이들은 고관 벼슬에까지 승진하는 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다.

17세기 현종 때 의과에 합격한 李枝華는 무과출신으로 나중에 통제사에까 지 오른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인조 17년(1639) 의과에 합격하였던 權愉는 고 양군수 등 6개 고을의 사또를 역임하였다. 또한 효종 2년(1650)에 의과에 합격 한 崔聖仟은 이천을 비롯하여 경기지방 9개 고을 원님을 역임하였다. 각각 내 의나 수의를 지내고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때문이었다.57) 영조 원년(1725) 에 의관 方震變를 連川현감으로. 李燁을 楊口현감으로 삼았다. 세자의 천연두 를 치료한 공으로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자리에 제수하니 지식인들이 이 를 근심하였다고 史官은 적고 있어58) 사대부들의 기술관에 대한 차별의식을 보여준다. 영조 10년에는 대신이 의관 이엽을 牙山현감에 첫째 후보로 추천

⁵⁴⁾ 김 호, 〈16세기 말~17세기 초『동의보감』편찬의 배경〉(《제36회 전국역사 학대회 발표요지》, 1993), 485~492쪽.

의학 학설상의 이론을 재정리하기 위해서는 儒醫와 같은 배경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는데 庶出이었던 許浚은 이것이 가능하였다. 그는 의학과 의술을 하 나의 이론으로 재정리하여 의술 자체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儒醫들의 수준을 뛰어넘어 조선 후기의 전문화된 중인층 의술자들에게 보다 넓은 이론 의 바탕 위에서 그들의 지식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⁵⁵⁾ 鄭載崙, 《東平尉 公私聞見錄》 (養英閣, 1985), 58\,

⁵⁶⁾ 金良洙, 〈조선후기 醫官의 顯官實職진출-경기도 守令 등 지방관을 중심으로 ->(《淸大史林》6, 淸州大, 1994), 13~57쪽 참조.

⁵⁷⁾ 金斗鍾, 앞의 책, 399쪽.

^{58) 《}英祖實錄》 권 6, 영조 원년 6월 기묘.

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문제로 군신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59) 다음해에 왕자가 水痘를 앓고 회복되자 약방도제조 이하 의관에게 상을 주었다. 수두는 본래 중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관이 약을 쓴 공로가 없었는데, 資級을 높인 것이 5명이고 상을 받은 자도 많아서 식자들이 이를 걱정하였다고 한다.60) 이틀 후에 대신이 이를 억제할 것을 청하자, 임금은 의관들에게는 수령을 제수하지 않고 가자만 명한 것을 들어 정당화시켰다. 그리고 관리들도 약 한첩쓰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대신들이 아플 때는 임금이 특별히 御醫를 보내 간병하는 일이 많았다. 정조 12년(1788)에는 영의정 金致仁에게, 16년에는 판부사 차宗岳에게 어의를 보내 질병을 돌보게 하였다.61) 또한 내의원에서 쓰는 약재는 특별히 각 지방에서 공물로 가져오거나 청국사행편에 의관을보내 수입하기도 하였는데, 영조 17년(1741)에는 경상도관찰사 鄭大容이 내의원에 보낸 인삼의 품질이 열악하여 파면되기도 하였다.62)

18세기에 현관을 받은 의관 중에는 형제와 부자가 포함되어 의관가계가 형성된 것이 주목된다. 영조 2년 이후 전주김씨 집안의 金履亨‧履遂‧履固는형제로서 현관을 지냈다. 김이형은 찰방 若礪의 아들로서 利川부사와 坡州목사를 비롯하여 朔寧・高陽군수와 積城현감을 지냈다. 영조 38년에는 김이수의아들 金泰儉이 의과에 합격하여 나중에 부사를 지냈다. 영조 44년에는 명의康命吉이 의과에 합격했는데 9년 후에는 큰아들 康晋三이 의과를 거쳐 군수를지냈다. 강명길은 여러 대에 걸친 명의집안 출신으로 정조가 왕세자로 있을때부터 의약에 관계하고 정조 18년 이후 내의원 수의로서 임금이 위독할 때에도 진맥하였다. 南陽부사 등 10개 고을의 사또를 지냈고, 정조 23년 왕명을 받들어《濟衆新編》을 편집하였는데,63) 이 책은 후에 청나라에서도 중간되었다.64) 그는 순조 즉위년에 정조의 병환을 치료했을 때 잘못이 있다 하여 의관들을 처벌할 때 죽었다. 이와 같이 임금의 총애를 받았을 때는 수령에까지 제수되었지만, 승하하였을 때는 책임지고 귀양을 가거나 사형을 당하는 수도

^{59) 《}英祖實錄》 권 39, 영조 10년 12월 병인.

^{60) 《}英祖實錄》 권 40, 영조 11년 4월 계축.

^{61) 《}正祖實錄》 권 25. 정조 12년 4월 경술 및 권 35. 정조 16년 8월 갑술.

^{62) 《}正祖實錄》 권 37, 정조 17년 5월 무오.

^{63) 《}正祖實錄》권 52, 정조 23년 12월 갑오.

⁶⁴⁾ 康命吉, 《濟衆新編》(통문관, 1968).

많았다. 한편 중인에게 주어졌던 근소한 현관직도 몇몇 집안에 배정되던 사 정에서 18세기 이후 중인 명문집안의 출현과 벼슬이 편중화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19세기에는 함흥출신 李濟馬가 四象醫學을 창안하여 많은 중환자를 고쳤고. 그의 이론은 고종 31년(1894)《東醫壽世保元》으로 저술되어 나왔다. 벼슬은 鎭海현감을 지냈고. 高原군수에 천거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종래 陰陽五行의 哲理的 空論을 배격하고. 임상학적 방법에 따라 환자의 체질 을 중심으로 치료방법을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 加平군수 등 6개 고을의 사또를 지낸 李海昌은 광무 11년(1907)에 太醫院 典醫를 지냈다. 19세기에는 의관에게 부사나 목사 이상의 높은 벼슬이 약간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국의 수령안을 찾아야 정확한 결과가 드러나겠지만, 현재《방목》이나 《선생안》과 경기도《수령안》을 위주로 의관수령을 보면 경기도에 62명이 134자리를 차지하여 약 70% 이상이 경기도에 배치되었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조선 후기에 의관이 파견된 고을은 고양군이 16차례로 가장 많고.65) 金浦郡 9차례, 始與縣(옛 이름 衿川), 龍仁과 陽川이 각각 8차례이었 다. 果川에는 7차례, 삭녕에는 6차례, 富平・安山・振威에는 각각 5차례씩 보 내졌다. 위 고을의 특성은 대개 남북과 동서의 대로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였 다. 이로써 조선 후기 경기도에는 대략 34고을 이상에 의관수령이 파견되어. 경기도가 의관수령이 배치되는 못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세기별로는 20 여 고을에 20명 전후의 인원이 배치되었는데, 17세기에 47자리가 파견되던 것이 19세기에는 38자리로 감소되었다. 대개 서울과 이웃하고 있는 고을에 가장 많은 의관이 수령으로 파견되었는데 18세기 이후 음관이 배치되던 곳 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서울 근처에서 중인출신 수령이 가장 많이 파견되었던 고을 중의 하 나로 보이는 김포군의 사정을 보면 1600년대부터 약 300년에 걸쳐 180명의 사또가 실려 있다. 그 중에서 중인출신으로 보이는 13명 가운데 의관출신은 3

⁶⁵⁾ 그런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에 있는 MF자료 고앙군《先生案》에는 그 곳이 임진ㆍ병자의 전란에 많은 자료가 없어져서 옛날 노인 등의 기억을 더 듬어 겨우 다시 기록한 것이므로 자세한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守令案》 자료 등이 충실치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9세기 전 국의 수령배치는 奎章閣의 《外案》을 통해 간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분의 2가 넘는 9명이나 되었다. 의관은 李馨益과 金有絃을66) 제외하고 모두의과출신이었고, 전직은 太醫출신이 6명이었다. 그들의 반수는 약을 잘못 쓴책임 등을 물어 교체되었고, 명의 강명길의 큰아들 강진삼 등은 내의로 교체되기도 하였다. 그들의 평균적인 수령 재임기간은 10개월 정도였다. 《富平郡先生案》에는 중인출신 6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算員 1명을 뺀 許任・李元龍・李馨益・方泰輿・康命吉 5명이 의관이었다. 부평에서 의관수령의 평균재임기간은 2년이었다.

또한 영조 3년(1727) 이후 3년간과67) 영조 26년(88)에는 앓다가 죽은 자가 30만 명 이상이나 될 정도로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이 때 의관들은 권세가나 부유층에 대한 시술로 신분에 넘치는 보상을 받고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내의원 의관들이 부를 축적하는 위에 관직이너무 상승하는 데 대해서는 당시의 고관들도 비판적이었다.(69) 그리고 법전에서 교수같은 상급기술직 久任官들이 30개월의 임기를 마치면 문반으로 전임되는 특전이 있었는데, 영조 28년에는 교수의 임기가 45개월로 연장되고, 19세기 이후에는 90개월로 바뀌었다.70) 따라서 지방관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조사한 경기도 이외에도 전국의 《수령안》을 더 조사해 보아야하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경기도 밖의 의관수령은 30여 자리로서 큰 비중이 되지 못한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는 몇만 명의 수령 성분을 더 조사해야 하므로 이것은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遞兒職이 많았던 각 의료기관의 職窠는 동반 경관직에서 《경국대전》에 내의원·전의감·혜민서·활인서를 합해서 모두 49자리였다. 이것이 후기의 《속대전》에는 36자리가 되어 27% 정도가 줄었다. 서반 경관직과 동반 외관직을합해서 조선 전기에 81자리가, 후기에는 77자리로 줄었다. 조선 후기에 의료

^{66) 《}肅宗實錄》 권 33, 숙종 25년 3월 무오.

^{67) 《}英祖實錄》 권 56, 영조 18년 8월 병오. 許在惠、〈18세기 醫官의 經濟的 活動様相〉(《韓國史研究》71, 1990), 89等.

^{68) 《}英祖實錄》 권 71, 영조 26년 5월 병진.

^{69) 《}英祖實錄》 권 14. 영조 3년 11월 을해·정축.

⁷⁰⁾ 金指南,《通文館志》 권 1, 官制.

기관의 직제가 축소되고 의관임용의 길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그들은 제 도권내의 지위향상보다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활동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그들의 생활상은 다음의 기사에서도 알 수 있다.

惠民署와 典醫監을 이름하여 두 의료기관에 각각 소속의원이 있는데 모두 의과출신으로서, 지방에 나가서는 審藥이 되고 중앙에 들어와서는 祿官이 되며, 使行 때에 1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활을 영위한다(《備邊司謄錄》76책, 영조 즉위년 11월 1일).

여기에서 사행 때 의관을 파견하는 것은 효종 4년(1653) 이후 내의원의 요 구로 약재무역이 시작된 후 전의감·혜민서의 의원 1명을 번갈아 보내게 되 었다.⑺ 冬至使나 別使의 경우에도 대신 등이 갈 때는 어의 1명을 따로 보냈 다. 영조 4년의 약재무역액은 내의원 약재구입액 4,450냥을 합해 1만 냥에 달하였다. 허용된 八包額은 兩醫司 의원에 은 2,000냥이고, 어의는 당상관으 로 은 3.000냥이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종과 마필을 데리고 갔고. 여러 관청을 통하여 몇 만 냥씩 관청의 은화를 대부하여 무역할 수가 있었다. 18 세기 중엽 왜관무역의 쇠퇴로 은화가 고갈된 후 영조 50년에는 대부를 폐지 하게 되었다.72)

각 도에 종9품 의관이 파견되던 심약은 약재를 진상할 때에 합격여부의 심사를 맡아 모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심약은 전의감과 혜민서 의원의 3개월마다의 취재에서 차점자를 보냈다.73) 조선 후기에 각 도에 파견된 심약 은 경상도 4명을 비롯하여 모두 17명으로, 임기는 지역에 따라 5~24개월에 교체되었다.74) 약재심사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삼과 녹용이었다. 순조 8년 (1808) 내의워의 御供蔘 1년치는 경상도 羅蔘 4근을 비롯하여 37근이 넘었 다.75) 의관들이 약재심사를 통해서 모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 다. 하나는 심약과 蔘商간에, 또는 內局과 京局간에 결탁을 통해서 밀모한 삼

⁷¹⁾ 사행 때마다 寫字官 2명. 畵員 1명. 兩醫司醫院 1명. 雲臺官 1명을 差決한다. 通信使行에도 의인 2명을 보내고 때에 따라 1명을 더하였다(《續大典》권 3. 禮典 雜令)

^{72)《}萬機要覽》財用篇 5. 公用 公銀請貸.

^{73)《}續大典》 권 3, 禮典 獎勸.

^{74) 《}輿地圖書》上・下(國史編纂委員會 영인본, 1973).

^{75)《}萬機要覽》財用篇 4. 內局御供蔘 減省來歷.

만 합격시켜 주는 수단이었다. 이 때에 의관은 많은 情債를 받아서 인삼 1錢에 40냥하던 값이 70냥 이상으로 폭등하였다. 중앙 내국의 의관들도 정채비를 취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더욱 모리적인 방법은 심약들이 巡營으로부터수가를 받고 경국의 삼을 質納하는 일종의 營貢人으로 나서는 방법이 있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의관을 아예 정식 貢人으로 지정하자는 관리도 있었다. 녹용진상을 둘러싼 의관의 모리행위는 주로 북관지방에서 발생했다. 의관들은 합격기준을 녹용 1대당 4냥쭝 이상으로 과다하게 책정하고,녹용대신으로 값을 너무 많이 받아 폭리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三水・甲山의 백성 반 이상이 유망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赴燕醫官, 혜민서나 전의감의 久任, 관북·영남지방의 심약 등은 의관직 가운데 치부하기 좋은 큰 자리였다. 18세기에는 藥令市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했는데 의관들은 축적한 자금을 약재자금으로 투자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76) 정조 때 채제공이 북영에 관리로 있을 때 녹용 1대의 값을 80냥으로 정하였는데 그가 서울로 돌아온 후 심약의 조종으로 400~500냥까지 올랐다고 한다. 77) 이같은 의관들의 경제적 지위향상은 19세기 중반에가면 신분상승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철종 2년(1851) 5월에 잡직관청 대표들이 통청운동을 의논할 때 대표적인 都有司를 전의감 方允中이 맡았다. 그해 7월 중인관청의 1,872명이 준비자금으로 230냥을 모았을 때 의관은 678명이 70냥을 냈다. 이것은 약 3분의 1에 달하여 의관이 중인통청운동에서 가장핵심적 참가세력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해 준다. 78)

18세기 중반 이후 일본에서 은화의 유입이 줄고 사상층이 대두하자, 대부분의 역관들이 배정된 8포의 은조차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역관의 包窠는 송도상인 등에게 팔리고, 당시 무역권이 주어졌던 의주상인들이 직접교역을 담당하였다.79) 무역의 실권을 의주상인에게 빼앗긴 역관들 중에 재능

⁷⁶⁾ 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 《대구약령시》(1984), 66~74쪽. 許在惠, 앞의 글, 125쪽.

^{77) 《}備邊司謄錄》 174책. 정조 13년 정월 12일.

⁷⁸⁾ 韓永愚, 〈朝鮮後期 中人에 대하여-哲宗朝 中人通淸資料를 중심으로-〉(《韓國學報》45, 1986), 69쪽. 그 다음 세력은 역관으로 540명이 50냥을 모금했다. 의관과역관을 합하면 전체 참여인원의 65%이고, 모금액에서는 52%를 차지하였다.

⁷⁹⁾ 柳承宙,〈朝鮮後期 對淸貿易의 展開過程〉(《白山學報》8, 1970), 394쪽.

있는 사람은 다른 일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 일은 의과를 거쳐 경제적 기회 가 보다 많은 의관으로 진출하거나, 농토에 투자하고 인삼포를 경영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것이었다. 정조 19년(1795) 檀園 金弘道는 延豊현감직을 마 감하고 叢石亭 등을 그린《乙卯年畵帖》을 金景林에게 증정하였는데. 경림은 호로 본이름은 金漢泰(1762~?)였다. 牛峰金氏 명문 역관집안의 후예로 정조 10년 역과에 합격하였다. 그는 21세인 정조 7년에 貢使를 수행하여 중국 燕 京에 가서 翁方網(1733~1818) 같은 그 곳 명문・거유들과 교류한 중국통이었 다.80) 단원의 후원자였던 그도 나중에는 鹽商을 하였던 듯하다. 그러나 후손 의 증언에 따르면 장안의 갑부였던 그의 집이 너무 호화롭다 하여 순조 때 처형당했다고 하니81) 당시 중인들의 신분적 한계가 확인되는 사례라고 하겠 다. 한편 당시 명나라의 신분이동 사례를 보면, 1371년에서 1643년까지 신분 이 확인되는 진사합격자는 22.577명이었다. 그 중 특수신분 출신은 8.075명으 로 32명의 太醫와 51명의 민간 의료업자가 포함되어 있었다.82) 이것은 학자 집안 출신 161명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숫자로 신분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명의 진사과에 해당하는 문과시험에 중 인들은 예외로 합격하고도 벼슬을 얻기 힘든 실정이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에 음직으로 수령직에 의관 85명이 168자리 정도에 진출했던 것은 비록 시 기와 경우가 다르나 큰 대조를 이룬다.83)

(3) 부민층의 신분변화

조선 후기에는 각 시기에 따라 농업과 상공업이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었다.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충청 이북지방에 모내기농법이 보급되고 공동노동

⁸⁰⁾ 유홍준. 〈단원 김홍도-가장 조선적인 불세출의 화가-〉(《역사비평》22. 1993). 289쪽.

⁸¹⁾ 필자가 우봉김씨 역관후손 노인에게 전해 들은 것이다.

⁸²⁾ 특수신분에는 군인 5.609명, 장교 905명, 장인 854명, 소금생산자 388명, 학자 160명이 포함되어 있다. 단 일반민의 범주에는 文官도 포함되어 있다(何柄棣, 《中國科學制度의 社會史的 研究》;曹永禄 외역, 東國大 出版部, 1987, 76~81 쪽). Ho Ping-Ti, The Ladder of Success in Imperial China-Aspects of Social Mobility, 1368~1911.

⁸³⁾ 李鍾日. 〈18·19세기의 庶孼疏通運動에 대하여〉(《韓國史研究》58, 1987), 68쪽. 李佑成이 옛 노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한번 중인출신 관료가 취임했던 수 령자리는 士族 嫡出者들이 모두 후임자 되기를 거부하여, 자연히 중인출신자만으 로 보임되는 이른바 중인 수령자리가 되고 말았다고 한다.

조직인 「두레,가 활성화되었다. 모내기법은 이전의 直播法에 비해 김매는 노 동력을 5분의 4나 감소시킴에 따라 廣作도 가능하게 하였다.84) 최근 경제지 리학연구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말기까지 주거지가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확 산되어 갔고, 旱田法의 혁신은 이에 기여하였다고 한다.85) 이 시기에 상업작 물의 발달도 이와 같은 추세와 연관시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산업의 발달 은 상당한 부력을 축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희구하는 다수의 부농과 상공인을 파생시켰다. 조선 후기사회가 변화하는 가운데 중인 층의 신분변동은 이중적 계기에%) 의한 동태변화를 추적해야 한다. 하나는 봉건체제의 위기에 처한 봉건지배층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되는 사회정책의 한 소산이었고. 다른 것은 역사발전에 따르는 백성 의 내재적 성장으로 기대되는 봉건제의 붕괴현상이었다. 곧 앞의 경우는 봉 건적 국가권력 자체가 주동이 되어 신분제를 이완시키는 경우였다. 有功者ㆍ 納粟受職・庶孼許涌・校牛免講・奴婢從母法・奴婢貢革罷 등의 정책을 통해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여러 시혜책을 마련함으로써 봉쇄적 신분체제에 미치 는 위기를 축소시켰다. 그리하여 각 계층의 의식성장에 따르는 지배신분으로 의 욕구를 흡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래에서는 영·정조대에 일어난 자연재해와 국가의 재정궁핍에 직면하여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納粟制度의 실시와 이를 기회로 신분향상을 기도했던納粟富民層의 실태를 중심으로 중인층의 신분변동을 살펴보기로 한다.87)

이 시기에는 주로 賑資확보와 각종 산성의 보수 등에 따른 재정보충을 위하여 空名帖의 발매와 富民勸分 논상제도가 실시되었다. 勸分이란 곧 부유하여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권해서. 私穀을 내어 궁민을 그 능력에 따라 구

⁸⁴⁾ 李海濬, <17·18세기 향촌사회질서의 변화와 촌락기반〉(《제19회 동양학학술 회의강연초》,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9), 46쪽.

⁸⁵⁾ 유제헌, Institutionalization and Cultural Adaptation on the Honam Plain of South Korea, 1789~1982. PH.D. Dissertation, Univ. of Texas at Austin, 1987. 鄭勝謨, 〈향촌사회 지배세력의 형성과 조직화과정〉(《제19회 동양학학술회의강연초》, 1989), 59쪽에서 재인용.

⁸⁶⁾ 金容燮、〈朝鮮後期에 있어서의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占有〉(《史學研究》15, 1963;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一潮閣, 1970).

⁸⁷⁾ 徐漢敎、〈英·正祖代 納粟制度의 實施와 納粟富民層의 存在〉(《朝鮮史研究》1, 伏 賢朝鮮史研究會, 1992), 289~353쪽. 이하 서술은 위의 글에서 많이 참고하였다.

제하는 것으로88) 부민들이 동원되었다. 영조 때 제정된 論賞別單에는 1,000 석 이상 납속하면 실직을 제수하고, 500석 이상이면 賞加 100석 이상이면 散 職帖, 50석 이상이면 納粟涌政帖, 10석 이상이면 3년간 烟役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납속제도의 운영에서 공명첩의 남발과 수령의 늑탈 폐해가 커지자, 영조 21년(1745)부터는 큰 진휼이 필요한 때 이외에는 시행을 제한토록 하였 다. 이러한 노력은 《속대전》과 《대전통편》에서 법제화되어 시행되었다. 영 조ㆍ정조대의 납속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부민층으로 여러 신분층을 포 함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납속의 주 대상은 富民・饒戶층이었다. 각 도에서 올린 부민논상별단에서 확인되는 432명의 부민들을 신분별로 분류해 보면. 전 · 현임 조관이 9%, 사족층이 15%, 중인층이 73%, 양인층이 3% 정도로서 반상의 중간인 중인층이 부민납속의 핵심계층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 부 민 원납인의 핵심층은 새롭게 양반층으로 신분상승을 노리고 사회경제적으 로 지위향상을 갈구한 중인층이었다. 전임관 중에는 오위장ㆍ첨사ㆍ순장이 많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장교출신으로 1,000석 이상을 거듭 원납하여 무관직 을 두루 역임하면서, 중인에서 양반으로의 신분상승과 관계진출을 꾀한 가장 역동적인 부민층이었다. 납속자 중에 유학은 13%로서 상당한 비중이었다. 그 중에는 1,000석 이상을 바쳐 오위장을 받은 자도 있고, 100석 미만을 바 치고 연역면제를 받은 유학도 58%나 되었다. 유학은 18세기 후반 이전에는 양반층이었으나. 그 후 중인·양인은 물론. 천인까지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 면 장적상 유학을 직역으로 기록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또한 향리ㆍ서얼도 18세기에는 유학을 칭하도록 허용되었다.89) 위에서 연역을 면제받는 유학은 양인층에서 납속이나 모칭 등의 방법으로 유학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중간계층에 속할 수 있는 납속부민에는 여러 층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 閑良・鄕品・閑散・鄕人・業武・業儒 등은 반상의 중간층인 중인이다.90) 신분상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군관직을 얻고 다음에는 유학과 대등

^{88) 《}備邊司謄錄》 79책. 영조 2년 3월 11일.

⁸⁹⁾ 崔承熙、〈朝鮮後期 幼學・學生의 身分史的 意味〉(《國史館論叢》1, 國史編纂委員會, 1989), 94~113等.

⁹⁰⁾ 李俊九、〈朝鮮後期 兩班身分 移動에 관한 研究-丹城帳籍을 中心으로-〉(上・下)(《歷史學報》96・97, 1982).

한 신분을 얻고, 마지막에는 직접 유학을 얻는 것을 주 목표로 진행하였다고한다. 당시 정부에서 정권유지를 위하여 군조직 등을 재편하고 강화하는 가운데 군관직 등 신분직역은 향촌사회에서 유학신분을 공인받는 것보다 쉬웠다. 지방관청에서는 재정난 타개의 한 방법으로 군관의 정원을 늘렸으므로 군관직은 무예를 익힌 상민층의 '拔身之計'로 이용되기에 이르렀다.91) 말단지배층인 중인은 양반보다 토지소유 경제력면에서 월등히 우세하였고, 평민층 중에도 부농이 적지 않았다. 그리하여 17~18세기에는 군관직 취득이 신분변동의 한 통로가 되고 있었다.92) 향품은 향임을 맡을 수 있는 향반 내지 양반상층으로 전라도지방에 많았다. 다음으로 資憲・嘉善・通政・折衝・僉知 등의 품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위에서 중인층에 속하는 한량·향품과, 절충·가선의 품계를 지닌 사람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의 권분 모속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이었다. 이들은 50대의 연령으로 그들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수령과 결탁하여 이 시기에 가장 능동적으로 사회신분의 지위향상을 꾀한 신분이었다. 넓게 보면 부민납속제에 적극 참여한 계층은 양인 상층 내지 중인층으로 일차적인 목표는 자신과 자손의 면역을 받는 것이었다. 그들이 주로 이용한 방법은 납속으로 얻은 품계를 호적에 모록하거나 유학으로 모칭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게 되자 그들의 일부는 수령의 보호 아래 있던 軍任이나 面任・향임권을 장악하고 향촌사회에서의 권력구조를 재편해 나갔다. 영조 때 부민들이 면・향임에 진출하고자 한 것은 우선 일족의 면역을 위한 것이지만93) 처음에는 면임을 맡고 마침내 향임을 맡으며 다시 유학서적을

^{91) 《}備邊司謄錄》 140책, 영조 37년 7월 27일 掌令 申近所懷.

⁹²⁾ 大邱府 租岩面의 경우 호적과 量案을 분석해 보면 숙종 13년(1687)에 양반 상 층에 해당하는 A류가 5%, 中人에 해당할 軍官 등 양반 B류가 30.55%였던 것이 정조 7년(1783)에는 38.2%, 48.7%였다. 지배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세기 사이에 35%에서 87% 이상 되게 빠른 속도로 신분구성이 변화하고 있었다. 신분변동이 시작되는 시기는 숙종 40년에서 영조 14년(1738) 사이로 이기간에는 영조 4년에 戊申亂(李麟佐亂)이 발생하였다. 중인에 해당하는 말단지배층에는 軍官・業武가 많았다. 이렇게 신분직역을 상승시키고 호적에 올리는 데는 많은 자금(뇌물)을 써야 했을 것이다(金容變,〈朝鮮後期 身分構成의變動과 農地所有〉,《東方學志》82, 1993, 69~72쪽).

^{93) 《}備邊司謄錄》 152책, 영조 44년 9월 24일.

읽어 한·두 세대가 지난 후. 궁극에 가서는 향반으로 상승하기 위한 것이었 다.94) 새로우 햣임층은 기존의 재지사족과 구분하여 鄕曲品官, 鄕族이라 불 리면서 鄕戰을 격화시키기도 하였다.95) 그러나 그들은 기존의 신분구조를 철 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신분직역제에 관한 연구에서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납속공명첩이 보장하는 사회적 지위는 발급받은 당사 자 1대에 한하고 자손에게는 아무런 보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분변동이 임란 이후 일어났다는 설은 이와 같이 그 주된 근거가 허물어지 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고려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있다.96) 부민층 은 끊임없는 정부나 수령의 수탈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님으로 써 19세기 民亂의 주도계층이 되기도 하였다.

당시 발달한 국내상업과 대외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층의 정 치ㆍ사회적 진출 또한 볼 만하였다. 함경도나 강계ㆍ개성상인들은 원거리 진 출에서 획득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유통뿐 아니라 생산영역에까지 나아갔 다.97) 이 과정에서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巨商들의 관직진출도 나타났다. 순조 10년(1810)경에 홍삼무역권을 독점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을 가졌던 林尙沃은 순조 34년 서북지방에 큰 수재가 났을 때 수재민들을 구휼한 공로로 龜城府使 에 임명되었다. 헌종 13년(1847) 전라도 光陽현감은 부유한 상인들을 公廳에 끌어들이고 읍정을 논의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98) 이것은 당시 막대 한 부를 축적한 상인층과 권력집단의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인층의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그 밖에 李禧著를 비롯한 서북상인들이 평 안도농민전쟁에 대거 참가한 것은 우리 나라 역사상 일찍이 없던 일로서. 상 인층이 상승되어 간 정치지향을 획기적으로 드러내었다. 황해도 谷山에서는

⁹⁴⁾ 徐漢敎, 앞의 글, 334쪽.

^{95) 《}正祖實錄》 권 30, 정조 14년 4월 병인. 수령에 의한 賣鄕은 당시 관서지방이 가장 심하였는데. 그 중에서 이 해에 정 주목사 吳大益이 補民庫의 재정확보를 위해 매향한 사건이 가장 큰 규모였다. (徐漢敎, 위의 글, 333쪽).

⁹⁶⁾ 李泰鎭 등, 《韓國社會發展史論》(一潮閣, 1992), 183쪽.

⁹⁷⁾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김옥균》(북한 사회과학원출판사. 1964;역사비 평사 재편집. 1990. 33~37쪽).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정치사 1800~63》(청년사, 1990), 266쪽.

^{98) 《}日省錄》 179책, 헌종 13년 11월 26일.

92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순조 11년 일반인들이 민란을 일으켰을 때, 경제적 부의 축적을 방해하던 수령에게 불만을 갖고 富商大賈들이 폭동을 배후에서 부추겼다.99) 상인집단이던 金守溫은 쇠가죽・홍삼 등 대외무역에 종사하다가 실패하자 水賊集團으로 변신하여 서울도성에 방화를 기도하며 변란을 꾀하다 순조 29년에 처형되었다.100) 이런 사건들은 이 시기의 상인들이 정치지향의 차원을 넘어서 변혁을 지향했던 사실을 일부나마 보여주는 것이었다.

2) 중인의 통청운동

(1) 통청운동의 발기

조선 후기에 전개되었던 중인들의 신분상승운동은 서로 연계하여 상승작용을 하였다. 이들을 각 부류별로 보면, 서얼들은 주로 정치운동 성격의 通淸運動, 이서층은 문화운동 측면인 委巷文學運動을 맡고, 전문직 중인들은 경제적 상승운동에서 주역을 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자의 대응은 서얼의 통청운동과 기술직 중인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이서층인 경아전 중심의 위항문학운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다. 앞의 두 운동이 명분해이에 의한 체제 위험요소나 지하경제의 비대화로 인한 비정상화 등으로 파악된 반면, 문학운동은 조선왕조의 정책방향과 부합하고 중인층의 사회운동을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오히려 양식있는 사대부들은 문화의 저변확산이라는 면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이러한 중인들의 신분상승운동은 17세기에 단초를 열고, 18세기에 본격화되며, 19세기에 대세화되어 사대부 중심의 조선사회를 압도하게 되는 추세였다.101)

위와 같은 학계의 이해경향에 비추어 본다면 19세기 중반에 대규모로 일어 났던 기술직 중인들의 통청운동은 약간 예외적인 것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영조가 즉위하면서 기대를 걸고 일어난 서얼들의 통청운동은 정조가 원년(1777) 에 〈丁酉節目〉을 반포하자. 비로소 실마리가 풀렸다. 이 결단으로 규장각 검서

^{99) 《}承政院日記》 200책, 순조 11년 5월 6일.

홍희유 외. 《봉건지배계급에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이조편, 51~126쪽,

^{100)《}純祖實錄》권 30, 순조 29년 11월 기해.

[《]推案及鞫案》285型, 己丑推案 2.

¹⁰¹⁾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一志社, 1993), 143 · 168쪽.

관에 李德懋·柳得恭·朴齊家·徐理修 4명의 서얼이 등용되었다. 19세기에 이르면 이 문제는 더욱 표면화되어 순조 23년(1823) 7월에는 경기 등 6도 유 생 9.996명이 상소를 올려 재연되었다. 그들은 權貴庶雙들의 후원으로 수만 냥의 자금을 마련하고. 수만 명을 끌어들여 疏廳을 설치하고 사회문제로 부 각시켰다. 조정의 의견이 모아져서 같은 해 11월에 〈癸未節目〉이 나왔으나 제도상의 규정에 불과하였다. 순조 27년에 다시 허통의 실현을 촉구하였고, 철종 2년(1851) 4월 15일에는 서얼을 허통하여 벼슬에 채용하도록 각별한 관 심을 가지는 조치가 내려졌다.102)

여기에 크게 충격을 받은 중인들은 위의 사건 10일 후인 4월 25일 통례원 에 모여 통문을 만들었다.103) 내용의 대강은 "中庶의 막힘은 조선의 편벽된 일로 몇 백 년이 되었다. 庶族은 조정이 성덕을 입어 문관은 槐院(承文院). 무 관은 宣傳官에 임용되고 있는데 중인은 함께 은혜를 입지 못하니 탄식이 없 겠는가. 원통함을 호소하고자 이 달 29일 麻洞 洪顯普의 집에 모여 상의하고 자 한다"는 것이었다. 끝에는 역관 方孝善 이하 45명이 연서했던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檢漏官 崔壽敏 등 17명이 첨가되었다.

(2) 통청운동의 전개

기술직 중인들은 5월 2일에는 도화서에 모여 11개 관청에서 사무를 맡을 47명의 대표를 정했다. 참여한 관청은 通禮院・觀象監・司譯院・典醫監・惠 民署・律學・籌學・圖畵署・內醫院・寫字廳・檢漏廳이었다. 方禹度를 총책임 자로 하고 別有司에는 玄鎰・卞亨植과, 斐然詩社를 통해 문학활동을 했던 율관

^{102) 《}哲宗實錄》 권 3, 철종 2년 4월 신미.

鄭玉子. 〈朝鮮後期의 技術職中人〉(《震檀學報》61. 1986). 56쪽 이하. 이후 통 청운동부분 서술은 이 글과 韓永愚의 연구 참조.

¹⁰³⁾ 韓永愚, 앞의 글, 67~72쪽.

^{-,〈}朝鮮時代 中人의 身分・階級的 性格〉(《韓國文化》9, 1988), 191~199 쪽. 하버드 燕京圖書館(Yenching Library)소장 필사본 《象院科榜》에는 앞머리 에 철종 2년의 기술직 통청운동자료가 있고, 연산군 4년부터 고종 17년까지 역 과합격자 명단이 있다. 이 운동에 관여했던 인사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수집하 여 역과방목 앞에 수록한 듯하다. 통청자료는 다음 9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 다. ① 辛亥四月二十五日通禮院發通 ② 辛亥五月初二日圖畵署一會時各處有司 ③ 五月初四日金知士相淳第一會時 ④ 七月十三日秦知士膺焕第一會時 ⑤ 辛亥閏八月 十八日景陵幸行時上言草 ⑤輿誦 ⑦失名氏書 ⑧辛亥擬疏草 ⑨雜攷

94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출신 張之琬 등이 임명되었다. 4일에는 새로운 총책임자를 전의감소속 方允 中으로 하고, 製述책임자로 역관계통의 玄鎰‧鄭芝潤(鄭壽銅)과 율관 장지완 등이 임명되었다. 전날 모임이 발기인대회였다면, 이번은 상소문 작성을 위한 실무자 모임이었다.

그런데 중인통청운동이 한창 조직을 늘려가던 5월, 상소문을 맡은 崔必聞・ 張之琬 등 3명의 집에 거사계획을 격려하고 충고하는 이름없는(失名氏) 투서가 들어왔다. 편지는 중인차별이 300년간 계속되었고. 순조 23년의 서얼허통 때도 중인 사이에 허통운동이 있었으나 실패하였으니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적 극적이고 신중히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중인들은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문과합격자는 승문원에, 무과는 선전관청에 등용되는 것을 추구하되 다음의 운 동방법을 택하도록 제시하였다. ①가을에 임금의 행차 때에 상소하고 후에 伏 閣한다면 연기하려는 자가 생기기 쉬우니 복합을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중인관청에서 모금하는 것으로는 경비가 부족할 것이니 부유한 사람의 헌금을 받을 것, ③일을 도모함에는 지략이 있어야 하니 노성하고 경륜있는 사람을 뽑 아 지휘를 받을 것. ④복합 때는 의관을 단정히 할 것. ⑤복합 때 疏章은 유학 을 뽑아 바치게 할 것. 끝으로 ⑥ 중인자제들이 투전과 주색으로 소일하지 말 고. 經史의 학문에 힘쓰게 하여 인재를 길러야 통청문제가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투서에서는 일이 중도에 좌절될 것을 우려하여 8 월 18일 이전에 복합상소부터 올려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현직에 있으므로 일의 형편을 보아가며 온건하게 추진하려는 반면, 한편에서는 이를 비판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재야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월 13일에는 총책임자가 최필문으로 바뀌고,書寫를 맡을 사람을 뽑고, 거 사자금을 각 기관에 할당하였다.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통례원(鴻臚)	105명	10兩	형 조(律學) 85	20
관상감(雲監)	246	24	호 조(算學) 176	20
사역원(譯院)	435	40	도화서(圖書) 79	20
전의감(醫監)	210	20	사자청(寫廳) 53	20
혜민서(惠署)	266	20	검루청(漏局) 15	10
내의원(藥院)	?	30	계 1,670+?명	234兩

위에서 보면 기술직 참여자 1.670명 중에 의 여관계 관원이 911명 이상으 로 통청운동에서 인원과 모금 양쪽 다 과반수를 차지한 듯한데 실제로는 중 인독지가의 모금도 한 몫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준비를 거쳐 윤8월 18일 철종이 景陵에 행차하는 길에 올리려 만들어진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희들이 諸學을 世業하여 地處가 비록 낮고 미천하나 본래는 國初 이래 구 별. 界限된 자들이 아니고. 재능에 따라 수용한다는 것이 옛 상식이었습니다. 《大典通編》에도 醫・譯・律・曆 등에 정통한 자는 京外顯官을 啓受한다고 되 어 있습니다 ... 문헌을 훑어보면 한 구절도 枳寒한다는 글귀가 없는 것입니다. 인조반정 이후 醫譯은 그 업을 세습하게 되고 비로소 中人의 명칭이 생겼습니 다(《象院科榜》,辛亥閏八月十八日 景陵幸行時上言草).

곧 중인의 顯官채용이 막힌 것은 제도가 아니고 관습에 의한 것으로, 그 시 기는 인조반정 이후 직업이 세습되면서 중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士夫와 다르 게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상소문은 유학 金光洙 등 1.872 명의 이름이 연서되어 있어 그 참여규모를 알 수 있다. 또한 투서에서 요청한 대로 중인 가운데 경사를 공부하는 유학을 대표로 내세워 시대적인 요청에 따 라 중인을 청현직에 올려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연대 기에는 위의 기록이 실려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저지되거나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록》에는 철종 2년(1851) 8월 18일 왕이 경릉(헌종릉)과 健元陵 (태조릉)으로 친히 제사를 올리려 행차하였던 사실을 적고 있다.104) 이후 이들 의 활동은 침체하여 같은 해에 상소하려고 다시 꾸민 모의상소문으로 辛亥擬 疏草만105) 남게 된 상황으로 보아, 이들의 통청운동은 제동이 걸렸거나 실패 한 것으로 보인다. 西洲散人이라고 자처하던 한 기술직 중인인사는 순조 23년 이후 中庶가 이미 通望되지 않고 있으니 지금은 존망의 때라고 규정하고, 중 인계층 인사들에게 개인의 이해를 초월하여 적극 일을 촉구할 것을 각성시

^{104) 《}哲宗實錄》 권 3, 철종 2년 윤 8월 신축.

¹⁰⁵⁾ 이것은 윤8월 18일자 上言草와 비교하여 논지가 휠씬 부드러우나 별 차이가 없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족보에 보아도 10대 이상은 淸顯에 오른 이가 많아 본래는 士族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정조 때 차별철폐교지가 있었지만, 문과에 합격하면 교서관(外館). 무과에 합격하면 수문청(守部) 이상으로 출세가 허용 되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였다. 文槐·武宣과 詞訟(수령)직을 요구하며 그쳤다.

키기도 하였다.106)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와서 경제력과 문화적 역량의 향상으로 모처럼 힘을 결집하여 일어났던 기술직 중인들의 통청운동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당시 서얼들의 통청운동이 성공한 데 비하여 결과적으로 기술직 중인들의 통청운동이 좌절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조선 후기에 嫡子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던 서얼 중에서도 권귀시얼들의 상승운동은 자금·조직과 정치적 배경 등에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하였으므로, 조정에서는 정치적 배려로서 그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통청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술직 중인은 특수신분층으로 구성되어나름대로의 구실과 안정을 이루고 있었다.

둘째, 중앙 전문직 중인층 자체내의 무사안일주의 때문이었다. 세습된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자부심을 갖고, 관료체계내에 한 부분을 이루어 분수를 지키려는 풍조가 있어, 이것이 체제를 탈피하려는 과격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데서 재야인사가 건의한 복합상소는 실현되지 못하였고, 철종이 경릉에 행차하던 날 상언조차 실현되었다는 확증이 없다.107) 정가의 압력을 받았거나 자제한108)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인들은 운동이 실패할 것을 우려해서 자제할 만큼,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던 특권이나 이익 또한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또한 중인들이 생활화하고 있던 행동양식 자체에 결코 무리를 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중인계급의 역할과 문화에서 중인들의 이중성을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그들은 실무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으며, 경제력과 권력을 소지하여 재산에서는 양반을 능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양반 밑에서 견제와 억압을 받고, 일상업무에서는 늘 양반관료들의 명령을 받아 시행했고,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양반과 달리 가차없는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언제나 양반계급에 불만을 품고 대항하여야만 하는 사회적 성격을 갖고, 지배엘리트인 양반계급에 대항하는 대항엘리트(counter-elite)였다.109) 이러한 양반과의 미묘한 위치에서 그들의 신분상승운동은 말 못할 내적인 갈등을

^{106) 《}象院科榜》, 輿誦條 評說,

¹⁰⁷⁾ 鄭玉子, 앞의 글(1986), 63쪽.

¹⁰⁸⁾ 김필동, 앞의 글, 251쪽.

¹⁰⁹⁾ 송 복, 앞의 글, 492쪽.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기술직 중인들의 상승운동은 주로 경제적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어 완고 정치적 분야에서는 17세기 숙종대에 개인적 차워에서 정변에 관여했으 나.110) 정치적 권리를 얻지는 못하였다. 19세기 중반에 중인통청운동 또한 비 록 중도에 좌절되기는 하였으나 시도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계획이 주도면밀하고. 참가인원이 대규모였으며. 이후 그들이 단합하고 결속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음 시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다.

3) 향리층의 지위상승과 분화

(1) 향리층의 분화

향리층의 분화와 그에 따른 신분지위 상승운동의 전체적인 모습은 특히 18세기 말 19세기 전반기 향리층의 동향을 담고 있는 《掾曹編鑑》에 잘 드러 나 있다.111) 향리층은 본래 사족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吏族으로 전락했 다는 것이다. 不服臣罰定錄과 土族降吏錄이라는 항목에서는 그런 사정을 정리 하는 가운데 양반으로서의 신분상승을 위한 절실한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향리는 본래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의 양반지배층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분 화하였고 다시 양반사회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계층이었다. 이러한 향리층은 양반과 상ㆍ천민의 중간적 존재로서 일반민에게는 지방행정의 말단지배층으로 존재했다. 따라서 향리의 상층부에서는 본래 사족과 같은 지위에 있었던 것을 근거로 상승하려고 하고, 하층 상천민들의 경우에는 향리라는 직역을 통해 상 승해 보려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19세기 무렵 향리의 동향에 대해 茶山 丁若鏞은 아전으로 다투어 나아가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향리로 들어가려는 자가 다투어 나서서 서로 싸우기를 과거와 벼슬길로

¹¹⁰⁾ 金良洙, 앞의 책, 103·142~143쪽 참조, 鄭奭鍾、《朝鮮後期 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3).

^{111) 《}掾曹錦鑑》은 향리의 사적을 집약·정리한 책으로서, 정조 원년(1777)에 李震 興에 의해 간행되었지만 현전하는 체제로 정리되어 간행한 것은 헌종 14년 (1848)경 이진홍의 증손자 明九에 의해서였다.

李基白、〈19세기 韓國史學의 새 樣相〉(《韓祐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李勛相, (『掾曹龜鑑』의 編纂과 刊行〉(《震壇學報》53・54, 1982).

98 I. 신분제의 이완과 신분의 변동

나가는 듯하여, 작은 고을의 衙前이 때로 1백 명에 가까워져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丁若鏞,《牧民心書》권 4, 吏典 束吏).

조선 후기의 향리는 고려시대나 조선 초기의 그것과 달리 지위나 역할 등에 있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었다.¹¹²⁾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향리층의 분화와 그에 따른 지위상승 형태는 사회전반의 변동과 어울려 나타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향리는 신분이 고정되어 가면서 아전·東胥·人吏 등으로 불렸다. 아전이라는 명칭은 지방수령이 근무하는 正廳 앞에 근무했기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행정단위에 따라 지방의 이서들은 營吏·邑吏 또는 驛吏라고도 불리었다. 영리는 감영리·병영리·수영리 및 진영리의 이서를 의미하며 보통 감영리를 지칭한다. 부·목·(대)도호부·군·현 등의 경우는 읍리로 불린다. 한편 假吏라고 하여 흔히 관아의 잡다한 공역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향리의 보조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충당된 이서배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역에 따라서는 書員이나 貢生을 칭하기도 했다.113) 이서의 충원은 기본적으로 자질을 갖춘 자에 의한 세습으로 나타나지만, 아전의 증가가 급격해지는 18·19세기에는 불가피하게 가리에 의한 충원이 촉진되었다. 새로 들어오는 廳員들은 新禮錢을 납부하고서라도 이서가 되고자 했으며,114) 가리인 서원의 경우에도 신례전을 납부하면 되었다. 이러한 이서의 인원수 증가는 이서층 내부의 갈등관계를 증폭시켰으며, 결국 이같은 대립 속에 음절을 조정할 수 있는 중요직임은 소수의 특정가계에 의해 독점되어 갔다. 이에 따라이서층간에도 계층적분화가 나타났다.

¹¹²⁾ 金弼東, 〈朝鮮後期 地方吏胥集團의 組織構造-社會史的 接近->(上·下) (《韓國學報》28·29, 一志社, 1982).

金俊亨,〈朝鮮後期 蔚山地域의 鄉吏層 變動〉(《韓國史研究》56, 1987). 李勛相,〈『安東鄉孫事蹟通錄』의 刊行과 朝鮮後期의 安東鄉吏-朝鮮後期 鄉 更集團의 地域과 家系에 따른 重層的 構造의 形成과 그 意義-〉(《韓國史研究》60, 1988).

^{-----, 《}朝鮮後期의 鄕吏》(一潮閣, 1990).

¹¹³⁾ 假吏는 본래 향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官奴 등의 천민으로 충당한 것에서 비롯하였는데, 이후 상천민이 이서집단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가리의 증가는 상천민의 신분상승의 한 방편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114)《}掾房謄錄》, 乙丑九月新定式.

조선 후기 햣리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지방의 이서집단이 三公兄을 중심으 로 우영된 데 있다. 삼공형은 가장 중시된 戶長과 吏房의 두 직임을 중심으 로. 지역에 따라 首刑房 또는 頭刑房・副吏房・承發 등이 포함된다.115) 삼공 형과 함께 都書員 같은 중요한 직책은 특정한 향리집안이 차지하며. 이들이 이족 가운데 주도적 가계를 형성하는 首吏집안이다. 지방 이서집단의 구성은 향리직의 최고위인 호장과. 중앙의 6조조직을 모방하여 이·호·예·병· 형・공방으로 직무를 분담한 記官이 중심이 되며, 그 외에 醫生・律生・貢 生・書員・涌引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들어 사족지배체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고려시대 이래 호장들의 지방지배의 구심점이 되어온 邑司는 위축되고 그 대신 이방 중 심의 作廳을 기반으로 한 지방행정체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서들의 집무처 인 작청(속음으로는 길청 또는 질청)은 星廳・人吏廳・吏廳 등으로도 불렸으며, 자신들은 이를 掾房 또는 掾曹라는 존칭으로 부르기도 했다. 이러한 작청체제 로의 발전은 지방행정 실무를 수행하는 집단으로 전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 하여 각 군현에는 安逸房과 같은 형태의 원로들이 결성한 조직을 통하여 읍사 에서 종래 수행한 지방사회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116) 경주의 안일방은 耆 老所에 불과하였으나 17세기 중엽 향리들의 향역기피와 假班들의 번성으로 향 리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 안일방에서 규범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18세기 이 후에는 향리사회를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주지역의 대표 적 이족가계도 17세기 11개에서 18세기에는 9개로,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5개 로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몇 백 년에 걸쳐 호장 및 이방 등의 명단을 수록한 경주의《戶長先生案》이나《上詔文先生案》및 남원과 상주 등에 남아 있는 각 종 선생안이 이들 직임의 세습성과 그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들 선생안을 통해 볼 수 있는 현상은 이족 안에 몇몇 특정가계들이 호장

¹¹⁵⁾ 고려시대의 三公兄은 戸長・記官・將校였다. 조선 후기에는 장교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향리들이 탈락하고 일부가 병방이나 刑房・承發 등의 직임으로 분 화되어 그 중 형방·승발 등이 삼공형에 포함되고, 기관 중에서는 吏房만이 주요 직임이 되어 戶長과 함께 삼공형을 구성하였다.

¹¹⁶⁾ 李樹健、〈朝鮮朝 鄕吏의 一研究〉(《嶺南大 文理大學報》3, 1974). 李勛相,〈朝鮮後期 慶州의 鄉吏와 安逸房〉(《歷史學報》107, 1985).

^{-----, 〈}朝鮮時代의 邑司와 作廳〉(《아시아문화》 6, 한림대, 1990).

이나 이방 등의 중요 직임을 독점한다는 점이다. 《安東鄉孫事蹟通錄》의 분석에서도 안동향리의 감영리 진출양상은,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하여 안동권씨의 4파, 안동김씨의 3파, 의성의 3씨족(李·吳金) 등이 그 전부가 되다시피 했다.117) 이들은 수령출척에도 직접 관계할 정도의 위세를 지녔다. 이러한 가계분화와 함께 주도적인 가계가 등장했다. 이들은 신분상승을 위해 계속 노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상승을 이루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118) 고려시대이후 안동·경주·거창·밀양·합천·남원 등을 비롯하여 많은 군현에는 세거해 온 이족집안이 여전히 읍권을 장악하고 몇몇 집안 중심의 운영체제를 발전시켜가고 있었다는 점이 향리사회 중심부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주도적인 향리집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세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정화되고 있었다.

한편 본래 같은 씨족이라 하더라도 吏族과 士族이 공존하는 경우도 찾아진다. 이 때의 이족가계는 자신의 고정화되어 가던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사족계파의 족보와 합치려는 노력도 해보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이들은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만을 확인하면서 사족의 차별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주도적인 향리층 주변 집안의 경우 상당수의 이족집안이 상층부에서 도태되거나 끊임없이 새로 편입되어 여러 집안이 경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는 지역에 따라 주도하는 집안과 상관없이 새로운 집안이 등장하는 한편일부 집안은 향리직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그 양상은 향리직에서 벗어나 유학층내지 새로운 중간층(업무·군관 등), 평민층 등 다양한 신분으로 다시 분화되어가는 경우이다. 이런 현상은 결국 혈연에 기초한 신분귀속성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119) 즉 이들 집안 중에는 본관을 변경하면서까지 유학층으로의 상승을 꾀하는 집안도 보인다.120) 상·천민의 경우 향리로 진출할

¹¹⁷⁾ 李勛相, 앞의 글(1988) 참조.

¹¹⁸⁾ 崔承熙,〈朝鮮後期 郷吏身分變動與否考-郷吏家門古文書에 의한 사례연구-〉 (《金哲埈博士 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 〈}朝鮮後期 鄉吏身分變動與否考(2)-草溪卞氏家門 고문서에 의한 사례 연구->(《韓國文化》4, 1983).

¹¹⁹⁾ 金俊亨, 앞의 글.

¹²⁰⁾ 幼學은 양반 未入仕者의 직역으로서, 常民이나 중간층이 신분을 상승시켜 가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비록 그 수가 증가하더라도 정부는 昌錄者를 색출하는 방식을 통해 억제하고 있을 뿐이다(李俊九,《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研究》,一潮閣, 1993, 159쪽 참조).

때 「假吏」를 거쳐 상승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향리직에서 벗어날 때는 다른 중인직역으로 나가거나. 유학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가능했다.121)《속대전》이 전 처거조에 유학의 입사가 성문화되면서부터 유학이란 직역명으로 입사하 려는 후보자가 결정적으로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후 중인이나 양인층의 유 학을 모칭하는 현상이 점점 늘게 되었다.

(2) 향리층의 신분지위 상승운동

지금까지 조선 후기 삼공형의 존재와 작청체제를 통해 특정한 집안이 주 요직임을 독점해 가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향리층이 분화하는 양상을 살 펴보았다. 이는 단순한 향리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 후기 사회변동과 관 련하여 중요하다. 즉 사회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新鄕層의 동향과 그에 따른 향권장악 형태를 통해 향리층이 지방행정에 있어 어떤 지 위를 차지하게 되는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 향리들은 우선 행정적인 실무를 장악하게 됨으로써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가운데 신분지위를 보장받으려 하였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전 정·군정·환곡 및 잡역에 걸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연조귀감》에는 한 지역의 화복과 왕화가 오직 향리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122)

지방의 이서층들은 향촌의 제반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작청 외에 6방별 로 별도의 청사를 가지기도 하는데. 刑吏廳이나 戶房所・工房所 등이 그것이 다. 書員廳은 입추에 설치되어 수세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으나 점차 상설기 구화되었고. 그에 따라 도서워도 점차 중요한 직임이 되어 갔다. 향촌의 부 세운영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결에 대해 자세하고 향내 사정에 밝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따라서 향리직 성격의 이서로 충원되었다. 戶籍廳도 호적편찬과 관련한 임시기구였으나 상설 화되어 갔다. 이 밖에 각 창고에는 食色・庫色이 설치되었고. 향교나 향청・

¹²¹⁾ 향리층 변동에 관한 연구는, 향리가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리직이 몇몇 주 도적인 가계에 의해 독점되어 가듯이 향리신분은 세습적이고 고정화되어 간 다고 하여 신분변동과는 무관하다는 연구와, 다른 한편 세습적인 집안이 있지 만 일부집안은 향리직에서 이탈되는 등 사회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고 있다는 연구의 둘로 나뉘고 있다.

^{122) 《}掾曹龜鑑》 권 1, 跋文(李彙載).

서원 등에도 서원이 약간 명씩 배치되기도 했다.

그들은 사족들이 鄕會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작청형태의 契조직을 중심으로 결속하고 있었고, 향안에 상대되는 壇案을 만들어 삼공형을 선발하는 기준을 세우는 한편, 향리에 대한 포폄과 승진 등을 관장했다. 그러나 이런 조직이 지나치도록 비대하게 되어 수령이나 재지사족에게 압박을 가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영덕현령 洪鼎輔는 개혁에 뜻을 두고 엄중하게 단속하여 다스리니, 간사한 胥吏와 교활한 奴僕이 감히 쫓아내려고 하였습니다. 호장·이방·사령·관노 등이 밤에 읍성밖 요새의 도로를 점거한 다음 고을 백성들이 관가에 바치려고 싣고 가는 것을 쫓아 버렸고, 관아에 狀啓를 가지고 감영으로 가는 것을 막아 금할 뿐 아니라, 鄕所를 달래고 위협하여 자기 무리에 들어오게 하되 따르지 않으면 그의 아내를 결박하여 署標를 받았으며 또 병기를 가지고 관문에 돌입하여 흉언하고 위협하지 않은 바가 없었습니다(《英祖實錄》권 1, 영조 즉위년 9월 기사).

영조 즉위년의 사건으로 이서배가 주동이 되어 읍을 장악하고 현령을 쫓아낼 뿐 아니라 향소까지도 달래고 협박하였다. 더 나아가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해 있어서 위로는 수령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생민을 수탈하니, 이러한 향리를 누를 수 있는 수령은 훌륭하다는 123) 말이 나올 정도였다.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수령권을 중심으로 한 수습책이 정부의 기본방향으로 나타나고, 관 주도의 향촌통제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향권이 사족에서 이 향층으로 넘어갔다.124) 이에 따라 이서층이 부세수취 등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신분지위가 이전보다 한층 격상하게 된다. 숙종 38년(1712) 양역변통절목의 이정법이 마련되면서 부세수취에 미치던 사족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그 다음해는 비변사 八道句管堂上制・有司堂上制의 실시 등을 계기로 수령의 절대적 권한이 보장된 것이다. 吏鄕이란 이서와 향임, 또는 이족과 향족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항촌질서내에서 주요한 행정실무를 담당하던 이서층이 대두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족에서 향반화한 부류는 물론, 전통적인 향임층과 새롭게 향임이 되거나 품계를 획득한 부민층을 함께 지칭하는 용

¹²³⁾ 丁若鏞《牧民心書》 권 4, 吏典 束吏.

¹²⁴⁾ 郷村社會史研究會,《조선후기 향약연구》(民音社, 1990). 金仁杰,《朝鮮後期 郷村社會 變動에 관한 研究》(서울大 博士學位論文, 1991).

어이기도 하다. 햣촌의 주도권이 이들 신햣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으 로 지위향상을 꾀하는 것은 당연했고 이런 가운데 舊鄕과 新鄕간에 향전이 치열해져 갔다. 한편 향리층들의 격상된 역할과 지위는 19세기에 들어 위기 에 처하게 된다. 즉 이전에는 이서나 신향들이 買鄕・買任을 통해 신분지위 를 성장시켜 갈 수 있는 통로가 넓었으나. 19세기 전반기의 都結125)과 공동 납 형태로 발전한 각종 부담이 증가하면서 그들에 대한 압박도 심해지고 나 아가 경제기반도 크게 제약을 받았다.126) 도결은 갈수록 감소하는 조세원을 확보하고자 각종 조세를 토지에 부과한 것인데 오히려 조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즉 관이 직접 화폐로 징수한 후 시가가 쌀 때 혀물(쌈이나 면포) 로 바꾸어 국가에 수납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잉여분을 조세 부족 분에 충당한다는 명분이다. 문제는 계절별ㆍ지방별로 쌀값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 있었고, 결국 도결은 結價 상승을 막지 못한 채 지방관의 착취수단이 되어버리는 가운데 부민들은 가장 먼저 수탈대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향리의 신분지위 상승을 위한 노력은 우선 향리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배경으로 나타났고. 나아가 향촌통제책이 변화하는 가운데 한층 격상된 지위를 갖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곧 이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결국 향리층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었다. 그들은 든든한 사회경제적 배 경을 바탕으로 바야흐로 적극적인 신분지위 상승운동을 벌이게 된다.

향리에게는 祿이 지급되지 않았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지급되던 外役田 도 세종 27년(1445) 철폐되었고, 대신 군현 자체내의 수입 가운데 일정한 삭 료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향리들은 주장하기를, "왕도정치에 있어 백성의 恒 産을 유지케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그러한 制産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 은 吏祿이다"라고 하여127) 향리에게 녹을 지급하는 것이 시급하고 나아가 근 본적인 문제임을 천명하고 있다.

¹²⁵⁾ 安秉旭、〈19세기 賦稅의 都結化와 封建的 收取體制의 解體〉(《國史館論叢》7. 1989).

¹²⁶⁾ 金仁杰, 앞의 책, 高錫玤.《19세기 鄕村支配勢力의 變動과 農民抗爭의 展開》(서울大 博士學位論 文、1991).

^{127) 《}掾曹龜鑑》 권 1, 跋(洪直弼).

이서배들은 조선 후기에 들어와 향임층과 더불어 수령과 결탁하여 부세수취기구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그러한 양상은 수령이 재앙을 만나 세를 감면한 것을 도둑질하거나 방납하면 아전이 그 100배는 더 하지만 막을 수가 없다고 하여¹²⁸⁾ 수령이 솔선해야만 막을 수 있다고 경계할 정도였다. 한편 경비부족을 빙자한 賣鄉・賣任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특히 이서직에 대한 매임액수가 커진다는 점이 이서층의 이권과 그에 따른 권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 주고 있다. 이방에 대한 매임가는 이시기에 있어 가장 높았으며 座首직임 등에 비교가 안될 정도였다. ¹²⁹⁾

이러한 상황을 통해 상층 향리층의 경우 아주 확고한 경제적 기반을 갖게된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러 대에 걸쳐 세거하던 이족의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새롭게 등장하는 향리집안의 경우도 향촌내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배경으로 부를 축적하기란 상천민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토지집적을 통한 경우는 물론, 상업적 농업을 통한 부의 축적도 상천민보다 수월했다. 그러한 동향은 대구부 호적의 분석결과에 나타나 있는 雇工의 고용형태를 보면 잘 알수 있다.130) 도회와 농촌지역 5개 면을 분석한 결과 농촌보다 상공업이 발달한도회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확인되었으며, 18~19세기 초엽 고공의 보유율이 가장 높은 계층은 중서층으로 전시기(1705~1858)에 걸쳐 약 8호당 1호 꼴이었다. 보유율이 가장 낮은 양반의 35호당 1호와 비교하면 높은 비율이다. 또한 군관층(業儒・業武・出身・閑良・校生・武學・各色軍官・旗牌官・將官・諸衛者등)보다 이서층(戶長・記官・責生・鄉東・人東・府東・下東・假鄉所・律生・書史・書員・小童등)에 해당하는 아전호의 보유율이 6~7호당 1호 꼴로 더 높고,고공 보유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들은 남의 노동력을 이용하여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아래서도 자신들의 지위를 항상시키는 직접적이고 적 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영조 4년(1728)에는 무신란 이후 수습책의 일환으로 얻어낸 것이기는 하지만 경상도 향리에 한하여 復戶의 특전과 함

¹²⁸⁾ 丁若鏞、《牧民心書》 권 4. 吏典 束吏.

¹²⁹⁾ 高錫珪, 앞의 책, 112~113쪽.

¹³⁰⁾ 韓榮國、〈朝鮮後期의 雇工-18・19세기 大邱戸籍에서 본 그 실태와 성격-〉 (《歷史學報》81, 1979).

께 잡역을 면제받게 되었다.[31] 그 후 영조 50년 경상도 각 읍 향리 374인이 모여 호장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나아가 그들의 官階에 부합되는 예우를 취해 주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32] 이러한 움직임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나아가 각 집안의 신분에 대한 자각을 토대로 향리에 대한 傳記가 집성되기시작했다. 《尚山吏蹟》이나 《연조귀감》이 그것이다. 《연조귀감》이 다시 간행된 것은 처음 편집된 이후 고조된 향리들의 신분상승에 대한 관심과는 대조적으로 사회적 제약이 더욱 엄격해지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일련의 노력이확산되는 추세 속에 나왔다.[33] 19세기를 전후해서는 한 집안의 전승을 위한 것에서부터 《襄陽耆舊錄》・《안동향손사적통록》과 같이 한 지역의 향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확산되어 갔다. 또한 향리들의 사적을 편찬하는 사업 이외에 향손들을 배향한 사우를 건립하거나 중건하는 작업도 시작된다. 거창의 彰忠祠라던가 예천의 毅忠祠, 또는 상주의 壯節堂 중건이 그것이다. 이제는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위업을 과시하는 형태로 확대하여 갔다.

이상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중엽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향리층의 분화와 신분지위 상승운동에 대해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는 신분제 동요가 심해지고 있었고 당시 향리층도 사회경제적 성장을 토대로 소극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신분지위 상승을 꾀하고 있었다. 나아가 자신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향리층의 성장과 의식변화는 이후 사회발전과 더불어 더적극적이고 치열하게 나타나게 된다.

〈金良洙〉

4. 서민층의 성장

오늘날 신분제연구에서 양반 및 중인의 개념과 성립시기를 비롯하여 몇 가

^{131) 《}掾曹龜鑑》 권 1, 復戶獻議.

^{132) 《}掾曹龜鑑》 권 1, 戶長疏.

¹³³⁾ 李勛相, 앞의 책, 231~235쪽.

지 쟁점이 있기는 하나 조선시대의 사회신분을 兩班·中人·良人·賤人의 네 신분으로 구분하는 데는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李重煥은 당시 사회의 신분층을 양반·중인·하인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 하였는데 하인에는 吏胥·軍戶·良民과 公私賤이 속하였다.1) 위의 구분에 의하면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서민층은 양인 또는 양민에 해당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각종 자료에 나타나는 서민층에 대한 호칭은 良人・良 民・平民・常民・常人・庶人・庶民 등 상당히 다양하다. 《受敎輯錄》이나《新 補受敎輯錄》・《續大典》과 같은 법전에서 사용된 실례를 보더라도 서인・서 민・양민 등이 쓰이고 있다.²⁾

서민층은 국가에 대해 稅와 役의 부담을 졌다. 租・庸・調 즉 수확량을 기준으로 일정량을 바치는 田租와 각종 특산물을 바치는 頁物, 그리고 軍役과 徭役의 國役을 부담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부담 외에도 조선시대 양반관료제적인 통치구조 속에서 서민층은 정치・경제・사회・교육 등모든 분야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 서민층은 良役을 부담하는 중심계층이면서도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의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오게 된 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전란으로 인해 야기된 일련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이다. 조선 후기는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변동이 일어난 시기였다. 특히 농업·상업·수공업과 같은 경제분야에서의 변화와 이를 바탕으로 야기된 사회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는 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전란으로 인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실시한 納粟·軍功 등은 신분제를 이완시켜 갔으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상공업의 발달 등에 힘입어 부를 축적하게된 서민층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꾀함으로써 신분변동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서민층이 성장한 단적인 현상들은 후기에 편찬된 법전

¹⁾ 李重煥、《擇里志》、總論、

^{2)《}受教輯錄》 권 5, 刑典 推斷・禁制.

[《]新補受教輯錄》, 禮典 惠恤.

[《]續大典》 권3, 禮典 戶籍.

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후기의 법전에 서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가《經國大典》당시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납속 등 신분상승과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양반과 구별하기 위한 각종 금제조항들이다.3) 조선 전기와는 달리 이같은 조항들이 법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서민층이 성장한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의 경제적 변화양상과 신분변동에서 서민들의 성장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문학과 미술에서 서민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또한 서민들이 성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농업·수공업·상업분야에서 있었던 경제적인 변화와 발전은 곧 경제활동의 중심계층이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서민층의 성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서민들의 성장한 모습은 맨먼저 그들의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며 활달한 경제활동으로 부를 축적하게 된서민들은 신분상승을 꾀하고 더 나은 생활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여 문예면에서도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1) 서민의 경제적 성장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조선기대 사회구성원의 신분을 나누어 보면 士・農 · 工 · 商으로 구분된다. 士는 지배계층으로 양반사족들에게 해당되며, 農 · 工 · 商은 피지배계층인 서민들에게 해당된다. 4民 중에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계층은 농 · 공 · 상이다. 물론 농업 · 공업 · 상업종사자의 신분이 서민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며 양반이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는 주요 수단도 농업이지만 양반은 지주로서, 스스로의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농 · 공 · 상에는 또한 노비도 포함되어 있으며 서민 중에는 어업 · 광업종사자도 있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서민 대다수의 생산수단은 농 · 공 ·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민의 경제적 성장이란 농 · 공 · 상 곧 농민 · 工匠 · 상인의 경제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1) 농민의 경제적 성장

'農者天下之大本' 이라는 산업관 아래서 국가나 서민의 주요 경제적 기반은

^{3)《}受教輯錄》 권 5, 刑典 推斷・禁制.

농업이었으며 서민의 대다수는 농민이었다. 따라서 서민의 경제적 성장은 맨먼저 농업의 발달과 농민의 경제적 성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농토가 황폐해지자 농민층이 토지로부터 유리되는 현상이 심해졌다. 이에 국가는 경작지 확보를 위한 농지의 개간과 농업기술의 개량을 추진하는 등 전후 복구사업에 주력하였다.

농지개간에 신분적 제한을 두지 않았고 개간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면세하고 개간자의 소유지로 인정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개간사업에는 막대한 재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개간에 참여한 계층은 궁방·아문·권세가 등 특권신분층이 더 많았지만 서민층에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상인·부호 등이 개간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에 따라 상업 또는 농작물을 상품화함으로써 획득한 화폐자본을 개간에 투여하였다. 또한 숫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소농민의 경우도 소규모로 개간에참여하여 경작지를 확보하였다. 이렇듯 부를 축적하는 방편으로 개간에참여한 소농민·상인·부호들이 서민지주로 성장하여 갔다.4)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는 토지확보에 못지 않게 농업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생산력의 증대를 들 수 있다. 농업기술의 발달 은 곧 생산력의 증대와 결부되어 서민들의 경제적 성장에 밀접하게 작용하 였다. 농업기술의 발달은 농법의 개량에서 비롯되는데 개량된 농법을 농민이 직접 실시함으로 해서 생산이 증대되어 이들의 경제적 성장에 터전이 되었 다.

조선 후기의 농업기술은 농법·시비법·농기구분야에서 전기에 비해 크게 발전하였다. 농업기술상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水田에서의 移秧法의 보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앙법은 제초작업이나 그 밖에 노동에 있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지력을 이용하고 불량한 묘를 선별할 수 있으며, 이모작의 시행, 穀種의 절약 등의 이점이 있다. 이앙법은 조선 초기에는 경상도와 강원도 남부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졌으나 차츰 수리사업 등 권농정책을 통해 그 장점이 농민들에게 이해되어 숙종·영조대에 이르면 점차 중부·북부지방으로

⁴⁾ 宋讃燮、〈17,18州기 新田開墾의 확대와 經營形態〉(《韓國史論》12, 서울大 國史學科, 1985), 261~269等.

확산되고 18세기 말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에 이르렀다.5) 이앙법의 보급으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졌으며 稻麥二毛作이 가능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다.6)

종전까지 旱田에서는 밭이랑에 파종하는 壟種法이었으나 후기에는 밭고랑에 파종하는 畎種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견종법은 노동력이 절약되고 시비가 잘되고 통풍이 잘되며 소출이 많아지는 장점이 있다. 견종법의 보급 속도와 정도에 지역차가 있었으나 차츰 견종의 경향이 늘어났다. 7) 한전농업기술의 발전은 작부방식의 변화에서도 나타났다. 輸作農法이 보급되어 「一年再種」과 「二年三作」의 방신이 토착화되어 감으로써 토지생산력이 높아지게 되었다.8)

施肥法 변화도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작용하였다. 시비방식이 파종 전이나 또는 파종 때에 시비하는 基肥法에서, 18세기에는 파종 후에 시비하 는 追肥法으로 전환하여 갔다. 추비농법이 전개되면서 비료의 종류가 다양해 지고 작물에 따라 거기에 맞는 시비법이 고안되어 나가고 있었다.9)

17세기 이후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변 농촌에서는 채소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이 발전하게 되었다.10) 새로운 경제작물로 면화·삼베·모시·담배·마늘·채소·인삼 등이 대대적으로 보급되었고, 감자·고구마·고추·호박·담배·토마토 등의 외래작물의 도래와 확산으로 농산물의 상품생산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업적 농업이 전개되었다.11)

농기구 또한 용도에 따라 분화되고 종류가 다양해져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농서나 어휘집에 나타나는 농기구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 수효나 기능면에서 크게 발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¹²⁾

⁵⁾ 金容燮,〈朝鮮後期의 水稻作技術-移秧法의 普及에 대하여〉(《朝鮮後期 農業 史研究 Ⅱ》), 一潮閣, 1974).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시기는 17세기 전 반이며 보급의 가장 큰 원인을 수확량의 증가로 보는 견해도 있다.

⁶⁾ 金容燮、〈朝鮮後期의 水稻作技術-稻・麥二毛作의 普及에 대하여〉(위의 책).

⁷⁾ 金容燮、〈朝鮮後期의 田作技術-畎種法의 普及에 대하여-〉(위의 책).

閔成基,〈朝鮮後期 早田輪作農法의 展開〉(《朝鮮農業史研究》,一潮閣,1988), 189~196等.

⁹⁾ 閔成基. 〈朝鮮時代의 施肥技術〉(위의 책). 244~261쪽.

¹⁰⁾ 金玉根,《朝鮮後期經濟史研究》(瑞文堂, 1977), 368\.

¹¹⁾ 이호철, 《농업경제사연구》(慶北大 出版部, 1992), 99~101쪽.

¹²⁾ 金光彦,《韓國 農器具攷》(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이상에서 언급한 바 농업기술에서의 변화는 경영방식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농업생산력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에 힘입어 경작 가능한 면적이 확대됨으로써 17~18세기에 이르면 廣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광작은 지주・中畓主도 하였지만 자작농이나 작인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借地農으로서 광작을 경영하기도 하였다.13)

논농사와 밭농사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발전은 농민들에게 광작이나 상업적 농업 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층 내부에서는 토지소유 및 경영을 확대해 나가는 부농층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들은 시장의 발달과 상품유통의 활발한 전개와 더불어 농업생산물을 상품화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경영형 부농이나 광작농, 또는 서민지주나 요호·부민이라 불리는 이들 계층의 성장은 농지에서 배제되는 다수의 농민으로 하여금 빈농으로 전략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농민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공장의 경제적 성장

조선시대의 공업은 官匠制 수공업체제로 운영되었다. 즉 관부나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身役으로 생산노동에 동원된 匠人이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수공업제품의 생산담당자인 이들 工匠은 각 사에 등록되어 있었고 중앙관청에 속해 있는 京工匠과 지방관청에 속해 있는 外工匠으로 구분되었다. 工曹・尚衣院・軍器寺・校書館・司饗院・繕工監 등 30여 개의 중앙관청에 129종류의 경공장과 각 도에 26종류의 외공장이 등록되어 있었다. 공장은 성격에 따라 각각 해당아문에 소속, 등록되었다. 예를 들면 綾羅匠・草笠匠・紗帽匠・網巾匠은 상의원에, 漆匠・鑄匠・弓人・矢人・冶匠은 군기시에 속하였다. 각 사의 장인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여 공조와 해당아문에서 보관하도록하였다.40

공장의 신분은 양인과 公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5] 私賤은 《경국대전》의 규정에 의해 공장에 소속시키지 않았다. 공장은 匠籍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¹³⁾ 宋贊植、〈朝鮮後期 農業에 있어서 廣作運動〉(《李海南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70).

^{14) 《}經國大典》 권 6, 工典 工匠.

^{15)《}大典後續錄》권 6, 工典 工匠.

부역해야 하며 부역일 이외의 나머지 시간에는 사적 생산에 종사할 수 있었다. 入役匠人의 상품제조·판매의 실례를 사용원 분원의 장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일정기간 동안 분원에서 관수용 사기제조에 종사하였으며 동원되지 않은 기간에는 사용원에 공장세를 납부하였다.16)

관영수공업은 시설·원료를 관청에서 부담하고 제품도 전부 관청소유이며 제품의 양과 규격을 관청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였다. 관영수공업 외에 민간수공업은 직물류의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가의 부업에 지나지 않는 영세한단계였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수공업은 거의 국가통제하에 운영되어 사적생산활동이 저해되었는데 비해 조선 후기에 이르면 17·18세기에 일어난 일 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수공업체제에 변화가 오게 된다.

종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현물공납으로 조달하다가 대동법의 실시, 화폐의 유통, 상품경제의 발달 등에 힘입은 이후로는 真人 등 상공업자를 통해 조달하였다. 따라서 관공장에서 물품제조를 위한 시설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관영수공업체제가 해체되어 갔다.17) 관장제 수공업체제가 무너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공장의 이탈이다. 화폐의 유통과상업의 발달로 시장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관청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관장에 대한 대우가 불충분해지자, 관장들이 관영수공업의 조직에서 이탈하여 私匠化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관장의 사장화현상은 인조대에서 숙종대에 이르는 17세기 후반에 심해졌다.18)

정조 9년(1785)에 편찬된《大典通編》에서는 司贍寺・典艦司・昭格署・司醞署・歸厚署의 5개 아문의 공장이 혁파되고, 內資寺・內擔寺 등 10개 아문에는 공장이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수공업자를 가지고 있는 아문의 수가 조선 전기의 30개에서 15개로 줄어드는 현상을 보일 만큼 관영수공업은점점 해체되어 갔다.

관청수공업 내부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는 관영수공업의 운영체제면에 서도 나타났다. 장인의 부역제가 점차 고용제로 바뀌고 공장들에게 사적 제조

¹⁶⁾ 姜萬吉, 《朝鮮時代商工業史研究》(한길사, 1984), 112쪽.

¹⁷⁾ 劉元東、〈18世紀 後半期의 手工業發展과 商業〉(《韓國近代經濟史研究》,一志社, 1979), 271等.

¹⁸⁾ 姜萬吉, 앞의 책, 110~111쪽.

와 판매가 허가되었다. 대부분의 관설 제조장이 점점 해체되어 갔고 존속하더라도 몇몇 특수한 분야의 제조장을 제외하고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남아 있는 몇몇 분야의 관설 제조장의 경우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17세기 이후 관수용 기와의 경우 대부분이 私營製瓦場에서 조달되었으며, 관수용 사기제조장인 분원의 경우도 순수한 관영수공업체로서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19) 관영수공업의 쇠퇴로 관에 예속되어 있던 공장들이 관의 통제에서 풀려나 자유수공업자로 전환하면서, 사영수공업자인 私匠이 크게 증대되어이들에 의해 전업적 생산이 이루어져 생산활동이 활발해졌다.

한편 각 지방에서 현물로 공납하던 많은 관수품을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 공인이 민간에서 구입하여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공인들은 생산비를 먼저 대주어 수공업자들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先貸制的 수공업조직이 성립되었다. 상인들이 자본을 투자, 생산에 참여하여 그 생산품을 판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들 商人物主의 출현으로 상업자본이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수공업생산의 규모가 확장되어 장인의 사적 제조 및 판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민간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상인물주의 분원장인지배로 분원이 민영화되기에 이를 정도였다.

민간수공업에서 전업적 생산이 이루어지며 생산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자 18세기 후반에는 미약하나마 공장제 수공업의 형태로까지 발전하였다. 鍮器店・水鐵店・砂器店・漆器店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유기점의 경우 분업적 협업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수공업자들은 刀子廛・床廛・薪鐵廛의 경우에서처럼 자기 생산품의 판로를 위해 시전을 개설하여 경영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冶匠・驄匠・毛衣匠 등 일부 장인들은 원료제품의 독점판매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다.20)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수공업분야에서의 분업적 요소는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19세기에는 초기 자본주의적 수공업체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21)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수공업의 변화는 상업자본의 수공업 지배와 관청수공업의 민영화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관장제가 붕괴되고 사장

¹⁹⁾ 姜萬吉, 위의 책, 111~129쪽.

²⁰⁾ 宋贊植. 《朝鮮後期 手工業에 관한 硏究》(서울大 韓國文化硏究所, 1973).

²¹⁾ 劉元東, 앞의 글.

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수공업생산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여 공장제 수공업, 분업적 협업에로까지 발전해 갔다. 그 과정에서 공장들은 관영수공업체제하 에서 보다 성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적 생 산장의 운영, 市廛개설, 원료의 독점판매 등의 현상은 공장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결과라고 하겠다.

(3) 상인의 경제적 성장

조선시대에는 상업을 末業 또는 賤業이라 하여 천하게 여겼다. 때문에 양 반신분은 상업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18세기 이후에는 상당수의 양반층이 노복이나 하인을 통하여 혹은 직접 상업에 종사하는 예도 있었지만, 사회분 위기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업종사자는 주 로 서민층이었다.

조선시대 상인을 구분하자면 크게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市廛商人, 지방鄉市의 행상, 대외무역 종사자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상인의 활동은 상업에 대한 조선왕조의 末業觀으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시전은 관청의 수요품을 조달하는 한편, 도시민의 생필품을 판매하던 상설시장으로 시전상인은 관부와 결탁하여 특권을 행사하였다. 지방의 향시는 농민의 농산물이나부업으로 생산된 가내수공업품 위주였기 때문에 상품유통이 활발하지 못하고 상행위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외무역은 중국・일본을 대상으로 사신들에 의해 행해진 공무역으로 국가의 독점하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업계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17세기 후반부터였다.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수공업의 발달 등으로 생산력 이 증진되고, 금속화폐의 보급과 대동법의 시행으로 조세방법이 바뀌고, 상 품경제·화폐경제가 발달하는 등 유통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공 인·私商·客主·旅閣 등 새로운 상인층이 대두하면서 상인들의 활동이 활 발해졌다.

공인은 대동법 시행 이후 각종 공물을 쌀로 대납하면서 국가가 貢價를 지급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조달하도록 하면서 성장한 상인이다. 왕실과 각관부의 수요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공인들의 물품구매 활동은 서울을 비롯해지방의 장시에 걸쳐 활발히 전개되었기 때문에 상품유통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

었다. 이들은 조달권을 가진 상품에 대해 禁亂廛權을 행사하거나 수공업제품 인 경우 선대제적 수공업장을 경영하면서 특권적 상인으로 성장하여 갔다.

그러나 후기로 올수록 정부에서 시가에 가까운 공가를 지출하였기 때문에 공인들의 이윤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공인층을 분해시켜 공가자체의 이윤을 추구하는 층과 이윤 외에 유통 및 제작과정에서의 잉여와 공인권이 보장하는 특권을 추구하는 층으로 나뉘어졌다. 전자는 18세기 이후점차 도태되어 갔으나 후자는 계속 공인권에 투자·성장해 갔다.22)

사상인층은 조선 후기 상업계를 재편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상인들이었다. 토지로부터 유리된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상업인구가 증가하면서 대두된 사상인층의 성장은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체제에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7세기 이후 서울에는 鐘路와 서대문 밖의 梨峴,남대문 밖의 七牌에 시장이 서면서 사상들의 세력이 더욱 커졌다. 지금까지특권을 행사하던 시전상인은 사상인층으로부터 상권에 침해를 받게 되자 금 난전권을 얻어 전매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시전상인들은 영세상인들을 난전이라 하여 금압하면서 상품전매권에 의거, 상품을 싼값에 매점하여 물가를 조정하고 가격을 앙등시키는 페단을 낳았다. 이러한 官商 독점체제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18세기 이후에는 수공업자·농민·어민 등 소상품생산에 기반을 둔 富商都賈가 난전세력의 주체를 이루어 갔다. 경강상인, 칠패·이현의 상인, 광주·양주·포천 등 서울 주변의 상인들로 구성된 사상都賈에 의해 관상체제는 쇠퇴해 갔다.23)

경강 주변의 사상과 시전이 아닌 공인계열의 상인이 성장하게 되자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이라는 독점권만으로는 사상인들의 난전을 억제할 수 없었다. 정부는 난전 금압정책을 완화하고 상업의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신설 시전을 금압하지 않고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금난전권지역을 제한하여 六矣廛 이외의 물종에 대해서는 자유판매를 허용하였다. 정조 15년(1791년) 정부는 육의전을 제외한 모든 시전상인들로부터 금난전권을 박탈하는 「辛

²²⁾ 吳美一, 〈18·19세기 頁物政策의 변화와 頁人層의 변동〉(《韓國史論》14, 서울 大 國史學科, 1986).

²³⁾ 金玉根, 앞의 책.

亥通共」을 시행하였다. 이제 통공정책으로 사상인들은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던 것이다.²⁴⁾ 시전은 물론 일반 공인에 대해서도 독점구매권과 금난전권을 철폐하기에 이르렀다.

松商·江商·灣商·萊商 등 사상인의 활동은 규모가 크고 활동범위도 상당히 넓었다. 개성상인(송상)은 대동법 실시 이후 夢真을 둘러싸고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자 인삼을 상품화하여 상업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엽에 걸쳐 인삼의 재배가 가능하게 되자 인삼의 상품생산과 판로를 확대하여 갔다. 의주와 동래상인과도 연결하여 중국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에도 관여하였다. 이들은 인삼을 공식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것 외에도 밀수출로 크게 이득을 보았다. 17세기 중엽에 이미 인삼밀상에 종사하는 서울과 개성상인들이 모두 부유했다고 할 정토로 자본을 축적해 갔다.

밀매를 통하여 자본을 축적한 潛商 가운데는 蒙圃경영이라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에 투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들은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도고상업을 전개하여 자본집접에 성공하였다. 19세기 이후에는 이들의 삼포경작이 더욱 발달하게 되며, 이들이 얻을 수 있던 상업적 이윤도 한층 증가되어 갔다. 인삼상인의 자본규모는 상업자본의 단계에서 산업자본의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²⁵⁾

경강상인(강상)은 17~18세기 이후 삼남지방의 정부세곡 및 양반관료층의 소작료 운반의 대부분을 청부하여 대규모 운수업자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거의 전국적이었으며 취급상품은 곡물과 魚鹽이 중심이었다. 17~18세기 이후 서울의 도시적 성격이 짙어짐에 따라 이들의 상권과 자본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고도상업으로 전개되었다.26) 18세기 말경 이들은 점차 船匠 등을 고용하여 造船都賈까지 경영하였다. 이들의 조선업은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관아의 선박까지 건조·조달하게 됨으로써 일반화하였고 그 자본규모도 확대되어 갔다.27)

²⁴⁾ 姜萬吉,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高麗大 出版部, 1974), 137쪽.

²⁵⁾ 姜萬吉, 위의 책, 109~130쪽. 吳 星, 《朝鮮後期商人硏究》(一潮閣, 1989).

²⁶⁾ 姜萬吉, 위의 책, 제2장 京江商人과 造船都賈 참조.

²⁷⁾ 姜萬吉, 앞의 책(1984), 191쪽.

경강상인 외에 송도·평양과 같은 대도시지역의 미곡상인들도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곡물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자 미곡을 대량으로 매집·판매함으로써 자본을 축적하여 갔다. 이들은 소유자본의 규모가 크고 상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부상들로 米價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고 있었다. 그 밖에 주로 외방을 왕래하면서 활동을 벌이는 미곡상인도 있었다. 선박 등을 이용하여 산지·포구·장시 등지에서 미곡을 매집하기도 하였고 중소도시와 향혼지역을 다니면서 미곡을 판매하기도 하였다.²⁸⁾

이 밖에 목재를 취급하는 목재 사상들도 목재매매를 통해 적지 않은 상업적 이윤을 남겨 부상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지향수령·관리·궁방 등과 연결하여 벌목에 나섬으로써 상업적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사상층 가운데 「부상」으로 성장한 상인들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는 데는 자본력 못지 않게 관부와 밀착되거나 양반관료층과 결탁하는 것이 바탕이 되었다.²⁹⁾

이처럼 사상인층의 상업활동이 활발해지자 물품의 운반·보관·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客主와 旅閣主人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들은 상품매매의 중 개와 관련된 숙박·운송·보관·금융업 등도 수행하였다. 경강과 외방의 여 객주인은 상품유통의 독점적 중개권인 主人權을 행사하여 상품유통권의 주도자로 행세하였다. 18세기 이후 이들은 양반·궁방·아문과 결탁하게 되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전후하여 주인권은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더욱 강화되어 갔다.30)

18세기 이전에는 포구가 어염의 생산 및 유통, 군사상의 방어, 세곡운송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으나 차츰 큰 강 하구의 대포구들이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발달하였다.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지나면 소포구들도 상품유통의 거점으로 변하게 되었다. 포구는 장시와 연결되어 상품유통의 거점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18・19세기 상품유통의 발전은 장시의 발전과 외방포구의 확대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浦口主人層이 독자적 상품유통 권을 장악하려 하였고 도고상인으로까지 성장하였다.31) 포구나 장시에서 상품

²⁸⁾ 吳 星, 앞의 책, 제3장 米穀商人과 米價의 變動.

²⁹⁾ 吳 星, 위의 책, 제2장 木材商人과 松禁政策 참조.

³⁰⁾ 李炳天,〈朝鮮後期 商品流通斗 旅客主人〉(《經濟史學》6, 1983).

³¹⁾ 高東煥、〈18・19세기 外方浦口의 商品流通 발달〉(《韓國史論》13、서울大 國史學

유통을 매개하면서 포구상업을 주도했던 포구주인의 경우에 주인층의 명칭은 浦口主人・船主人・江主人・施客主人・浦主人・客主・旅閣・旅主人・邸店 등 으로 다양해지는데, 이들의 명칭이 이처럼 다양하게 기능화되어 간 데서도 상 업활동이 활발해진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장시가 발전하여 대도시에 한정되었던 상설 시장이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었고, 농촌에서도 정기적인 장시의 수가 증가하며 규모도 커지고 점차 상설화되어 갔다. 《東國文獻備考》에 의하면 18세기에는 전국의 장시가 1,064개소에 이르게 된다. 숙종대를 전후한 시기에 장시의 개설이 지역적으로 확산되며 장시가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를 지나면서 시장권이 형성되는 장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장시가 소멸・신설・흡수 등의 과정을 거쳐 큰 장으로 발전하였다.32) 4~5개의장시가 날짜를 달리하면서 개시되어 각 지방의 장시는 일정한 범위내에 시장권을 형성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하나의 장시로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이장시가 발달하게 되자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범위도 확대되었다. 또한 상업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공민들 가운데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여 팔거나 수공업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소득을 늘려가기도 하였다.33)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 상인들은 다양한 상업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였다. '京江富民'·'京江巨富'·'江上富民輩'·'五江富商輩'등으로 불리던서울과 주변의 부상들, 송도·동래·평양 등 대도시에도 존재했던 부상들, 외방포구나 지방의 장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상층 가운데 부상으로 성장한 상인들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상인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2) 서민의 신분상승운동

서민은 조선사회 구성원의 근간을 이루며 국가에 대해 부세를 담당하는 중 심계층이다. 그러나 신분상 많은 제약과 차별을 받아야 했다. 특히 役의 과중

科. 1985).

³²⁾ 韓相權,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 研究-慶尚道地方을 중심으로-〉(《韓國史論》7, 서울大 國史學科, 1981).

³³⁾ 金大吉,〈朝鮮後期 場市의 社會的 機能〉(《國史館論叢》37, 國史編纂委員會, 1992), 174~181\(\text{\text{\text{81}}}\)

한 부담은 서민들로 하여금 군역을 피하고 신분상승을 꾀하도록 유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상승이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서민들은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신분상승 을 이루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서민들의 신분상승 욕구와 더불어 당시 정부의 사회정책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전후 복구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흉년·재해 등으로 인한 진휼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納聚策을 실시하거나 空名帖을 발행하여 신분상승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호적을 담당하는 籍吏와의 결탁 등 비합법적인 방법으로도 면역 내지 신분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공인 또는 묵인하에 서민들은 선분상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서민들의 신분상승운동의 양상을 그들이 이용했던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향교에의 冒屬을 들 수 있다. 서민의 자제는 향교에 입학할 수 없었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16세기 이후가 되면 군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또는 신분상승을 위한 방편으로 향교에 입학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인조 22년(1644) 落講校生充軍法이 시행되자 양반들은 額內校生으로서의 입학을 회피하고 대신 서얼・평민의 자손들이 입학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더욱 심해져 향교의 생도는 東齋生과 西齋生으로 신분이 구별되었으며 서재생들은 군역을 피하기 위해 향교에 모속한 평민들로 채워졌다. 「교생」이라는 용어가 서재생만을 지칭하는 말로 고착화될 정도였다. 일정한 양의 돈이나 곡물 등을 납부하고 원납교생이라는 명목으로 이름을 校案에 등록하였는데 그 수가 한 군현에 무려 수백 혹은 수천에까지 달하였다. 34)

인조대부터 이미 경제력이 있는 평민이 교생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며³⁵⁾ 18 세기에 이르러서는 교생의 대다수를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³⁶⁾ 경제력이 있는

³⁴⁾ 全見穆,〈朝鮮後期 校生의 身分에 관한 再檢討〉(《宋俊浩教授 停年紀念論叢》, 1987). 225~228쪽.

^{35)《}仁祖實錄》권 14. 인조 4년 11얼 경인.

³⁶⁾ 尹熙勉,《朝鮮後期 校生研究》(一潮閣, 1990).

서민들은 교안에 모속하거나 免講帖을 구득하여 신역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교생이 됨으로써 본인인 군역과 잡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 손 또한 면역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교생신분을 계제로 하여 향족이 되었을 경우 다시 掌議・色掌과 같은 校任 진출을 꾀할 수도 있었고 또 軍任・鄕任으로 진출하여 신분상승을 이루기도 하였다.37) 아주 드문 예이지만 교생신분을 계제로 생원・진사시를 통해서 신분상승을 이룩한 예를 《司馬榜目》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마방목》에 의하면 인조 26년(1648)에서부터 정조 7년 (1783)에 이르기까지 23명이 교생신분으로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다.38)

다음 신분상승 수단으로 납속제도를 들 수 있다. 임진·병자 양란으로 인한 재정궁핍과 잦은 흉황을 만나 국가에서는 飢民·賑恤을 위한 賑資 확보, 산성의 축조와 보수, 관청의 부족한 재정 등을 관작을 팔아 보충할 목적으로 납속제도를 실시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 계속 실시된 납속제도는 현종·숙종대에 이르러 각종「募粟別單」이 제정되어 공명첩이 남발되고, 영조 8년(1732)에 〈富民勸分論賞別單〉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되기에 이르러《續大典》·《대전통편》에 반영되었다. 〈부민권분논상별단〉에 의하면 1,000석 이상자에게는 실직을 제수, 500석 이상자에게는 賞加, 100석 이상자에게는 散職帖 成給, 50석 이상자에게는 納粟通政帖 성급, 10석 이상자에게는 3년 동안 烟役이 면제되었다. 납속제도는 재해와 기근의 반복으로 정조대에도 계속 시행되었다. 39)

같은 願納人이라 해도 공명첩을 성급하여 모곡할 때 納米價는 직첩에 따라 달랐고 같은 직첩이라도 사족과 양민의 납미가에는 차등을 두었다.40) 공명첩은 비록 授職者의 성명이 기록되지 않지만 정부로부터 공명첩에 명시된 직위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납속에 의해 취득한 관직은 제도상으로는 실직과 엄격한 차별이 있어 正科 출신이나 東西班 正職人들과는 달리 취급되었다.41)

³⁷⁾ 徐漢教,〈英·正祖代 納栗制度의 實施의 締栗富民層의 存在〉(《朝鮮史研究》1, 伏賢朝鮮史研究會, 1992), 330~331\,

³⁸⁾ 崔珍玉,《朝鮮時代 生員進士 研究-司馬榜目의 分析》(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³⁹⁾ 徐漢敎, 앞의 글, 295~307쪽.

^{40)《}新補受教輯錄》, 禮典 惠恤.

^{41)《}受教輯錄》 권 5, 刑典 推斷.

납속제도의 주 대상은 富民・饒戶層이었다. 부민이란 茶山에 의하면 "그집안에 저장한 곡식이 여덟 식구가 먹고도 오히려 남는 것이 있는 자"나, "흉년이 들었을 때 최고 1,000석에서 최하 20석을 낼 수 있는 자"였다.42) 부민·요호층에는 대지주·서민지주·상인 등 다양한 계층이 있었지만 하층신분의 부민들은 당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힘입어 부를 축적하여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었다.

납속수직으로 바로 양반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었다. 납속을 통한 면역은 납속자 1대 또는 10년 내지 3년만 가능했기 때문에 일시적이었다. 양인납속자들이 향촌사회에서 사족이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그보다는 경제력을 이용하여 국가권력구조 안에 포섭되어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하는 것이일반적이었다. 교·원생이 되거나 군관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향임·면임을장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인으로의 신분상승을 기도하였던 것이다.43)

또 다른 피역방법은 호적의 개변이었다. 납속첩을 소지한 자는 대개 지방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이었으므로 호적을 담당한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직역의 모록을 통하여 호적상의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공명첩 구득으로 인한 면역은 일시적이지만 호적에 납속품계를 기입하여 몇 대가 지나면 영구히 면역하게 되었다. 이들은 군관직 내지 관작을 모록한다든지 또는幼學・業儒를 모칭하여 호적상 신분상승을 꾀하였다. 신분상승을 이룬 서민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울산의 경우, 상민호의 비율이 영조 5년(1729)에는 59.78%였던 것이 고종 4년(1867)에는 33.96%로 격감하고 있다.41)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의 호적대장을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밝혀진 양반호구의 격증, 상민호구의 격감, 노비호의 실질적 소멸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45)

⁴²⁾ 丁若鏞、《牧民心書》 권 13, 賑荒六條 勸分 참조.

⁴³⁾ 徐漢敎, 앞의 글, 325~331쪽.

⁴⁴⁾ 鄭奭鍾,〈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變化-蔚山府 戸籍臺帳을 중심으로-〉(《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 一潮閣, 1983), 249쪽.

⁴⁵⁾ 대구 울산・단성 등의 호적을 분석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신분상승 현상이 일어 나 신분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서울 북부호적과 金化호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17세기에는 오히려 신분하강 현상이 지배적이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E.W. Wagner, 〈17세기 朝鮮의 社會階層-1663년의 서울 北部

이처럼 다른 신분에의 모속현상은 영·정조대 이후에 더욱 심해져 갔다. 호적제도의 문란으로 인한 호적의 개변이나 재력있는 농민들이 이른바 換父 易祖의 방법으로 몰락양반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족보에 끼어 들어가는 방법 등이 가능해져 재력있는 서민층들의 상당수가 신분상승을 이룩하는 통로가 열려있었던 것이다.46)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분상승을 꾀한 서민층의 성장한 모습은 鄉會의 운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기 이래 향회는 지방민의 통제책으로 향약을 보급하고 향촌지배층의 통치기구로 기능하였는데 영조·정조대에 이르면 여론을 중시하여 신분적인 구별없이 대소민 모두의 의견을 묻게 되었다. 18세기중엽부터 향회에 일어난 새로운 경향은 기존의 교화 위주의 향촌자치체계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전적으로 양반중심이었던 것에서 일부 평민들까지도참가하는 향회가 되었다.47)

양반지배층이 중심이었던 향회에 일부 평민들까지도 참가하게 되어 향회를 구성하는 향임층의 성격이 달라지게 되었다. 향안 작성과정에서 願納・賣鄉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자 즉 요호들이 쉽게 향임을 맡을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호는 농업뿐 아니라 상업・광업 혹은 특수한 貢市人이나 主人・邸吏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 19세기에는 요호들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향임직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 전곡이 많은 평민 가운데는 진휼할 때 出財나 매향을 통해 좌수나 별감자리를 노리는 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48) 조선 후기의일부 경제력이 있는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신분상승을 이룩하고 그 혜택을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戶籍을 중심으로-〉, 1974; 梨花女大 史學科研究室編譯,《朝鮮身分史研究》, 1987 와 Susan Shin. 〈17세기 金化地域의 社會構造〉, 1974; 위의 책).

⁴⁶⁾ 金容燮, 〈朝鮮後期에 있어서 身分制의 動搖와 農地所有〉(《朝鮮後期 農業史研究, I》, 一潮閣, 1970).

⁴⁷⁾ 安秉旭、〈朝鮮後期 自治와 抵坑組織으로서의 郷會〉(《聖心女大論文集》18, 1986), 105~109等。

⁴⁸⁾ 安秉旭,〈19세기 壬戌民亂에 있어서의「鄕會」와「饒戶」〉(《韓國史論》14, 서울 大 國史學科, 1986), 116~203쪽.

3) 서민의 문예활동

조선 후기는 예술의 거의 전영역에서 밑으로부터의 창조가 다채롭게 구현 되었던 시기로, 문화·예술의 향유층이 종전의 사대부계층에서 서민층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다.⁴⁹⁾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가 문예활동 전반에 반영되어 조선 후기는 서민들의 문예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했던 시기였다. 특히 영조·정조대는 서민문화가 꽃을 피우는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문학과 미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문학에서 委 巷(閭巷)文學·소설문학·판소리사설이 성행·발달하였고, 미술에서는 眞景山 水畵와 風俗畵·民畵가 성행하는 등 문예전반에서 변화양상이 나타났다. 이 러한 변화의 주축을 이루었던 계층은 중인 내지는 서민들이었다. 예술의 주 체가 사대부계층에 머물지 않고 중인·서민에게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들 예술활동의 각 장르별 담당계층을 확연히 구별하여 서민들의 활동만을 가려내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위항문학의 경우에는 중인들이 활동주체였고 소설의 경우 대부분이 작자미상이며 설혹 각자가 밝혀져 있다 하여도 그신분을 가려내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음악적인 요소와 동시에 문학적인요소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판소리의 경우, 판소리사설을 정리한 申在孝는 아전출신이지만 판소리 창자는 「광대」라는 점에서 문학적으로 정리한 주체와 연희의 주체 사이에는 신분적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풍속화의 경우도시작은 사대부 화가에서 비롯되었으며 풍속화의 대가인 檀園 金弘道나 蕙園申潤福은 화원이었다.50) 떠돌이 화가에 의해 그려진 民畵의 경우에도 圖畵署 화원들이 그린 그림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선 후기 문예의 새로운 경향에서서민들이 창작의 담당주체가 되었던 장르만을 가려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판소리를 포함한 이들 서민들의 문예활동은 창작활동의 주체에 국한 하지 않고 향유층의 성향과 작품의 주제면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 다. 조선 후기의 문학이나 미술에서 서민들의 생활상이 작품의 소재로 다루어

⁴⁹⁾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4).

⁵⁰⁾ 鄭炳模、《朝鮮時代 後半期 風俗畫의 研究》(東國大 博士學位論文, 1991).

지게 되는 등 전반적으로 문예활동에서 서민들의 생활과 정서가 반영되는 영역이 넓어져 갔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후 기에 이루어진 사회경제적인 변화로 인한 서민층의 성장이 문화의 영역에도 파급된 결과라고 하겠다.

(1) 문학에서의 활동

조선시대 문학은 사대부문학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나 17세기 이후 새로운 문학담당자의 성장으로 위항문학과 서민문학이 성장하였다. 중인들의 위항문학이 사대부문학을 지향했던 것과는 달리 서민문학에는 서민들의 생활과 감정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서민들이 향유했던 예술형태는 구비전승으로 존속해 왔는데 이들 예술형태는 오늘날 민요·민담·가면극·인형극·판소리 등으로 불린다. 대개는 문자로 기록되지 못하고 구비전승으로 내려왔으나 판소리만은 책자로 출판되어 서민들에게 읽혀지게 됨으로써 판소리를 중심으로 서민소설이 성립되어 서민문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51)

이들 예술형태는 음악적인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문학작품 속에는 당대의 가치관과 사회상이 반영된다. 판소리의 사설에는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사회변동 아래에서 현실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서민층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숙종 말부터 영조 초에 발생한 판소리가 18세기 형성기를 거쳐, 19세기에는 전성기를 이룬다는점에서 서민들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판소리는 당대 사회의 변화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리하게 투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작품 안에서 형상화하였다는점에서 당시 서민들의 생활현실과 그들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꿈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52) 뿐만 아니라 판소리는 수용자의 폭을 최대한 넓혀서 상하층의 관심을 모두 한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판소리에는 서민들의 신분상승 의식이 표출되어 있다. 판소리의 주인공 모두가 작품 속에서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를 실현하고 있다. 〈춘향가〉

⁵¹⁾ 林熒澤,〈閭巷文學과 庶民文學〉(《韓國學研究入門》,知識産業社,1981),321~ 322等

⁵²⁾ 張錫洪,《판소리에 나타난 上層志向性 研究》(韓國教員大 博士學位論文, 1993), 66 쪽.

에서 춘향, 〈심청가〉에서 심청, 〈홍부(보)가〉에서 홍보, 〈토별가(수궁가)〉에서의 토끼가 그러하다. 〈춘향가〉에서 춘향이 어사의 정실부인이 되는 것은 신분상승을 가시화한 것이고, 〈심청가〉에서는 심청이 황후가 되고 심봉사가 國男가 되고 곽씨부인은 府夫人 加資追贈을 하는 등 서민들로서는 바라기 어려운 신분상승이 작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홍부가〉에서 홍보의 치부는서민들의 경제력에 의한 신분상승의 의지와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부를 획득한 홍보가 사대부적 생활을 하는 것은 경제력에 의한 신분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 〈토별가〉에서 토끼가 자라를 따라가는 것은 높은 벼슬을 바라는 것으로 서민들의 신분상승 의식의 일면이 나타난 것이다.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와 같이 주인공들이 신분상승을 이룩하는 것은 소설 속에서 서민들의 신분상승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53)

판소리에는 또한 서민들의 사회비판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토끼전》의 경우 지배층의 무능과 모순된 정치현실에 대한 풍자에서 사회비판의식이 두 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54) 《흥부전》은 빈부양극화 현상의 심화, 신분제의 동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지배층의 부패와 유랑배의 폐해 등 당시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55)

판소리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신분상승이나 비판의식은 부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이룩할 수 있었던 서민들의 시각이 표현된 것으로 당시 서민들의 욕 구와 부합되는 내용이었으므로 크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17·18세기에는 판소리계 소설 이외에 많은 국문소설이 읽혀졌다. 소설의 작자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문본이든 국한문본이든 거의 다 작자미상이다. 많은 국문소설의 작가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소설을 지었다는 것은 새로운 문학담당층이 등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56)

이러한 변화로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면 소설의 유통방식이 달라져 종전에 서로 이야기책을 돌려보고 옮겨 베끼던 데서 필사하는 전문직업이 생겨났으며

⁵³⁾ 張錫洪, 위의 책.

⁵⁴⁾ 印權煥、〈토끼傳의 庶民意識과 諷刺性〉(《韓國古典小說》, 啓明大 出版部, 1974).

⁵⁵⁾ 전용오,《興夫傳研究-文學 및 社會史的 側面에서의 考察-》(延世大 博士學位 論文, 1990).

⁵⁶⁾ 조동일, 앞의 책, 182~183쪽.

實冊店 및 소설을 출판하는 상업출판이 성행하게 되었다. 하층의 부자·상인·가게나 장터에 모여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설 낭독이 인기가 있었고 영업을 하는 직업적인 낭독자가 있었는데 이들의 신분은 미천했다. 세책은 돈을 주고 책을 빌려다 읽는 것으로 여성독자와 더 밀착되어 있었다. 세책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하여 영업에 아주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아마도 서울에만 성했던 것 같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것이 소설을 판각해서 찍어내는 坊刻本의 출판이었다. 서울을 위시한 안성·전주 등의 상업중심지에서 방각본이 출판됨에 따라 국문소설은 시장망을 통해서 전국에 널리 팔려 독자층이 넓어졌다. 낭독·세책·출판을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을 보건대 소설은 상업적인 문학이었다. 따라서 소설의 작자는 직업적 소설가였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낭독·세책·출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전 이하의 계층인 것으로 보아 작자 또한 그러하였다고 본다.57)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서민들의 사회비판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중 탈춤 즉 가면극이 있다. 탈춤은 상업이 발달된 도시를 중심으로 상인층의 지원을 받아 성립되었으며 주로 장시에서 공연되어 서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다. 18세기 중엽 서울의 도시상업이 발달하자 사상도고가 자리잡은 楊州나 松坡와같은 신흥 상업도시에서는 독자적인 탈춤인 별산대놀이를 키워 나갔다. 양주는 양주목사가 자리잡은 행정중심지이면서 서울 북쪽의 교통상 요로이기에 상업도시로 성장한 곳이며 송파는 경강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시울에서 평양을 거쳐 의주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은 황해도 각 고을—黄州·鳳山·載寧·海州·康翎—이 상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이 지역에서도 각각 탈춤이 발전했다. 경남의 해안 및 낙동강 연변에는 일본과의 무역 요충지마다 들놀음 또는 오광대라고 하는 탈춤을 키우는 상업도시가 나타났다. 예컨대 晋州·駕山·馬山·統營·固城 등의 오광대가 그러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18세기 중엽 이후 경비를 부담하는 상인들의 후원으로 탈춤이 대단한 규모로 발전하였다. 탈춤은 양반사회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그리고 서민들의 애환과 감정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58)

⁵⁷⁾ 조동일, 위의 책, 184~187쪽.

⁵⁸⁾ 조동일, 위의 책, 567~575쪽.

또한 서민들의 생활과 감정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민요가 있다. 민요는 노래이기에 그 가락은 음악에 속하나 노래의 가사는 문학에 속한다. 민요는 어느한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만인의 노래이다.⁵⁹⁾ 민요는 작자를 알 수 없으나 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생활감정 및 생각을 즉흥적으로 읊어 저절로 생겨나고 발전된 노래이다. 민요의 주제 중 가장 많은 것이 노동요이며 다음이 婦謠이다. 노동요 중에는 논매기·모내기·발같이·나뭇꾼노래 등이 많고, 부요는 시집살이의 설움과 탄식·연정·해학·생활고·살붙이사랑·원망·팔자타령 등에 관한 것인데,⁶⁰⁾ 이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서민들의 생활과 가사노동에 힘겨워하는 서민 아낙네들의 생활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2) 미술에서의 활동

숙종대 후반에 해당하는 1700년 무렵을 전후해서 미술에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새로운 화법의 전개와 회화관의 탄생으로 나타나게 된 이 시기의 주요한 조류로는 南宗畵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점, 진경산수화가 대두한점, 풍속화가 풍미하게 된 점, 서양화법이 수용된점, 서민들 사이에 민화가유행한점을 들수 있다.61)이 가운데서민들과 관련이되는 것은 풍속화의풍미와 민화의 유행이다.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에는 회화를 향유하는경향이 사대부에 머무르지 않고 다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민들에까지확대된데에 연유하였다.

18세기경부터 조선 후기의 시대적 정신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연유하여 풍속화가 유행하게 된다. 풍속화는 사대부화가들의 참여로 시작되었으나 화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꽃을 피우게 되었다. 뛰어난 풍속화가인 김홍도·金得臣·신윤복 등은 모두 화원이었고 이들이 풍속화의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기간은 풍속화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였다.62)

풍속화는 김홍도·김득신의 활약으로 그 전형화풍이 정립되면서 본 궤도에

⁵⁹⁾ 任東權, 〈民謠〉(《우리 民俗文學의 理解》, 開文社, 1979).

⁶⁰⁾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 研究》(一潮閣. 1981). 10쪽.

⁶¹⁾ 安輝濬,〈朝鮮王朝 後期 繪畵의 새 傾向〉(《韓日近世社會의 政治와 文化》, 韓日文化交流基金, 1988), 5零.

⁶²⁾ 鄭炳模, 앞의 책, 104~105쪽.

오르고 신윤복에 와서 주제나 화풍에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풍속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 서민들이었다. 김홍도는 서민들의 생활 속에서 재미있는 소재를 포착하여 해학과 정감이 넘치는 미의 세계로 구체화하였다. 소재는 기와이기·주막·빨래터·자리짜기·벼타작·점심·대장간·논갈이·서당·무동·씨름·길쌈·활쏘기 등 대부분 농민이나 수공업자와 같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소재로 하고 있다.63)

이처럼 김홍도는 민간의 통속적인 모습을 그렸는데 부녀자나 아이들도 일 단 그의 畵券을 펼치기만 하면 입이 딱 벌어지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⁶⁴⁾ 그만큼 그의 그림은 서민들에게 공감이 가는 대상이었다.

단원이 서민들의 소탈한 삶의 모습을 그린 것과 달리 혜원은 풍류와 춘정에서 느끼는 애틋하고 솔직한 아름다움을 그렸다. 신윤복의 그림에는 남녀간의 애정이나 주막의 정경 등 서민사회의 모습을 소재로 하면서 애정이나 감정의 표현이 좀더 자유롭고 노골화되기에 이르른다. 김홍도와 신윤복과 같은화원들에 의해 풍속화가 많이 그려진 것은 전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서민들의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그에 따른 그림의 수요가 증대된 데에 기인하였다.65)

19세기 중반 이후 풍속화는 민간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실용화되어 생활속에 깊이 뿌리박게 된다. 서민들이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해하기 쉽고 친근감이 넘치는 풍속화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풍속화가 어느 신분계층까지 확산되었는가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기는 힘든 실정이지만 19세기 한양의 거리풍경을 묘사한〈한양가〉에 의하면 광통교아래의 병풍전에는 병풍으로 꾸밀 耕織圖가 놓여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경직도가 상품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직도는 원래 궁중 수요의 그림이었으나이제는 누구나 경제력만 갖추면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처럼 필요에의해서 그림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을 구입하는 상품생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求禮 雲鳥樓 소장의 회화자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방의 사대부가에는 떠돌이화가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민

⁶³⁾ 金元龍・安輝濬,《新版 韓國美術史》(서울大 出版部, 1993), 297쪽.

⁶⁴⁾ 鄭炳模, 앞의 책, 26쪽.

⁶⁵⁾ 安輝濬, 앞의 글, 20~21쪽.

화풍의 풍속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서민계층과 지방의 士人들이 새로운 수요계층으로 떠오르면서 회화의 수요 층이 확산되어 풍속화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66)

서민들의 미술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화의 유행이었다. 서민들의 회화라고 할 수 있는 민화는 18세기 이후에 성장한 서민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농업생산의 증대, 수공업의 발전과 시장경제의 확대등 경제적으로 성장한 서민들의 회화에 대한 욕구에 부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67) 민화는 일반대중에게 깊숙히 파고들어 새로운 장르로 발전하였다. 우리의 자연에서 볼 수 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림의 대상이었고 소재나 표현방법에서 아무런 구애나 구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의 내용이 수백을 넘고 종류도 수천을 헤아릴 정도로 다양하다.68)

민화는 화원에 의해 그려진 고급민화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형적인 민화는 떠돌이 서민출신의 화가들이 서민들을 위하여 그린 것이다. 민화를 그린 사람들은 이름 없는 화공들이었다. 시골 장터를 떠돌아다니면서 가죽에 물감으로 革筆畵를 그리고 인두를 불에 달구어 烙畵를 나무나 종이에 그려준 유 랑화공 같은 무리들이었다.69)

민화는 그림의 양식이 도식화되어 실용적 목적에 따라서 집안 또는 환경을 장식하는 데 잘 어울리는 그림이다. 집 안팎의 장식과 민속에 의한 관습에 따라 사용되고 생활화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옛날 사람들이 집을 짓거나이사한 뒤에 무당들이 와서 부른 成造歌의 黃帝풀이 중에서 그림에 관계된부분이 있고 수영들놀음이나 봉산탈춤 등 민속극에도 방안에 붙인 그림에대한 묘사가 있으며,《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京都雜志》에 나오는 그림에 관한 대목 등에서 잘 알 수 있다.70) 李圭景의《五洲衍文長箋散稿》에의하면 이른바 俗畵가 여염집 병풍·족자 또는 벽에 널리 걸리거나 붙여졌으며 그러한 그림들은 틀에 박은 듯 유형이 고정되어 있다고 했다.71)

⁶⁶⁾ 鄭炳模, 앞의 책, 153~155쪽.

⁶⁷⁾ 金元龍・安輝濬, 앞의 책, 318~319쪽,

⁶⁸⁾ 정양모, 〈18세기의 민간예술〉(《18世紀의 韓國美術》, 國立中央博物館, 1993).

⁶⁹⁾ 金哲淳, 〈民畵란 무엇인가〉(《韓國民畵》, 中央日報, 1979), 184쪽.

⁷⁰⁾ 金哲淳, 위의 글, 185~186쪽.

⁷¹⁾ 金鎬然, 앞의 책, 19~20쪽.

18세기 후반에 성행한 풍속화와 19세기에 유행한 민화에 속화라는 호칭이붙은 것은 속화를 민간의 회화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민간의 회화가 하나의 장르로 호칭될 만큼 성장하지 못하였으나 후기에는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발진할 정도로 성장하였음을 말해 준다.72)

이처럼 민화는 서민들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맺으면서 서민들의 생활상·생각·미의식 등을 반영하였다. 민화는 정통회화를 구하기 어려운 서민대중들의 회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활발하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주제와 표현기법 등은 정통회화를 많이 참조하면서 인물화·풍속화·산수화·영모화·화조화·문자화 등 폭넓은 주제들을 다루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학과 미술에서 서민들의 활동은 창작 주체로서 혹은 향유층으로서 그 어느 시기보다 활발하였다. 이는 서민들의 경제적인 성장과 사회신분의 변화 등 조선 후기에 있었던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예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신분상승이 가능해진 서민들은 예술을 창작하고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총체적으로 서민층이 성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崔珍玉〉

5. 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1) 노비 존재양태의 변화

조선 후기에 들어와 노비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노비제가 유지되고 있던 사회경제구조가 바뀐 데서 연유한 것이다.

노비는 그들의 소유주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속되어 노동력을 강제로 징발당하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점차 노동력 제공의무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예컨대 공노비의 選上·立役이 폐지되고 身貢을 납부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는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또 신공의 일부도 감액에 따른급대를 통하여 전결 등에 전가되어 조세화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良

⁷²⁾ 鄭炳模, 앞의 책, 31쪽.

役에 있어서의 조세화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나타났다. 즉 군역이 변상・입역에서 代立→放軍收布→軍布收納으로 이행된 것이나, 요역이 노동력의 직접 징발체제에서 雇立制로 바뀌면서 역부담 의무자에게 물납을 통하여 경제적부담을 지우는 현상과 동일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가 그 근저에 깔려 있었다.

조선시대의 노비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존재양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째 率居・仰役(사노비)이나 선상・입역(공노비)의형태로 노동력을 직접 수탈당하는 자, 둘째 外居하면서 상전의 토지(사노비)나 국가기관의 토지(공노비)를 경작하여 신분적・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자, 셋째 외거하여 상전이나 소속관사의 경제기반과 관계없이 생활해 가면서신공만을 납부하는 자, 즉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있는 자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 가운데 조선 전기에는 첫째와 둘째의 유형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셋째의 유형이 우세해졌다.

조선왕조에 있어서 노비도 다른 신분층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어서 전답과 같은 토지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소유한 자들도 있었다. 재산을 소유한 노비는 신분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소유주나 소속관사의 예속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상품화폐경제의 진전과 농업생산력의 발전으로 계층분화가 심화되어 한편에서는 '無土不農之民', 즉 토지에서 유리된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와 廣作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들도 있었다. 노비신분층도 이러한 변화에 예외일 수는 없어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상당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나타났다. 조선 후기 노비제의 붕괴는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진행되었다.

조선시대에 노비들이 소유한 재산은 노비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상속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공노비인 경우 국가기관에, 사노비인 경우 소유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1) 이러한 법규에 따라 내

^{1)《}經國大典》 권 5, 刑典 公賤.

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에서는 자녀가 없이 죽은 無後奴婢의 재산을 속공하 고 그 토지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전답안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답 안은 일반적으로《內需司無後奴婢某記上田畓打量成冊》이라 명명되었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 무후노비 재산의 속공은 궁방전 확대요인의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2) 상당한 양에 달했던 것 같다. 무후노비의 재산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음은 조선 후기에 국가에서 노비추쇄사업을 실시하면서 도망 또 는 隱漏奴婢뿐만 아니라 무후노비의 재산도 빠짐없이 추쇄하고 있었던 것에 서도 잘 드러난다.

원래 노비가 소유한 전답이나 노비 등의 재산을 상전이 차지하는 경우 그 재산은 '奴某記上田畓'이나'奴某記上奴婢'라고 표기되고 있었다. 기상전답 을 중심으로 노비의 토지소유 상황을 살펴보면 공사노비를 막론하고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內奴婢의 경우 《무후노비기상전답타량성책》을 분석하면. 자료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 함경도와 경기도를 제외하고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물론 현재 밝혀진 지역 이외의 곳에서도 내노비가 거주했으며, 이들 중에서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내노비의 토지소유 내용은 계층분화가 심하여 최하 2負 2束을 소유한 자 에서부터 최고 9結 6束의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자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 하였다. 이들이 소유한 실제 경작면적에 따라 계층분화를 살펴보면, 전체 69 명 가운데 25부 미만 22명, 25부 이상~50부 미만 13명, 50부 이상~1결 미 만 19명. 1결 이상~5결 미만 14명. 5결 이상 1명으로, 25부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1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도 15명(22%) 이나 되어 일반 군현의 양안을 분석한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러나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밭이 많고 陳田의 비율이 아주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에 있어서는 일반 양인농민보다 결코 우위에 있지만 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도 69명의 내노비 가운데 49

²⁾ 和田一郎,《朝鮮土地制度及地稅制度調查報告書》(朝鮮總督府, 1920), 155쪽. 安秉治、〈17・18世紀朝鮮宮房田の構造と展開〉(《朝鮮社會の構造と日本帝國主 義》、龍溪書舍, 1977), 15쪽.

명(70%)은 자신의 소유토지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10명(14%)은 생산성이 높은 논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부의 축적이 가능한 부농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³⁾ 이들은 내수사로부터 경제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나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이들 내노비는 전기와는 달리 궁방전의 경작이나 관리에 동원되지 않았으며, 독자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내수사에 대해서는 신공만을 바치고 살아가고 있었다.

조건 후기의 고문서자료에서 확인된 「기상전답」을 소유한 사노비의 토지소유 경향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소유규모가 적어 50부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노비가 대부분이지만, 1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4) 이 정도의 토지를 소유한 노비는 양인 또는 양반 못지 않을 정도의 재산소유자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기상전답」의 소유주로 확인된 노비는 대부분 그들의 전체적인 토지소유의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전체적인 소유규모가 밝혀진다면 이들 가운데에는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 후기 노비신분층의 재산취득 방법으로는 일반 양인신분층과 마찬가지로 개간·상속·매득을 상정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고문서자료에 의하면 사노비의 재산취득 방법으로는 상속과 매득이 중요한 기능을 했으며, 개간은 노비의 재산취득에 있어서 별로 중요한 수단이 못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개간을 할 때는 관으로부터 立案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했는데, 노비신분으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노비신분층의 재산취득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던 상속은 특히 양반의 雙子 女들에게 많은 재산소유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면에서 많은 토지를 소유 하고 있는 노비는 양반의 얼자녀였을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자녀가 상속받 은 재산가운데 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체로 노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대에 매득한 토지가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들 토지 가운데에는 아버지대에 매 득한 토지도 상당수 있었다.

³⁾ 全炯澤,《朝鮮後期 奴婢身分研究》(一潮閣, 1989), 28~30쪽 참조

⁴⁾ 全炯澤,《朝鮮後期 奴婢의 土地所有一「記上田畓」을 중심으로ー〉(《韓國史研究》 71, 1990), 67~76쪽.

매득에 있어서는 토지규모가 작지만, 많은 노비들이 이를 이용하여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노비신분층이 재산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방 법은 상속보다는 매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물론 노비신분층이 토지를 매입 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를 수 있을 만큼의 부를 축적해야 했을 것이다. 이 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조선 후기로 올수록 노비의 재산 소유경향은 늘어나고 있었 지만, 노비신분층은 그들 자신이 남의 재산으로 소유되고 있었으므로 그 소 유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노비신분층의 재산소유 경향의 증가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노비들로 하여금 신분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 일부이기는 하지만 노비 가운데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노비제 변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분적 예속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예속관계의 유지가 필요한데, 이들은 이미 경제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나고 있 었기 때문이다. 나라에서는 납속책 등을 통하여 이들을 신분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러한 면에서 노비신분층의 경제적 성장이 조 선 후기의 노비신분 변동에 한 배경이 될 수 있었다.

고문서 분석을 통하여 조선 후기 노비신분층의 존재양태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지고 있었다.

조건 후기의 주요 노비소유계층인 양반들의 노비소유 경향을 살펴보면 조 선 전기에는 솔거·앙역노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조선 후기에는 외거노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5) 이러한 외거노 비 비율의 증가는 노비소유주의 농업경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감에 따라 농장경영에 부역노동을 주로 제공하던 솔거ㆍ 앙역노비의 비중이 격감하는 대신 並作半收에 기초한 佃戶로서의 외거노비의 비중이 더욱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조선 전기에는 외거노비의 상당 수가 상전의 전답을 경작하여 생활해 가고 있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상전의 전답 이의에 자기 자신의 전답이나 제3자의 전답을 경작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⁵⁾ 金容晩、〈朝鮮後期 奴婢에 關한 一研究〉(《嶠南史學》2、嶺南大, 1986), 11쪽.

노비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소유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고 신분적으로만 예속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비의 재산소유 경향이 조선 후기에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노비 거주지와 상전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지가 거의 일치하지 않은 경향과 노비들이 상전의 토지를 경작하고 바친 賭地額이 다른 소작인과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서도 알 수 있다.6) 이는 외거노비가 상전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자신의 토지를 주로 경작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노비가 점차 늘어나면서 이들 노비에 대한 상전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노비들의 끈질긴 도망에 대해서도 사실상 추쇄가 지극히 어려웠으며, 추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겨우 도 망지역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일이 많았다. 말하자면 노비소유주의 노비통제에 한계성이 드러났고, 이제 노비의 거주지를 상전이 자의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작성된 고문서를 보면 추쇄에 의하여 還現된 도망노비의 대부분이 외거노비로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매득한 노비들의 대부분이외거노비로 존속하고 있었으며, 방매한 노비들 역시 외거노비가 대부분이었다. 추쇄한 노비나 매득한 노비를 외거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방매한노비가 대부분 외거노비였던 것과 아울러 노비들의 가족구성이나 경제기반을 해치지 않고 노비소유를 재편한 조선 후기 노비소유의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 후기의 노비들은 대체로 가족단위로 같은 거주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도 노비들이 가족단위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던 현실의 반영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의 노비는 가족을 생활단위로 하여 독립적인 생활기반을 갖고 상전으로부터의 경제적 예속상태에서 벗어나 신분적으로만예속되어 신공만을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전의 노비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것 또한 조선 후기 노비제 변동의 한 배경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⁶⁾ 全炯澤, 앞의 책, 67~72쪽.

2) 노비정책의 전화

(1) 선상 · 입역의 폐지와 고립제의 실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노비신분층의 존재양태가 바뀌게 된 것은 노비제를 유지하고 있던 사회경제구조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후 기에는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상공업의 발전 등으로 농민층 내부에 계층분화 가 촉진되어 많은 농민이 토지에서 유리되어 갔으며, 인구의 도시유입이 증 가되어 갔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국가나 노비소유주는 노비의 노동력을 직 접 이용하기 보다는 계층분화로 창출된 '무토불농지민'을 이용하는 것이 유 리하였을 것이다.

또 노비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선상・입역이나 솔 거·앙역의 형태로 노동력을 징발당하여 자기 가호의 생산력이 파괴되는 것 보다는 자기 경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잉여생산물을 집 적하여 그 중의 일부를 선상ㆍ입역이나 앙역ㆍ솔거의 대가로 지불하는 편이 유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비노동이 고 용노동으로 대체되어 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비의 부담은 선상 입역(공 노비)이나 솔거·앙역(사노비)을 통한 노동력 제공에서 신공납부라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행되어 고립제가 전개되어 갔다.

공노비에 있어서 노비노동력의 동원이 선상 입역에서 고립제로 이행되어 간 것은 대체로 인조 때를 전후하여 시작되어. 조선 후기에는 광범위하게 전 개되었다. 그것은 원래 선상ㆍ입역 자체가 고역이어서 노비들이 이를 기피한 데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와 농업생산력의 증가로 토지생산성을 계속 유지시 키고 대신 농민의 계층분화로 창출된 토지에서 유리된 유휴노동력을 고용하 는 것이 국가나 노비 모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선상 · 입역을 기초로 하는 공노비의 동원체제는 처음부터 그 자체에 모순 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외방에서 선상되는 奴의 경우 2명의 奉足을 지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데다가 선상기간의 경 비를 자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노비들은 이러한 모순점에다 선

상·입역 자체가 고역이어서 이미 조선 초기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모면하려하였다.

노비들의 선상・입역에 대한 冒避는 먼저 대립으로 나타났다. 대립은 선상・입역노비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미 16세기부터 노비들은 고역인 선상・입역을 기피하고 있었으며, 관리들 역시 代立價를 노려 사사로이 대립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 선상・입역노비의 대립가는 1개월에 면포 2필로 규정되어 있어 한 번의 입역기간인 6개월에는 12필이 필요하므로 과중한 부담으로 선상대립가를 치르고 나면 패가를 면하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 폐해가 컸다.7)

이러한 모순점을 안고 있던 공노비의 선상·입역제는 임진왜란을 겪고난 뒤 많은 노비의 도망과 유산으로 그나마도 유지되지 못하고 17세기에는 사실상 전면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중앙관사에서조차 노비가 남아 있지 않아 노비의 역을 상번군사나 공물주인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8) 노비의 역을 공물주인이 대신했다는 말은 공물주인이 직접 그 일을 대신한 것이 아니라 貢價를 받아 노비의 역을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여 대역시킨 것을 의미한 것으로보인다. 이것은 결국 선상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공노비의 노동력 동원이 고용노동으로 대체되었음을 뜻한다. 영조 22년(1746)에 편찬된《續大典》에는 여러 관청의 差備奴와 跟隨奴에 대하여 "大典(《經國大典》)에서는 모두 공노비를 選上·立役시킨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은 京人을 뽑아 쓰고 매달 삭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조선 전기 공노비의 선상·입역으로 충원되었던 중앙 각사의 근수노와 차비노가 후기에 들어와서는 도성에 거주하는 사람이 삭료를 받고 고립되는 고립제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상·입역노비 대신 삭료를 주고 고용노동력을 이용하는 현상은 내수사를 비롯한 궁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수사의 경비를 기록한 장부인《內需 司各房上下冊》에는 入役奴子를 비롯한 여러 명목의 노비에게 삭료가 지급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노비신분이기는 하지만 선상·입역하는 노 비와는 달리 달마다 급료를 받고 입역하고 있는 자들이어서 그 성격이 아주

^{7) 《}宣祖修正實錄》 권 8. 선조 7년 정월 정축.

⁸⁾ 柳馨遠,《磻溪隨錄》권 26, 續篇 下.

다른 것이다.

공노비 노동력의 동원이 선상·입역에서 고립제로 바뀌게 된 데에는 노비의 모피도 한 요인이 되었으나, 국가 역시 이들을 선상·입역시키는 대신 토지에서 유리된 유휴노동력을 고용하는 쪽이 더 유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비도 가족이 있었고, 이들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노비가족의 중심이 되는 자를 6개월이나 선상·입역시키는 것은 노비가족의 농업생산력을 파괴하여 이들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이로 인하여 노비의 노동력을 제대로 동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토지에서 유리된 무전농민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살아갈 방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공노비에게 선상·입역하는 의무를 면제하여 주고 대신 신공납부의 의무만을 지워 생업에 전념케 하여 농업생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립되어 이전의 선상·입역노비가 맡았던 역을 대행한 자들의 신분에 대하여 《속대전》에는 '京人' 이라고만 기록하여 그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노비였던 것 같다. 그것은 17세기 이후 양역에서 고립제가 발달하면서 양인층이 담당하던 직종에 노비신분층이 대거 고립되고 있어서 노비들이담당하던 역에 양인층이 고립하려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비가 書吏나 使令이 된 경우도 있었으며, 양인의 요역부담에서 큰비중을 차지하던 토목공사에서도 募立制가 실시된 후 많은 노비신분층이 고용되고 있었다.9)

이러한 사회현실에서 노비의 선상·입역으로 유지되던 직종에 고립제가 실시된다 하여도 양인층의 응모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결국은 노비 층이 전담하는 직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같은 노비신분층이라 하더 라도 이 경우는 '給價雇立' 이라는 면에서 선상·입역된 노비와는 그 성격에 서 근본적으로 달랐다.

고립되어 노비의 직역을 대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지급된 雇價는 '戶料兵布' 로 호조나 병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米布를 관장하는 아문에서

⁹⁾ 尹用出、〈17・18세기의 募立制와 募軍〉(《釜山史學》8, 1984).

는 스스로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이 밖에 노비의 신공이나 균역청·선혜청 등의 재원이 전용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종래 선상·입역의 형태로 신역을 부담하던 공노비는 이제 신공만을 바치고, 국가에서는 이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신공을 비롯한 여러 재원을 동원하여 다른 노동력을 고용하고 노비의 일을 대신하게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와서는 공노비의 신역도 부분적으로 조세화된 셈이어서 신역의 조세화현상이 노비신분층에 있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 신공의 감액

조선 후기에 들어와 공노비의 선상·입역이 폐지됨에 따라 이들은 이제 신공납부의 의무만을 지게 되는 납공노비로 바뀌었다. 말하자면 선상·입역의 의무에서 납공외 의무로 신역부담의 형태가 전환된 것이다. 선상·입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노비가 납공의 의무만을 지게 된 것은 양역의 부담이 직접적인 번상·입역 대신 경제적 의무인 군포의 납부로 바뀌는 軍丁收布의 경우와 그 궤를 같이하여 나타났다. 이것은 중세사회에 있어서의 부역제 일반이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또한 도성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부가 고용되어 노비가 하던 일을 대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조선 후기에 고용노동이 일반화하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납공노비의 부담은 원래 1년에 奴는 면포 2필, 婢는 1필 반을 각각 그들의 소속에 따라 각기 司贍寺나 尚衣院・養賢庫 등에 바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종 8년(1667)과 영조 31년(1755)에 각각 반 필씩 감액된 뒤 영조 50년에비의 신공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노만이 良丁과 같이 1필의 신공을 바치게되어 신공에 관한 한 양인과 노비의 부담이 동일하게 되었다. 신공 감액조처는 공노비뿐만 아니라 사노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노비의 신공을 감액하여 준 것은 노비의 부담이 과중하여 노비들이 이를 면하기 위하여 도망하거나 모피하는 현상이 만연하여 이들의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이를 막아보기 위함이었다. 특히 영조 31년의 감공조처는 균역법이 실시 된 직후에 단행된 것으로 양역변통으로 양인의 부담이 경감된 후 노비의 부담 이 상대적으로 더 무겁게 되자 다시 양역변통의 예에 따라 노비의 부담을 덜 어주려고 한 것이었다.

노비신공의 감액으로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관청에서는 그만큼 수입이 줄 어들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를 일반재정에서 보전하여 주지 않 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중앙 각사의 노비는 상의원과 성균관소 속 노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호조에 이속시키고. 이속시키 인원의 신공에 해 당하는 양은 호조에서, 감액된 신공에 해당하는 양은 균역청의 재원으로 각 각 감액된 액수만큼 급대해 주도록 조처하였다.10) 내노비의 감공액도 궁별로 감액된 신공액만큼을 균역청의 재원으로 급대하도록 조처하였다. 또 婢貢혁 파에 대한 급대는 賑穀 150만 석을 떼어주어 그 耗穀으로 충당하도록 하였 다.11) 이렇게 감액된 노비신공을 국가의 다른 재원으로 급대해 줌으로써 노 비신공의 일부가 일반조세로 전가된 셈이다.

노비신공의 감액과 비공의 혁파로 노비신분층의 공식적인 부담이 양인과 다름이 없게 되어 국가로서 볼 때는 노비나 양인이 수취대상으로서는 동일 하게 되었지만, 재정적인 면에서는 감공에 따른 급대량의 증가로 국가의 부 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도 국가재정에 압박을 가하여 노비제의 변통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3) 추쇄정책의 전환

조선 후기에 들어와 노비의 도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 회경제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즉 노비들이 도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결과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는 노비인구가 격감하게 되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대구지방의 경우 숙 종 16년(1690)부터 철종 9년(1858)까지 168년 동안 노비호가 37.1%에서 1.5% 로 급격히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러한 경향은 다른 지역에 있어 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노비인구가 격감하자 국가에서는 도망노비의 추쇄

^{10)《}內寺奴婢減貢給代事目》(서울大 奎章閣圖書 No. 17203) 참조.

^{11) 《}承政院日記》 1.349책, 영조 50년 3월 14일.

¹²⁾ 四方博、〈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別的觀察〉(《朝鮮經濟の研究》3, 1938).

를 실시하였다. 전국적으로 노비추쇄사업을 실시한 것은 효종 6년(1655)의 일이었다. 그 당시 중앙 각사의 노비안에 올라 있는 노비는 19만여 명이나 되었으나 이 가운데 신공을 거둘 수 있는 노비는 겨우 27,000여 명에 불과한실정이었다.[13] 이에 국가에서는 도망·은루노비를 추쇄하여 북벌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군비확충을 위한 재원과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추쇄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효종은 특별히 推刷都監을 설치하고 추쇄어사를 파견함과 동시에 각 지방수령들의 추쇄사업을 독려하는 등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추쇄사업은 효종 8년 6월에 마무리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별로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推刷都監儀軌》를 통하여 이 때의 추쇄실태를 살펴보면 元奴婢가 추쇄 전에 200,515명이었는데, 추쇄 후에는 92,759명으로 대폭줄어들었으며, 원노비에서 탈이 생긴 노비를 뺀 實奴婢에 있어서는 추쇄 전에 69,306명이었으나, 추쇄 후에는 79,992명으로 10,686명이 증가하였다. 또실노비에서 弱奴婢・舟師奴 등의 신공면제 대상자를 뺀 貢奴婢는 추쇄 전에 32,132명이었는데, 추쇄 후에는 37,976명으로 5,844명이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공노비의 증가분인 5,844명이 이번의 추쇄사업으로 새로이 추쇄한노비라 할 수 있으나, 이것도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는 추쇄후에 작성된 노비안에는 추쇄 전에 작성된 노비안에 올라 있던 자들이 다수중복되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노비추쇄사업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막대한 노력 및 시간을 들여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 이미 당시 노비의 존재양태가 종래와 같은 법제적인 조처만으로는 유지될 수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있었던 데에 기인하였다. 말하자면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수반하여 나타난 노비신분층의 동요현상을 고식적인 법제적 장치로서는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만큼 그 변화의 폭이넓었던 것이다. 추쇄는 원래 노비의 예속성이 강한 단계에서 유용한 파악 수단이었으나, 이동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신분적으로만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적절히 기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3) 《}孝宗實錄》 권 14, 효종 6년 정월 임자.

이러한 상황 아래 국가에서는 도망·은루노비의 추쇄만으로는 노비제의 유지가 힘들게 되자,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공을 감액하여 주기도 하고 면천· 속량의 길을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을 실시하였 다. 이처럼 노비신분층에 대한 국가의 정책대응은 노비신분층의 사회경제적 존재양태의 변화를 추인해 주는 방향에서 실시되었다.

공노비의 추쇄는 원래 중앙 각사에시 추쇄관을 파견하여 추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쇄관의 작폐가 심해지자 그 대책으로 영조 4년(1728)부터는 寺奴 婢의 추쇄에 한하여 임시로 추쇄관을 파견하는 대신 감사나 수령으로 하여금 추쇄하게 하였다가, 같은 왕 21년에 영남에 比摠法을 실시하고 이어서 같은 왕 41년에는 兩湖로 이를 확대시켜 실시함으로써 완전히 지방관에게 일임하였다. 또한 內奴婢의 추쇄에 있어서도 정조 2년(1778)에 비총법을 확대실시함으로써 모든 공노비의 추쇄는 지방관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비총법은 도내의 노비수를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각 고을의 노비출생자의 다과에 따라 노비의 수를 조정하되 도내 전체의 신공을 내야 할 노비수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도망 등으로 노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비총법체제에서는 노비수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어, 남아 있는 노비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노비의 도망이나 은루를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추쇄관의 폐지와 비총법의 실시는 노비신분층에 대한 법제적 인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길과를 가져와 이들은 보다 용이하게 노비신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 노비제는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4)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조선 후기에 들어와 양역을 담당할 인구가 부족하게 되자, 국가에서는 노비의 신분적 규제를 완화하여 이들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양인화하려는 움직임이나타나 법제화하였는데, 이것이「奴良妻所生從母從良法」이다. 원래 노비의 신분결정은 종모법이어서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으나, 노비와 양인이 혼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一賤則賤'의 규정이 적용되어 노와 비 사이

의 소생은 물론이고 노비와 양인과의 소생도 무조건 노비신분이 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은 이들 중 노와 양녀가 혼인하여 낳은 소생을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 양인신분으로 하여 이들에게 양역을 지울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었다.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은 聚谷 李珥가 선조 때에 처음 그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그 때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그 후 현종 10년(1669)에 宋時烈이 이 법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여 처음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이후 집권세력사이의 정치적 입장으로 서인(노론)의 집권기간에는 실시되었으나, 남인의 집권기간에는 폐지되는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영조 7년에야 영구히 하나의 법령으로 제도화되었다. 《속대전》에 보이는 바와 같이 그것은 현종 10년에 처음 실시되었다가, 숙종 원년(1675)에 還賤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왕 7년에다시 종량으로 결정되었다가, 15년에 다시 환천으로 환원되었고, 영조 7년에이르러 종량의 규정이 고정되었던 것이다.

이 법의 실시와 폐지과정에 나타난 논의를 보면 서인(노론)은 국가재정 내지는 良丁의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인 면에서 이 법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남인은 '奴主之分' 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명분론을 중시하여 이 법의 실시를 반대하였다.

서인(노론)이 이 법의 실시를 강력히 추진한 것은 이들이 제도개혁을 통하여 현실사회의 모순을 시정해 보려는 실천면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을 가졌던 율곡 이이의 학풍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며, 반면 남인은 명분과 이념 등 정신면을 중히 여기는 退溪 李滉의 학풍을 계승하였으므로 명분론을 내세워 이법의 실시를 반대하였다.

사회경제적 처지에 있어서도 서인은 畿湖地方에 근거를 가진 대토지소유 자들이어서 노비노동력을 동원하기보다는 부재지주로서 전호에 의한 소작경영이나 고용노동력의 동원으로 토지를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 많았으며, 반면에 남인은 영남지방과 경기 일부에 토착적 기반을 가진 비교적 중소지주적기반을 가진 자들이 많아 아직까지도 토지경영을 노비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던 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집단 사이의 정치적 계보상, 학통상, 사회경제적 차이에 더하여

서인은 국가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이 법 의 실시를 끈질기게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조 이후 서인의 일 파인, 특히 송시열을 계승한 노론의 영구집권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는 이 법도 그대로 존속될 수 있었다.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로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여 낳은 소생이 양 인으로 되어 양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노와 양녀 사이에 낳은 소생을 어머 니의 신분을 따라 양인신분으로 인정한 본래의 의도가 양역인구의 확보라는 국가재정적인 고려에서였기 때문에.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 법이 특수한 직역에 입속할 인구의 부족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변칙적으로 운용되기도 하 였다. 土卒과 驛奴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토졸은 함경도 茂山 이북의 각 鎭堡에 입역하고 있었는데, 부족한 토졸을 보충하기 위하여 토졸과 공사천 사이의 소생 중 여자는 어머니의 역을 따르 도록 했으나. 남자는 아버지의 역을 따르게 하여 노비안에서 뺀 뒤 토졸로 입역하게 하였다.!4) 이 경우에는 종부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들의 신분은 양 인으로 신분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역노 소생의 신분귀속에 대하여 《속대전》에서는 "驛奴가 공사천에 장가들어 낳은 소생은 남자는 아버지의 역을 따르고 여자는 어머니의 역을 따르며. 양처 와의 사이에 낳은 소생은 驛役을 자원하는 경우에는 從良의 예에 따라 驛吏로 승격시켜 역에 입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조 때에는 이들 소생 중 에 역역을 자원하는 자들이 거의 없자 역노양처소생을 이들의 의사와는 관계없 이 모두 역역에 입속시키고 역리로의 승진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15)

이와 같이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이 본래 양역인구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 한 목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양역이 아니라도 특수직역에 입속할 인구가 부족되는 사태에 직면하여서는 그 직역에 입속할 인구의 확보를 위 하여 이 법의 규정이 변형되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들의 신분은 양인으로 간주되었다.

^{14) 《}備邊司謄錄》 118책, 영조 22년 8월 3일.

[《]承政院日記》1,629책, 정조 11년 7월 4일.

^{15) 《}承政院日記》 1.687책, 정조 15년 4월 30일.

노비의 신분귀속에 있어서 노인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노비로 된 자들이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이 실시된 지 50여 년이 지난 정조년간에 작성된 호구 자료에도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이 실제 지방양반들 사이에 제대로 지켜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필요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하여도 영조 이후 노와 양녀와의 결혼이 더욱 성행했던 것은 역시 노비들이 이 법으로 그 소생을 간단히 면천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법의 실시는 조선사회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크게 변질시켜 노비와 양인과의 간격이그리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어 신분질서의 해이를 초래하였다.

3) 노비의 신분상승운동

조선 후기에는 상민의 신분상승운동과 병행하여 노비신분층의 신분상승운 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선 후기 노비신분층의 신분상승운동은 합법적인 신분상승운동과 비합법적인 신분상승운동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당시 국가에서는 노비신분층의 존재양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비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비신분층의 합법적 신분상승의 길도 넓혀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에는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免賤・贖良의 길이 확대되었으며, 노비신분층에 가해지고 있던 신분적 제약도 상당히 완화되어 갔다. 이와 더불어 노비신분층의 신분상승을 위한 노력도활발히 전개되어 합법적으로 면천・속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망이나 신분모칭 등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노비신분층이 합법적으로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納粟策 (納粟免賤), 軍功免賤, 功勞免賤, 代口贖身 등이 제도화되어 있었다.

납속책은 임진왜란 때 국가재정의 고갈과 군량미 부족을 보충하려는 데서 널리 시행되었고, 후기에 들어와서도 흉년에 진휼정책의 일환으로 賑資를 보 충하기 위해 널리 실시되었다. 원래 국가에서 납속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국 가재정난의 타개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노비신분층을 그 대상에서 제외할 필 요는 없었다. 따라서 재력이 있는 노비는 누구나 납속책에 따라 면천을 허가 받는 납속면천에 의하여 신분상승을 도모할 수 있었다. 납속면천은 일찍이 성

종 때에도 실시된 적이 있었으나. 그것은 특수한 예에 불과하였고 광범위하 게 실시된 것은 임진왜란 후의 일이었다.

조선 후기의 奴婢贖良價는 米 160석에 이른 경우도 있었으나.16) 후기로 올수록 낮아져 숙종 때에는 연령에 따라 10~50석으로 낮아졌다.17) 더욱이 영조 때에는 납속면천과 아울러 納錢免賤까지 실시하였다. 《속대전》에는 "工 匠代給奴의 속량가는 錢文으로 100냥 이상 받지 못한다. 사노비의 속량가도 이와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당시 전문 100냥은 포 50필에 해당하기 때 문에 납전속량을 원하는 노비는 한꺼번에 25년치의 신공을 바쳐야 속량될 수 있었다. 이 액수는 숙종 때의 납속속량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노비의 납속속량가가 현실화되자 많은 노비들이 면천ㆍ속량되 어 양인으로 상승하기가 쉬워졌다. 납속면천이나 납가(전)면천이 광범위하게 행해짐에 따라 노비신분층은 '役重名賤'한 사회의 최하층으로부터 합법적으 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노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편리한 신분상승의 한 방편이어서. 재력이 있는 자들은 면천을 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부유한 노비는 거의 다 면천되고, 빈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비만이 남게 되었다.

軍功免賤은 원래 양역이었던 군역에 공사천을 입속시키면서 군역의 의무 가 없는 이들의 입속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束伍 軍・牙兵・吏奴隊 등 노비들이 입속하는 군대가 설치되어 많은 노비신분층 이 이러한 병종에 입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비신분층의 군역입속은 신공과 군역이라고 하는 이중의 부담으로 고역이 너무 심하여 노비신분층의 자발적 인 입속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여기에서 위정자들이 노비신분층의 자발적 인 군역입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착안한 것이 군공에 대한 免賤論賞이었다.

이 군공면천은 임진왜란 때에 대대적으로 실시된 바 있었는데, 이 때 마련 된〈軍功事目〉에는 적 1명의 목을 베면 면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¹⁸⁾ 그 후에도 반란을 진압하거나. 역적을 포획하거나. 참수하는 등의 군공을 세우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공로의 다과에 따라 면천 · 면역 등의 포상이 수시로

^{16)《}新補受教輯錄》, 禮典 惠恤.

^{17) 《}肅宗實錄》 권 61, 숙종 44년 정월 임자.

^{18) 《}宣祖實錄》 권 51, 선조 27년 5월 갑신.

실시되었다. 영조 4년(1728) 李麟佐의 亂이 일어났을 때, 조정에서는 이를 진압하는데 노비신분층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의 괴수를 참수하여가져오면 공사천은 부모처자와 함께 면천·속량시킨다"[9]는 격문을 내걸고반란의 진압에 노비신분층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후 논공행상을 실시할 때에 마련한〈軍功加抄別單〉에는 반란의 진압에 공을세운 노비들이 다수 포함되어 면천되었다.20)

또 공사천을 군역에 입속시킨 후 이들에게 무술의 연마를 권장하여 국가가 위급할 때에 대비하기 위하여 武才를 試取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면천을 허가하기에 이르렀다. 노비의 무재를 시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면천을 허가하니 이들에게 있어서 무술의 연마는 면천하는 첩경이 되었다. 공사천의 무재를 시취하는 공사천 무과는 임진왜란 때에 처음 실시되었다가바로 폐지된 바 있었다.²¹⁾ 그러나 후기에 들어와 노비의 군역입속이 늘어남에 따라 공사천 중 특수한 군종에 입역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무재가 뛰어난 자를 시취하여 면천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고 법제화되었다. 《속대전》 규정에는 親騎衛나 別武士에 입속한 노비는 都試에 응시하여 沒技者나居首者가 되면 면천하도록 되었는데, 실제로 이 규정에 따라 거수자나 몰기자는 면천되었다.

노비신분층은 군역에 입속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로로도 면천이 가능하였다. 《속대전》에 "明火賊 5명 이상을 잡아들인 공사천은 면천한다"고 되어 있듯이 도적을 잡으면 면천될 수 있었다. 그러나 犯越人을 잡아들이는 경우에는 1명만 잡아들여도 면천을 허가받았다.²²⁾ 또 정조 22년(1798) 함경도 定平府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 인명은 구한 노비들이 면천된 일도 있었다.²³⁾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노비신분층이 공로에 의하여 면천을 허가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다.

조선왕조는 유교정치를 표방하였으므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륜을 중요시하

^{19) 《}英祖實錄》권 17. 영조 4년 4월 신사.

^{20) 《}英祖實錄》권 22. 영조 5년 4월 경진.

²¹⁾ 平木實,《朝鮮後期奴婢制研究》(知識産業社, 1982), 159~165\.

^{22) 《}承政院日記》 776책, 영조 10년 3월 20일.

^{23) 《}備邊司謄錄》 190책, 정조 24년 윤 4월 12일.

여 충효 등의 덕행을 실천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전을 베풀고 포상함으로써 그러한 덕행을 장려하는 일이 거의 전시대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었다. 노비들도 이러한 국가시책에서 제외될 이유는 없었고, 따라서 이들이 유교적덕행을 실천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들을 포상하였기 때문에 노비들 가운데에는 그 덕행의 정도에 따라 면천을 허가받은 자들도 있었다. 이인좌의 난때 兵使 李鳳祥과 함께 순절한 기생 洪霖을 묻어준 청주영기 海月은 그 일로 면천됨과 동시에 給復을 받았다. 24) 또한 홍림의 아들도 절의를 지킨 사람의 아들이라 하여 면천되었다.

이외에도 부유한 노비들은 자기 대신 다른 노비를 매입하여 충당하고 자신은 면천되는 代口贖身에 의해서도 쉽게 면천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돈이나 재산이었다. 대구속신의 제도는 신분제도가 동요하는 가운데 국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비를 확보하려는 당국의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주로 大王姓자손이나 사족의 천첩소생, 양인을 모칭하여 과거에 합격한 자들의 면천을 위한 편법으로 이용되었다.

조선 후기에 노비신분층은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 외에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분을 상승시켜 갔다. 노비신분층의 비합법적인 신분상승의 방법으로는 도망과 신분모칭이 주로 이용되었다. 도망의 경우 그 자체로는 신분상승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만, 도망하여 그들이 신분을 모칭하였을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도망도 결국은 비합법적인 신분상승의 통로의 하나로 기능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도망노비가 급증하여 이것이 노비제붕괴의 가장 큰 요인이되었으며, 그 당시 노비도망현상은 노비해방운동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²⁵⁾ 실제로 그 때에 노비의 도망이 만연하였음은 영조 8년(1732) 좌의정 趙文命이 "근래 公私賤으로 은닉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다"²⁶⁾고 한 말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러한 노비의 도망은 유민의 발생과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흉년이 들면

^{24) 《}英祖實錄》권 28, 영조 6년 12월 갑인.

²⁵⁾ 鄭奭鍾, 《朝鮮後期社會變動研究》(一潮閣, 1983), 287쪽.

^{26) 《}承政院日記》 749책, 영조 8년 9월 5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유민이 발생하는데 그들 유민의 무리 중에는 공사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유민들은 새로 거주하는 곳에서 호적에 새로 등재할 때 4祖名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사천들은 어머니의 이름이나 소속관사·소유주를 기재하지 않고 신분을 숨김으로써,²⁷⁾ 쉽게 소속관사나 상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은닉하거나 도망한 노비들은 사노비의 경우 솔거노비에서 보다는 외거노비 중에서 많았으며, 특히 강변읍에서 더욱 심하였다. 외거노비는 상전과 떨어져 살고 있어서 상전의 감독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았던 관계로 그만큼 쉽게 도망할 수 있었을 것이며, 강변읍은 교통이 편리하여 어느 곳으로나쉽게 도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비의 도망과 은루가가속화하여 성균관노비의 경우 영조 5년부터 같은 왕 8년까지 겨우 3년 사이에 2,500여 명이나 줄어들었다.28) 4學노비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영조 15년 侍讀官 趙明履에 의하면 원래 수천 명에 이르던 노비가 30년 사이에 거의 다 도망하고 100명도 남지 않았다고 한다.29)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노비의 도망·은루가 극심해진 것은 당시의 농업생산력의 발전, 상공업의 발달, 광산의 개발, 도시의 성장, 고용노동의 발전 등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노비들이 도망하여 신분을 감추고 생활해 나갈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망노비들이 몸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는 섬이나 광산·목장 또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 등이 있었다. 또한 서북지방도 도망노비들이 모여드는 곳의 하나였다. 도망노비들이 섬으로 많이 모여들었던 것은 영조 27년(1751) 湖南均稅使 李珥가 한 말에서 미루어 알 수 있다.

섬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먹고 살기가 육지보다 낫다.…대개 섬에 사는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고 도피한 자가 아니면, 私奴로서 도망하여 숨어든 자들이다(《英祖實錄》권 73, 영조 27년 2월 기축).

이와 같이 섬은 도망노비의 淵藪였다. 조선 후기에 섬은 궁방이나 각 사에

^{27) 《}顯宗改修實錄》권 14, 현종 7년 3월 병술.

^{28) 《}承政院日記》 749책, 영조 8년 9월 2일.

^{29) 《}備邊司謄錄》 105책, 영조 15년 11월 11일.

절수되어 어장이 설치된 곳이 많았는데. 궁방이나 각 사에서는 이를 보호하 기 위하여 推奴를 금지했기 때문에 도망노비들이 많이 투속하였던 것이다.

서북지방의 변방으로도 도망노비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서 정조 8년 (1784) 寧邊・孟山・江界・三水・甲山으로 왕래하는 요층에 자리한 長津柵에 는 해마다 逋吏나 叛主奴 등의 죄를 짓고 도망한 무리들이 모여들어 유입인 구가 3,000여 호에 이르고 있었다.30) 서북지방은 추노가 금지된 지역이었는 데다가 장진은 교통의 요지여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 는 지역이어서 가능하였을 것이다.

도망노비는 이 밖에도 국가에서 국방상의 요충지에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하여 추노를 금지한 곳으로 몰려들기도 하였다. 北關에서는 사노비라 하더 라도 그의 상전이 마음대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私賤叛主者들이 서북지방으로 몰려들 뿐만 아니라. 모리배들이 양인이나 남 의 노비를 유인하여 몰래 파는 현상까지도 벌어졌다.31) 도망노비 중에는 이 밖에 추쇄가 곤란한 깊은 산속으로 숨어드는 자도 있었으며, 절에 들어가 중 이 되는 자도 있었다.

도망노비들은 새로운 정착지에서 이 당시 널리 발달하고 있던 고용노동으 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거나. 장시 등에서 상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 지할 수 있었다. 이 때 고용노동은 거의 모든 부면에서 일반화되고 있었다. 먼저 중앙에서는 종래 양인의 부역동원으로 유지되던 각종 군역이나 신역. 공노비의 선상·입역으로 운영되던 중앙 각사의 노비노동은 물론이고, 早隷 나 궐내 각처의 棭隷까지도 雇軍 즉 고용노동력으로 충워되고 있었으며, 국 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도 광범위하게 모립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에 따라 고용노동은 도성에서는 물론이고 광산촌・수공업장뿐만 아니라 지방도시나 포구 · 농촌 등지에서까지 널리 이용되었다.

도망한 노비들은 신분을 모칭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이다. 노 비들이 도망하거나 유리하여 신분을 감추고 換父易祖하여 양인신분을 모칭하 는 현상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 증가하고 있었다. 도망한 노비들은 남의 족보

^{30) 《}備邊司謄錄》 167책, 정조 8년 11월 11일.

^{31) 《}承政院日記》 783책, 영조 10년 7월 5일.

에 모록하여 신분을 속이는 경우도 있었으며, 姓을 갖추고 감영에 議送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양인을 칭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었다.32) 노비들이 구체적으로 신분을 모칭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 할 경우에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는 방법 외에도 면천·속량 후 補充隊에의 입속·去官규정을 이용하여 보충대 입안을 위조하거나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이 실시된이후에 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 때 도망한 노비의 후손들은 양인을 모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幼學이나 宗班, 또는 勳族 등 양반의 후예임을 모칭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순조 24 년(1824) 경상도 禮安縣에 사는 黃流贊 등 13명은 본래 사천이었는데, 환부역 조하여 平海君의 자손임을 모칭하고 충의위에 입속한 바 있었다.33)

노비들 중에는 신분모칭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과거에 급제하여 출사하는 자까지도 있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자로서 그 자손이 양인을 모험한 자는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고, 아버지가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한 자로서 그 아들이 양인을 모칭한 자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隱漏하여 양인을 모칭하고 과거에 합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손자로서 생원이나 진사시에 합 격한 자는 代口贖身을 허락한다(《續大典》권 5, 刑典 公賤).

이 규정은 효종 6년(1655) 전국적으로 공노비추쇄사업을 실시할 때 처음 마련된 것으로, 이것이 《속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실제로 효종 때의 추쇄과 정에서 노비가 양인신분을 모칭하여 과거에 합격한 자들의 자손이 추쇄대상 이 되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이 규정의 적용에는 자수가 전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병행하여 사회경제의 진전으로 피지배층의 자각이 늘어감에 따라 노비신분층은 그들의 상전이나 지배층에 항거하여 신분상승을 도모하였다. 노비 중에서는 상전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일부 가난하고 세력이 없는 노비소유주들은 노비들의 저항으로 推奴나 收貢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였다.

^{32) 《}承政院日記》 697책, 영조 5년 11월 22일.

^{33) 《}各樣論報謄書》, 갑신 11월 25일(여강출판사 영인본, 1987), 508쪽.

노비신부층의 반항은 단순히 신공납부의 기피나 도망에 그치지 않고 심한 경우 상전이나 상전의 가족을 살해하는 일까지도 흔히 일어나고 있었다. 숙 종년간에는 사노들이 殺主契를 조직하여 상전을 살해하고 노비신분에서 벗 어나려 하고 있었다.34) 이러한 현상은 영조년간에도 계속되어 할아버지와 아 버지 · 아들 3대가 한꺼번에 노비에게 살해당한 일까지 있었다.35)

노비 중에는 도망하여 도적의 무리에 가담하거나 반란에 가담하여 지배체 제에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자들까지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은 체제 변혁우동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신분제의 해체에 영향을 미친 바 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도 그들의 신분상승 욕구와 전혀 무관 한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조선사회의 신분 구조를 크게 변질시켰다. 이러한 추세는 역사의 진전과 더불어 더욱 광범위 하게 전개되어 갔다.

4) 내시노비의 혁파

조선 후기에 노비신분층이 동요하는 가운데 노비의 사회경제적 존재양태 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선공의 감액. 추쇄관의 폐지와 比摠法의 실시, 면천ㆍ속량의 확대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영조년 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노비신분층의 동요는 정조년간 이후에 더욱 심화되어 갔다.

정조대 노비의 감축이 극심하게 된 데에는 신역의 과중보다는 오히려 노 비신분층의 자각이 촉진되어 '역중명천' 한 노비라고 하는 신분 자체를 싫어 하여 노비신분에서 벗어나려는 데에 있었다. 즉 신역이 고되고 벅차서보다는 신분적 차별에서 받는 고통을 참지 못하여 도망하거나 은루하는 노비가 급 속히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정조 8년(1784) 洪忠監司 金文淳의 지적에 잘 나타나 있다.

노비들이 처자를 이끌고 도망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바꾸는 등 간계를

³⁴⁾ 鄭奭鍾, 앞의 책, 23~26쪽.

^{35) 《}備邊司謄錄》 104책, 영조 14년 12월 26일.

다하는데, 한 사람이 행하면 모든 사람이 동정한다. 이러한 일이 모든 고을에다 마찬가지이니 어찌 노비수가 줄지 않겠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공의 마련이 어려워서 가 아니라 노비라는 천한 명칭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때문이다(《備邊司謄錄》167책, 정조 8년 10월 29일).

과중한 부담을 피하려는 경우이거나 노비라는 미천한 명칭을 싫어하여 노비신분 자체를 벗어버리기 위한 경우이거나간에, 노비의 감축이 증가하면 할수록 비총법으로 신공을 내야 할 노비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 아래에서는 族徵・隣徵・黃口侵徵이나 白骨徵布 등의 폐단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서리 등의 중간관리층의 농간까지 겹쳐 남아 있는 노비들의 부담은 더 무거워지기 마련이었다.

실제로 정조 14년 경상도 咸陽에서는 노비안에 올라 있는 200여 명의 노비가 아기[岳只]·조이[助是] 등의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며, 실제 거주여부나 부모의 이름은 기재하지 않고 대신에 일가 친척만을 세대의 원근을 따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존재하는 노비는 한 사람이 7, 8명의 身布를 부담하게 되어 일단 寺奴案에 기재되면 결혼도 못하고 홀아비나 과부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노비안을 근거로 신공을 거둠으로써 逃故白徵의 폐가 극심하여 심지어는 죽은 아들의 무덤을 파서 시체를 지고 와 호소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36) 이것은 실제로 노비의 감축은 심하였는데도 비총법으로 신공을 거두어야 할 노비의 수가 고정되어 있었기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경주부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노비안에 기재된 노비 5,116명 가운데 도망했거나 죽은 사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거짓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081명이 되었으며, 여기에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156명이나 되어 이들을 제외한 2,879명이 도내에 흩어져 살고 있었으나, 이들 중에도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이 244명이나 되어 전체 5,116명의 노비 가운데 2,881명이 인징이나 족징에 의한 납포자였다. 또 도내에 흩어져 살고는 있지만 거처가 일정하지 않아 신공을 거둘 수 없는 자들의 身布도 족징・인징으로 거두 어들였으므로 실제 족징・인정의 수는 기록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36) 《}正祖實錄》 권 30, 정조 14년 4월 정사.

가난한 노비들이 자신의 신포도 마련하지 못한 데다가 隣族의 몫까지 대납 하게 되어 이들 또한 유리하여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이 되풀 이됚으로써 노비가 날로 감축되어 노비안은 하낱 빈 장부에 불과할 뿐이었 다.37) 이러한 현상은 軍威縣이나 綾州牧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군위현의 경우에는 노비안에 오른 노비 162명 가운데 실제 거주하는 노비는 14명에 불과하였으며.38) 능주목의 경우에는 노비안에 오른 노비 가운데 100세 이상 되어 이미 죽은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거짓으로 지어 올린 이름으로 실 제로 본인이 신포를 바치는 사람은 10명 중 하두 명도 안되는 실정이었다.39) 이것은 어느 일부 지역에만 한정된 현상이 아니어서 노비신공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관서에서는 심각한 재정부족에 맞닥뜨렸다. 상의원은 2.100여 명이 나 되던 노비가 거의 다 도망치고 400여 명만이 남아 재정부족으로 모양을 갖출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40) 성균관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추쇄관을 혁파 한 후 노비의 도망이나 사망은 날로 늘어가는 반면에 출생은 전혀 보고되지 않아 신공의 수납량이 해마다 줄어들어 노비감축에 따른 재정부족에 직면하 고 있었다.41) 영조 31년(1755) 노비신공을 감액할 때 다른 중앙 관사의 寺奴 婢를 이속받고 급대를 맡은 호조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였다. 감공이 실시된 지 4년밖에 안된 영조 35년에 호조에서 지급해야 할 각사노비 이속원수에

이와 같이 비총법을 실시한 후 노비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남아 있는 노비들도 부유한 노비나 세력있는 노비는 모두 면천되고 거지와 같이 의지할 곳 없는 노비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의 신공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에게 신공을 거두는 것이 불가 능한 형편이었다. 이에 따라 노비의 신공으로 유지되던 각사의 재정이 부족하

대한 급대량이 布 31同이었는데. 거두어들이는 신공량은 겨우 10여 동에 불

과하여 이미 20여 동의 결손을 보고 있었다.42)

^{37) 《}承政院日記》 1,798책, 정조 22년 10월 11일.

^{38) 《}承政院日記》 1,802책, 정조 22년 12월 17일.

^{39) 《}正祖實錄》권 49. 정조 22년 9월 갑술.

^{40) 《}備邊司謄錄》 182책, 정조 18년 9월 16일.

^{41) 《}承政院日記》 1,267책, 영조 43년 5월 15일.

^{42) 《}備邊司謄錄》 136책, 영조 35년 정월 16일.

게 되어 국가로서는 이제 노비제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정조 후반에 이르면 노비제폐지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보아도 양역이나 노비신공이 다같이 1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구태여 노비라는 명칭으로 묶어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차라리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줌으로써 名賤에서 오는 도망이나은루를 방지함과 아울러 은루노비의 출현을 기대할 수 있어 오히려 국가로서는 재정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는 면천·속량의 확대,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노비의 군역차정 등일련의 노비정책으로 노비의 양인으로의 신분상승이 이전보다 쉬워져 양인과 노비와의 신분적 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정조 후반기에는 위정자들 사이에 국가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內寺奴婢력 파론이 제기되었다.

이 당시 노비제를 개혁하려는 논의의 초점은 주로 내시노비의 폐를 제거하는 데에 있었다. 내시노비의 폐를 제거하자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었지만 이를 개혁하려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하나는 내시노비 자체를 혁파하여 양역으로 전환하자는 쪽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내시노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실제 운용의 묘를 살려 말폐만을 제거해 보자는 쪽이었다. 내시노비혁파론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로서 주장하였다.43)

- ① 奴나 양민이 다 같은 백성인 동시에, 奴가 내는 베나 양인이 내는 베가 똑같은 베로서 국가의 需用에 쓰이는 것은 동일하다.
- ② 내시노비혁파 이외의 개혁은 결국 말폐만을 제거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폐단을 야기시킨다.
- ③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줌으로써 이름이 천한 데서 오는 도망과 은루가 없어지고, 출생자가 날로 늘며, 도망한 자나 은루한 자가 다시 나타남으로써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여 오히려 국가재정상으로도 이익이 된다.
- ④ 백성들에게는 노비에 연루될 염려가 없어지고, 국가에는 貢額이 감축될 염려가 없어 공사 모두 편하다.
 - ⑤ 내시노비혁파 반대론자들의 주장인 명분이란 것도, 箕子가 처음 노비제를 실

⁴³⁾ 全炯澤, 앞의 책, 232~233쪽.

시한 것은 절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지 자손 대대로 노비를 삼으려 했던 것 이 아니므로 노비제폐지가 옛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경주부유 吳鼎源은 노비를 혁파하고 비총수를 良丁으로 메꾸면 양정의 부족을 가중시킨다는 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노비가 가장 많은 경주부의 경우에도 5.116명의 노비를 혁파하고 양정으로 메 꿀 때 필요한 양정 실수는 600명에 불과한데, 노비혁파로 양정이 될 자가 300명이 있으므로 나머지 300명을 각 마을에 배정하면 한 마을당 1명에 불과하여 아주 작 은 마을에서도 별 문제점이 없다(《承政院日記》1.798책. 정조 22년 10월 11일).

내시노비혁파름 주장한 인사들은 대부분이 노론계였다. 그런데 내시노비혁 파론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내시노비혁파를 반대하는 자들의 논거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다. 첫째, 양정 자체도 부족한 터에 노 비를 혁파하고 이를 양정으로 메꾸는 것은 양정의 부족을 가중시켜 백성을 소요시키다. 둘째, 내시노비를 혁파하면 사노비들이 이를 본받게 되어 叛主 의 폐가 일어난다. 셋째, 조선 전래의 成憲을 문란케 하여 명분을 흐리게 한 다는 것이었다.

이들 내시노비혁파에 반대한 인사들은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莊獻世子의 불행에 동정하였던 時派에 속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던 남인계가 많았다. 이러한 정치적 정세로 정조 자신이 노비신분층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정치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게 되어 명분론에 동조하여 내시노비혁파 를 반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는 蕩平策을 실시하여 남인을 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장 헌세자와의 관계로 시파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남인 시파인 蔡濟恭을 영의정으 로 발탁하였다. 실제로 채제공은 정조 14년(1790) 좌의정으로 있을 때 咸陽杳正 御史 崔顯重이 시노비를 혁파하여 寺保로 개칭하자고 주장한데 대하여. 양민 에 폐해가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한 일이 있었다.44) 따라서 정조가 살아 있고 정조의 두호를 받는 남인 시파의 영수인 채제공이 영상의 자리에 있는

^{44) 《}承政院日記》 1.676책, 정조 14년 4월 14일.

한 노론 벽파 인사들의 주장인 내시노비혁파론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정조가 죽고 노론 벽파 일색으로 정부가 구성되자 사태는 일변하여 그 이듬해인 순조 원년(1801) 정월에 곧바로 내시노비를 혁파하여 이들의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켰다.⁴⁵⁾ 이 때 양인신분으로 전환된 노비신분층은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의 내노비 36,974명과 중앙 각사의 시노비 29,093명등 모두 66,067명이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내시노비의 실수효가 아니라 비총법에 정해진 신공을 수납해야 할 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인원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내시노비혁과로 못받게 된 내수사 및 각 사의 노비신공에 대한 급대는 壯勇營에서 맡도록 하였다.⁴⁶⁾

내시노비를 혁파한 뒤에도 중앙 관사의 공노비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내시노비혁파 전에 호조에 소속시켜 寺奴의 예에 따라 신공을 거두던 적몰노비 가운데 지방고을에 거주하는 노비는 해당 고을의 관노비로, 중앙에 거주하는 노비는 형조에 이속시켜 부리도록 하여 형조에는 내시노비혁파 후에도 노비가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다.47) 그러나 이 때 형조에 소속된 노비와이전의 내시노비는 「使役」과 「收貢」이라는 면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18세기에 들어와 노비의 감소가 격증한 것은 공노비뿐만이 아니라 사노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노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 — 예컨대 노비신 공의 감액, 노양처소생종모종량법의 실시 등 — 이 사노비에게까지 적용되었던 까닭으로 내시노비혁파는 언젠가는 노비제 자체의 폐지를 암시하는 것이었고, 이미 중세적인 신분제도 붕괴의 한 단서를 마련했다는 데에서 내시노비혁파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정부에 의한 것이었으며, 국가의 통제하에 있던 노비에 국한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사적 의미에서는 그만큼 제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같은 공노비이면서도 내시노비를 제외한 역노비와 지방의 영ㆍ진이나

^{45) 《}純祖實錄》 권 2, 순조 원년 정월 을사.

^{46) 《}承政院日記》 1,832책, 순조 원년 정월 28일.

^{47) 《}承政院日記》 1,841책, 순조 원년 9월 20일.

각 고을의 관아 및 향교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는 공노비혁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각 고을의 관노비가 혁파에서 제외된 것은 이들이 중앙 각사나 내수사에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신공만을 납부하고 있던 내시노비와는 달리입역으로 그들의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도 고종 23년(1886)에 이르러 사노비와 더불어 신분세습제가 폐지되어 자기 한 몸에 한하여 사역되다가,48) 고종 31년 갑오개혁이 실시되면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어 제도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49)

노비제의 폐지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단순히 신분사적으로 천민해방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동시에 신분제를 바탕으로 성립된 중세봉건사회의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분사적으로 본다면 조선 후기는 한국 중세사회의 마지막단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全炯澤〉

^{48) 《}承政院日記》, 고종 23년 정월 2일.

^{49) 《}高宗實錄》 권 32, 고종 31년 6월 28일.